

2013



第二十九輯

# 治安論叢

警察大學 治安政策研究所





第二十九輯

# 治安論叢

警察大學 治安定策研究所



현대사회의 불확실성 증가와 함께 범죄와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는 국민행복의 필수조건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새 정부에서는 '안전'을 국정운영의 중심축으로 설정하고,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부정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 척결을 천명하며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경찰은 '4대 사회악'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경찰대학에서도 국정과제인 4대악 근절을 위해 그동안 사각지대로 연구가 미흡했던 4대악에 대한 실태를 정밀 분석하고 이론과 실무에 적합한 대책을 제시하고자 '4대 사회악 연구센터'를 새롭게 설치하여 모든 연구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치안정책연구소는 각종 현안 및 중·장기 치안정책 개발을 위해 경찰청 각 국·관에서 의뢰하는 지정 주제와 외부 연구진이 제시하는 자유 주제 중에서 시의성 있는 주제로 매년 17~18편을 선정하여 외부 연구 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 중 우수한 논문을 엄선하여 1984년부터 『치안논총』을 발간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모든 자료는 연구소 홈페이지를 통해 언제든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치안논총 제29집』은 '소년범 처리시 즉결심판 청구 활성화 방안',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사권 조정의 효과에 관한 연구', '수사상 경찰과 검찰의 협력 시스템 구축 방안' 등 총 3편의 논문을 엄선하여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실무부서에서 알차게 활용되고 치안행정 및 경찰관련 연구분야에서 노력하고 있는 전문가들에게도 유용한 자료로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그동안 연구에 전념하여 훌륭한 논문을 완성하여 주신 연구진과 『치안논총』 발간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 경찰대학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치안현장에서 밤낮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13만 경찰관 여러분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 9.

치안정책연구소장

최경석







# 소년범 처리시 「즉결 심판 청구」 활성화 방안



## 《研究陣》

---

이 기 호 (경찰대학교 법학과 교수)  
연구위원 : 강 동 욱 (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문 영 희 (서울기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 ••• 목 차

<b>제1장 연구목적 및 연구내용</b> .....	7
제1절 연구 목적과 범위 .....	7
1. 연구목적과 필요성 .....	7
2. 연구내용과 범위 .....	9
제2절 연구방법 .....	10
<b>제2장 소년범처리와 관련된 일반론</b> .....	12
제1절 소년범의 의의 .....	12
제2절 소년범의 처리에 관한 이론적 배경 .....	14
1. 소년사범의 지도원칙 .....	14
2. 소년의 ‘보호’에서 ‘회복적 사범’으로 .....	19
제3절 현행 소년사건 처리절차 .....	22
<b>제3장 외국에서의 경찰의 소년범 처리절차</b> .....	26
제1절 미 국 .....	26
제2절 영 국 .....	27
1. 훈계 .....	28
2. 최종경고 .....	29
3. 조건부경고 .....	30
4. 분류심사프로그램 .....	30
제3절 프랑스 .....	31
제4절 캐나다 .....	34
1. 훈방 .....	35
2. 주의 .....	35

3. 경고 .....	35
4. 위탁 .....	36
5. 비사법제재 .....	37
제5절 뉴질랜드 .....	38
1. 개관 .....	38
2. 가족회합제도 .....	39
제6절 일 본 .....	41
1. 범죄소년 .....	41
2. 촉법소년 .....	47
3. 우범소년 .....	50
4. 교통사건의 특칙 .....	51
<b>제4장 경찰의 소년범처리에 관한 법제와 현황</b> .....	<b>53</b>
제1절 소년범처리에 관한 법제 .....	53
1. 범죄소년의 검찰에의 송치 .....	53
2.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의 소년부에의 송치 .....	55
3. 소결 .....	56
제2절 소년범처리의 현황과 대책 .....	58
1. 경찰의 소년범 처리실태 .....	58
2. 경찰훈방 .....	61
3. 소년범조사시 전문가참여제 .....	65
4. 사랑의 교실 .....	67
5. 청소년상담교실 .....	69
6. 범죄예방교실 .....	70
제3절 개선방안 .....	71
1. 소년범처리에 있어서 경찰재량권 확대 .....	71
2. 경찰훈방의 법적 근거 마련 및 활성화 도모 .....	71
3. 소년범전담부서의 일원화와 전문성 강화 .....	73

4. 경찰다이버전의 확충과 실효적인 연계기관의 구축 .....	79
<b>제5장 소년범 처리절차로서의 즉결심판심제도의 활용방안 .....</b>	<b>81</b>
제1절 즉결심판에 관한 법제와 현황 .....	81
1. 법제 .....	81
2. 즉결심판의 처리절차와 현황 .....	90
제2절 소년범처리시 즉결심판청구 등에 대한 이론적 검토 .....	94
1. 18세의 범칙소년에 대한 통고처분과 즉결심판청구 .....	94
2. 18세 미만의 경범죄소년에 대한 즉결심판청구 .....	95
3. 범죄소년에 대한 즉결심판청구 .....	96
제3절 소년범처리시 즉결심판 활용을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방안 .....	101
1. 관련법의 개정 .....	101
2. 즉결심판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구축 .....	108
3. 즉결심판청구권의 남용방지를 위한 방안 .....	112
<b>제6장 결 어 .....</b>	<b>118</b>

●●● 표 목 차

〈표 3-1〉 프랑스의 소년유치제도 .....	33
〈표 4-1〉 소년범 검거현황 .....	58
〈표 4-2〉 학교폭력사범 검거현황 .....	59
〈표 4-3〉 학교폭력사범 연령대별 검거현황 .....	59
〈표 4-4〉 소년사범 처분현황 .....	60
〈표 4-5〉 학교폭력사범 처분현황 .....	60

〈표 4-6〉 학교폭력 가해학생 처리실태 .....	65
〈표 4-7〉 소년범조사시 전문가 참여제 운영 현황 .....	67
〈표 4-8〉 사랑의 교실 운영실적(1) .....	68
〈표 4-8-1〉 사랑의 교실 운영실적(2) .....	68
〈표 4-9〉 청소년상담교실 실시현황(1) .....	69
〈표 4-9-1〉 청소년상담교실 실시현황 .....	69
〈표 4-10〉 범죄예방교실 실시현황(2) .....	70
〈표 5-1〉 즉심청구 가능 사건(대검 형일 23100-1592) .....	86
〈표 5-2〉 즉심피의자 행위 중 형사입건 사항 .....	87
〈표 5-3〉 최근 10년간 즉심사건 청구현황 .....	92
〈표 5-4〉 최근 10년간 형법범 즉심사건 청구현황 .....	93
〈표 5-5〉 경찰의 즉심사건 처리결과 .....	93
〈표 5-6〉 경찰조사에 따른 소년범 재범율 .....	100
〈표 5-7〉 동두천 즉결심판예심위원회 운영현황 .....	114

## ●●● 그림 목 차

〈그림 2-1〉 소년사건 처리절차 .....	25
〈그림 4-1〉 학교폭력사건 경찰처리절차도 .....	76
〈그림 4-2〉 자진신고 학교폭력사건 경찰처리절차도 .....	77
〈그림 5-1〉 경찰의 즉결심판 단속처리절차 .....	92

# 제 1 장 연구목적 및 연구내용

## 제1절 연구목적과 범위

### 1. 연구목적과 필요성

최근 소년범죄의 증가현상과 더불어 소년범죄의 경우 다양한 보호처분이 법적으로 강구되어 소년범죄자의 재사회화를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지만 재범률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것으로는 수사에 있어서 경찰관에게 수사종결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외국의 경우와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형사입건된 소년범에 대하여 경찰단계에서 소년사건을 종결하거나 이를 기초로 한 경찰단계에서 다이버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경찰관이 범죄소년을 형사입건한 경우에는 무조건 검찰에 송치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형사입건된 소년범에 대하여 그 사건의 경중에 관계없이 경찰, 검찰 나아가 법원이라고 하는 사법절차를 모두 거치도록 하게 되면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기간이 상당히 길어지게 되면서 사회적 낙인효과가 매우 커지게 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그 영향으로 인하여 사법절차가 종료된 후에도 이들이 가정이나 학교 등, 자신들의 생활영역권으로의 정상적인 회귀가 어려워지게 되면서 재사회화가 방해된다.

이에 소년사법의 실무와 현장에서는 경미한 죄를 범한 소년범에 대하여는 조기에 사법절차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경찰단계에서 소년범에 대한 종결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의 도입이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다. 나아가 사법절차의 초기단계인 경찰단계에서 적극적이고 다양한 다이버전을 실행하기 위한 제도의 마련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소년범에 대한 경찰의 다이버전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거나 미비하고, 전술한 것처럼 원칙적으로 소년범처리에 있어서 경찰에게 종

결권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여전히 소년범처리와 관련한 경찰활동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하지만 오늘날 범죄학의 관점에서 보면 소년범의 경우 낙인효과를 줄이고, 그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특히 형사사법절차의 기간 단축과 그 절차로 부터의 조기해방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그 대안으로서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형사사건에 대한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종결권이 인정되는 즉결심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소년범에 대한 사법절차를 검사의 기소에 의한 정식재판절차를 거치게 하는 경우보다 훨씬 신속하게 해결하게 함으로써 조기선도의 실현과 낙인효과 최소화도 도모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이것은 경찰의 소년사건에 대한 전문성과 그 처리에 대한 강력한 신뢰를 전제로 한 것이지만, 소년범 처리에 있어서 신속하게 사법절차를 종료함으로써 소년범에 대한 사법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측면뿐만 아니라 증가하는 소년범 처리에 있어서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한다는 사법경제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매우 효과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즉결심판제도가 일부 경미범죄에 대해서만 허용되고 있는 현행법 하에서 모든 소년사건에 대하여 즉결심판제도를 활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경미한 소년범에 대하여는 경찰 스스로 즉결심판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중한 소년범에 대하여도 일회성에 그치거나 개선의 정이 현저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경찰단계에서 즉결심판을 통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연구 및 이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찰이 소년사건 처리 시에 있어서 즉결심판제도의 활용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하여 즉결심판제도의 적극적 활용을 위한 입법과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소년사건 수사시 경찰단계에서 사법절차의 다양성이 확보됨으로써 죄질의 경중 및 범죄전력이나 환경 등을 고려한 소년범의 개별적인 특성에 맞는 차별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둘째, 소년사건에 대한 경찰단계에서의 즉결심판제도의 활용에 따라 사건이 조기종

결됨으로써 소년범이 사법처리절차에 머무는 기간이 단축되고, 이로 인해 낙인효과를 줄임으로써 소년범의 재범방지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소년범에 대한 경찰단계에서의 다이버전의 활용가능성을 넓힘으로써 일선에서 가장 많이 소년범을 다루고 있고, 사실상 사법기관 중에서 소년범에 대한 높은 전문성을 갖춘 경찰의 적극적 개입이 가능하게 하여 소년범에 대한 적절하면서도 효과적인 처우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넷째, 장래적으로 소년범에 대한 즉결심판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법 개정과 제도의 개혁을 위한 노력에 있어서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소년범처리와 관련하여 경찰의 역할과 기능의 중요성이 강조됨으로써 범죄 수사영역은 물론, 사회전반에 발생하고 있는 각종 문제해결의 주도자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경찰의 독립성을 확대해 가려는 요청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2. 연구내용과 범위

본 연구에서는 먼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소년범처우와 관련된 이론적 배경과 경찰에서의 처리실태에 대하여 살펴보고, 소년범 처우에 대한 현행 법체계와 그 절차 및 이와 관련된 문제점과 더불어 그 개선방안에 대하여 검토한다.

둘째, 사법기관으로서의 경찰의 소년범처우에 대한 현행법제와 실무 및 그 현황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지침, 그리고 실무적인 통계자료를 통해 살펴보고, 그 문제점에 대하여 검토해 본다.

셋째, 비교법적 연구의 일환으로 소년사건에 있어서 경찰의 권한과 역할이 많은 국가 및 우리나라 소년범의 제·개정에 영향을 미친 일본에서의 소년사건처리에 있어서 경찰의 개입을 근거지우는 법제 및 그 실무관행에 대하여 검토한다.

넷째, 현행 법제하에서 소년범에 대한 경찰의 즉결심판제도의 활용가능성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바탕으로 하여 소년범처리에 있어서 즉결심판의 청구가능성과 그 활용을 위한 법과 제도의 개정방향 및 즉결심판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살펴본다. 특히 경찰서장의 즉결심판 청구권 남용 방지 및 시민참여 등 법제화 방안에 대해

서도 검토하며, 나아가 소년범에 대한 즉결심판제도의 활용에 따른 소년범처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경찰다이버전의 연계활용가능성 등에 대하여도 검토한다.

## 제2절 연구방법

본 연구에 있어서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연구결과를 도출함으로써 경찰실무에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양한 연구방법을 도입하였다.

첫째, 본 연구의 이론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문헌적 연구를 시도하였다. 소년범 및 그 소년사법절차와 관련된 기존의 선행연구를 참고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하여 발표된 국내·외의 연구문헌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해 이론적 뒷받침을 부여하고, 동시에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내용의 적절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둘째, 본 연구주제와 관련된 소년범의 처우현황과 그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타당한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실증적 연구를 참고하였다. 아울러 소년범처우에 대한 법적 근거와 절차 및 그 효과성에 대하여 검토하기 위하여 관련 입법과 각종 통계자료 및 판례 등의 실증적 자료를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셋째, 소년범처리에 관한 외국의 법제와 사례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를 시도하였다. 즉, 경찰에 의한 소년범처리에 관한 외국의 법제와 실태에 대한 연구를 함으로써 소년범 처우에 대한 경찰단계에서의 합리적인 법과 제도의 마련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였다.

넷째, 효과적인 연구결과를 도출하고, 소년범처우 현장에서 활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제적 연구를 시도하였다. 소년범에 대한 처우는 형사처벌 보다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형사처벌 일변도의 정책으로는 소년범에 대한 재범방지의 효과를 달성하기 어렵다. 따라서 소년범 처우에 있어서는 항상 이들에 대한 개선교화를 통한 사회복귀를 위해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되므로 사회복지학 전문가가 참여함으로써 전문성을 강화하였다.

다섯째, 본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강학적인 수준을 벗어나 현장 실무에서 발생하

고 있는 현실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대안제시를 위하여 관련 전문가를 활용하였다. 소년범의 처우 문제는 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소년의 문제이므로 소년범처리에 있어서 경찰에 의한 즉결심판의 가능성과 필요성뿐만 아니라, 이 제도의 활용에 따른 효과적인 후속조치의 도입을 위하여 관련전문가의 도움과 자문을 받음으로써 본 연구결과가 실질적이고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대책이 되도록 노력하였다.

## 제2장 소년법처리와 관련된 일반론

### 제1절 소년법의 의의

「소년법」상 소년법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소년, 촉법소년 및 우범소년을 말한다.<sup>1)</sup> 2007년 12월 21일 개정된 「소년법」(법률 제8722호, 2008. 6. 22. 시행)에서는 그 적용대상인 소년의 연령을 20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낮추었고, 촉법소년의 적용대상을 최저연령을 12세에서 10세로 낮추었다. 따라서 범죄소년은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소년으로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자를 말하며, 촉법소년은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미만의 소년을 말한다. 그리고 우범소년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거나 또는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자로서,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을 말한다.(소년법 제2조, 제4조 참조) 이들을 모두 포함하여 ‘비행소년’이라고도 한다.(소년규칙 제2조 제2호) 하지만 소년비행은 법적으로 정해진 행위 외에 도덕률, 윤리 등에 반하는 행위, 경찰이 정하는 불량행위, 학교나 가족 등 사회 제집단의 규범에 반하는 행위 등의 일부도 포함하는 것이지만, 소년에 의한 흉악한 범죄에 대하여도 ‘소년비행’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충격이 없기 때문에 ‘소년범죄’로 부르는 것이 최근의 경향이므로 본고에서는 소년범죄라는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한다.<sup>2)</sup>

1) 배종대, 형사정책, 홍문사, 2011, 471면. 이에 대해 ‘소년범죄’는 범죄소년과 촉법소년을 의미하며, ‘소년비행’은 이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하여 구분하는 견해가 있다.(박상기, 손동권, 이순래, 형사정책(제5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1, 458면)

2) 鮎川潤, 少年犯罪, 平凡社新書, 2001, 14~15면. 이에 대하여 종래 ‘소년비행’이란 개념 대신에 ‘소년범’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본래 ‘비행’이라는 용어에는 그것을 발생시키는 사회구조적인 관점도 시야에 포함된 것이었지만, ‘소년범죄’라는 용어에는 아동이거나 성인이라도 범죄로서는

한편,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성격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유박탈을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우범소년’의 개념의 불명확성과 추상성에 대해서는 죄형법정주의의 위반이며, 우범소년이라는 이유로 보호처분을 가하는 것은 형사제제의 과잉투입이고 사회통제망의 확대라는 비판이 있다. 따라서 우범소년은 「소년법」에서 삭제하고, 이들은 사회복지행정기관에서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sup>3)</sup> 이에 반하여 우범소년도 반사회성이 있기 때문에 우범성에 근거하여 사회방위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부당하지 않고, 소년법원에서 관할하는 것이 소년의 인권보장에 적합하다는 견해,<sup>4)</sup> 우범소년 규정을 그대로 두어 보호처분의 가능성을 열어두되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고, 경찰단계나 법원에서 검역적 운용이 필요하다는 견해<sup>5)</sup> 등이 있다.

「소년법」상 소년보호는 인권보장을 전제로 한 건전한 육성을 그 목적으로 하므로 소년에 대한 처분은 원칙적으로 소극적으로 이해하여야 하며, 소년사범의 처분은 실질적으로 부담처분이므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소년사범의 확장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우범소년(촉법소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을 보호처분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경우에도 반사회성 또는 요보호성 표지의 정형화와 심사의 객관화·엄격화를 통해 그 불명확성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고, 부당하게 확대 적용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sup>6)</sup>

마찬가지라는 기본적인 발상이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이 개념은 아동본인의 자질의 문제에 속하는 논리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고, 이에는 ‘귀책’의 근거를 나타내는 용어로써 ‘아동이라도 책임을’이라는 사회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으며, 그 ‘책임을 나타내는’ 것으로써 ‘형벌’을 강조하게 된다는 지적이 있다.(佐々木光明, 강경래(역), “소년처우론의 현상과 과제 -문제를 안고 있는 아동과의 관계의 구축-”, 소년보호연구 제15호, 한국소년정책학회, 2010.12, 314면)

- 3) 장중식, “소년범죄 처리와 소년법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교정연구 제41호, 한국교정학회, 2008.12, 155~156면; 정희철a, “개정 소년법과 소년사범의 효율성”, 고려법학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08, 339면; 최호진, “개정 소년법에 대한 주요내용과 비판적 검토”, 법학논총 제31권 제2호,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253면 등 참조
- 4) 소순무, “각국의 소년법제와 우리 제도의 개선방안”, 가정법원사건의 제문제, 재판자료 제18집, 법원행정처, 1983, 143면.
- 5) 최중식, “소년비행의 대책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 제19권 제2호, 2007, 98면.
- 6) 소년법학회 편, 소년법, 세창출판사, 2006, 35면.

## 제2절 소년법의 처리에 관한 이론적 배경<sup>7)</sup>

### 1. 소년사법의 지도원칙

‘소년사법’은 소년비행에 대하여 국가가 일정한 법적 처우를 부과하는 작용을 말한다. 또 ‘소년사법제도’란 소년사법과 관련된 조직의 구성, 소년비행의 성립요건과 법적 효과, 소년사건의 처리절차, 소년에 대한 각종 처우의 집행 등에 관한 법규범으로 구성된다.<sup>8)</sup> 소년사법에 있어서 근대 형사사법에서는 ‘미성숙과 고도의 잠재적 성숙가능성’이라고 하는 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여<sup>9)</sup> 범죄소년에 대하여는 ‘처벌’이 아니라 ‘처우’를 통한 사회복귀가 강조되고, 따라서 전통적인 형벌과는 구별되는 새로운 제재수단이 개발되었다. 다른 한편에서는 범죄소년뿐만 아니라 범죄에 버금가는 행위를 하거나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있는 소년에 대하여도 사법적 통제의 가능성을 열어 두게 되었다.<sup>10)</sup> 현행 「소년법」상 전자는 범죄소년에 대한 형사처벌의 완화와 보호처분제도의 도입으로 나타나고, 후자는 촉범소년과 우범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의 확장으로 대변될 수 있다.<sup>11)</sup> 다만, 소년사법의 확장은 형법의 보충성 원칙에 반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소년보호’의 관점에 의할 때 비로소 정당화되고, 따라서 「소년법」의 이념도 ‘소년보호’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소년사법에 있어서는 소년보호의 법리로서 형사법적인 기원에 따른 특별예방과 형평법적인 기원에 따른 國親<sup>12)</sup>의 두가지 이념이 형성되었다. 따라서

- 7) 이하의 내용은 강동욱a, “소년사법과 소년법 처리실태에 관한 연구”, 비교법연구 제12권 제2호,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2012.10, 9~17면의 내용을 대폭 보완하여 다시 정리한 것이다.
- 8) 신동운, “서독의 소년사법제도”, 법무부, 각국의 소년사법제도, 법무자료 제113집, 1989, 139면.
- 9) 소년법학회 편, 앞의 책, 31면 참조.
- 10) 자아발달 형성에 중요한 청소년기에 극단적인 시설구금을 경험하게 되면 자존감에 심각한 훼손을 입을 수 있으며, 이것은 다시 비행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처벌에 대한 낙인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소년사법시스템과 그 이념이 오늘날 널리 확립되었다고 한다.(조운오, 이미정, “경찰다이버전 단계에서의 소년비행과 자존감과의 관계”,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43호, 한국공안행정학회, 2011, 231면)
- 11) 소년법학회 편, 앞의 책, 31면.
- 12) 국친사상은 13세기 영국의 형평법 사상에 근거하여 왕권을 정당화하는 개념으로 발전한 것으로써,

소년사법의 목적은 비행청소년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청소년이 처한 환경의 개선과 교육을 통해 건강한 인간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어야 한다. 즉 소년사법은 청소년으로 하여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사회에 나아가 법을 잘 준수하여 재범을 저지르지 않고 사회에 잘 적응하도록 의도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소년사법에서는 사법과정 동안 청소년이 향후 사회적응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하며 복지구현이나 인권보장을 통해 청소년의 삶의 질을 증진시킬 책임과 의무가 부여된다.<sup>13)</sup> 이러한 철학과 원칙은 소년사법에 대한 사법처리과정의 출발시부터 종료시까지 보장되어야 한다.<sup>14)</sup>

그렇다고 하더라도 소년이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 형벌에 의한 제재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새로운 제재수단도 교육이나 복지를 내용으로 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소년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강제적 박탈 또는 제한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sup>15)</sup>는 점에서 소년사법에 있어서 특별한 보호가 요구되었다. 왜냐하면 국친사상에 근거한

---

국가가 비행소년의 부모로서의 역할을 부모를 대신하여 수행해야 한다는 사상이다. 이러한 국친사상에 근거하여 소년비행을 질병으로 파악하고, 그 원인을 치료하는 것이 소년사법의 임무이어야 한다는 '의료모델'이 소년사법의 수단으로 등장하였다.(배종대, 앞의 책, 484면)

13) 남미에, "사법처리과정 청소년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사회복지학 제58권 제1호, 한국사회복지학회, 2006.2, 266면. 비행청소년은 청소년복지의 대상인 동시에 교정복지의 대상이기도 하므로 단순한 보호의 대상에서 벗어나 청소년의 권리 및 육성이라는 관점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다.

14) 남미에, 앞의 논문, 267면.

15)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성격에 대하여는 형벌권의 발동으로 이해하는 견해(박영규, "신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년보호연구 제16호, 한국소년정책학회, 2011, 45면; 오영근, "개정소년법의 과제와 전망", 형사정책연구 제19권 제2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8, 20면; 장규원/윤현석, "회복적 사법과 소년보호관찰", 소년보호연구 제17호, 한국소년정책학회, 2011.12, 9면; 최병각a, "아동권리협약과 소년사법", 국가인권위원회, 2007, 15면; 최호진, 앞의 논문, 252면 등)가 일반적이다.

하지만,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사법적 판단에 따라 내려지는 보안처분의 일종으로 이해하는 견해(정희철, "비례성원칙과 보호처분: 해석론과 적용가능성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제18권 제4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7, 191면)에서는 이것을 형벌의 대체수단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외에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은 소년이 저지른 비행에 대한 제재와 소년의 보호라고 하는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점에서 형벌이나 보안처분과 구분되는 개념으로 제3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견해도 있다.(김혁, "경찰의 촉법소년 조사에 관한 연구", 경찰학연구 제10권 제2호, 경찰대학, 2010, 100면)

보호처분이 보호와 후견이라는 명목 하에 소년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국가적 제재를 당연시하고, 이를 통해 사회방위를 추구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sup>16)</sup>

이러한 요청에 대응하여 UN의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 1989 : CRC)」<sup>17)</sup>에서는 이러한 요청에 대응한 소년사법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었으며, 각국에서는 이 기준의 적용·실천이 요구되었다. 즉, CRC를 비준한 각국에서는 CRC 제37조,<sup>18)</sup> 제39조<sup>19)</sup> 및 제40조<sup>20)</sup>에 규정된 소년사법의 근본원리뿐만 아니라

16) 배종대, 앞의 책, 485면; 소년법학회, 앞의 책, 32~33면. 오늘날에 있어서는 소년사법에 대하여 형사처분을 배제하려는 견해는 일반적으로 낙인의 최소화를 통한 사회재통합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재통합모델'에서는 소년법의 처우에 있어서 소년법의 주체성과 자율성을 인정하면서 그 동의와 참여하에 처우프로그램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을 강조한다.(장규원/윤현석, 앞의 논문, 12면)

17) 이외에 소년사법에 관한 국제준칙으로는 UN의 「소년사법운영최소표준규칙(United Nations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Administration of Juvenile Justice(Beijing Rules, 1985)」, 「소년비행예방지침(United Nations Guidelines for the Prevention of Juvenile Delinquency (Riyadh Guidelines, 1990)」, 「피구금소년보호규칙(United Nations Rules for the Protection of Juveniles Deprived of their Liberty(Havana Rules, 1990)」 등이 있다.

18) **제37조** 당사국은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 (a) 어떠한 아동도 고문 또는 기타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사형 또는 석방의 가능성이 없는 중신형은 18세 미만의 사람이 범한 범죄에 대하여 과하여져서는 안된다.
- (b) 어떠한 아동도 위법적 또는 자의적으로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아동의 체포, 억류 또는 구금은 법률에 따라 행하여져야 하며, 오직 최후의 수단으로서 또한 적절한 최단기간 동안만 사용되어야 한다.
- (c)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은 인도주의와 인간 고유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에 입각하여 그리고 그들의 연령상의 필요를 고려하여 처우되어야 한다. 특히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은, 성인으로부터 격리되지 아니하는 것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합치한다고 생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인으로부터 격리되어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신과 방문을 통하여 자기 가족과의 접촉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 (d)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은 법률적 및 기타 적절한 구조에 신속하게 접근할 권리를 가짐은 물론 법원이나 기타 권한 있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당국 앞에서 자신에 대한 자유박탈의 합법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러한 소송에 대하여 신속한 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9) **제39조** 당사국은 어떠한 형태의 유기, 착취, 학대 또는 고문이나 기타 어떠한 형태의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또는 무력분쟁으로 인하여 희생이 된 아동의 신체적, 심리적 회복 및 사회복귀를 촉진시키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0) **제40조** 1. 당사국은 형사피의자나 형사피고인 또는 유죄로 인정받은 모든 아동에 대하여, 아동의

제2조, 제3조, 제6조 및 제12조에 따른 일반원칙을 반영한 소년사법개혁이 이루어졌다. 우리나라도 1990년 9월 25일 CRC를 비준하고, 1991년 11월 20일 비준서를 기탁하였으며, 이에 따라 CRC는 우리나라에서 조약 제1072호로서 1991년 12월 20일 효력을 발생하였다.

그 주요원칙은 다음과 같다.<sup>21)</sup> 첫째, 차별금지의 원칙이다(CRC 제2조) 범위반 아동 모두가 평등하게 처우될 것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또 아동과 성인을 법아래 평등한 처우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위범죄 규정을 폐지하여야 한다. 즉, 아동에 대한 낙인화·피해자화·범죄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성인이 행하면 범죄로 간주되지도 처벌받지도 않는 어떠한 행동을 소년이 범하였다고 하여 처벌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부랑, 거리 돌아다니기, 가출과 같은 행동은 부모나 다른 보호자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과 이러한 행동의 근본원인에 대한 조치를 포함하는 아동보호조치의 시행을 통하여 다루어져야 한다.

둘째,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이다(CRC 제3조). 소년사법의 운영의 맥락에서 내려지는 모든 결정에 있어,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억압이나 응보와 같은 형사사법의 전통적 목표는 범범아동을 다룸에 있어 사회복지와

---

연령 그리고 아동의 사회복지 및 사회에서의 건설적 역할 담당을 촉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점을 고려하고, 인권과 타인의 기본적 자유에 대한 아동의 존중심을 강화시키며, 존엄과 가치에 대한 아동의 지각을 촉진시키는 데 부합하도록 처우받을 권리를 가짐을 인정한다.

2. 이 목적을 위하여 그리고 국제문서의 관련 규정을 고려하며, 당사국은 특히 다음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 (a) 모든 아동은 행위시의 국내법 또는 국제법에 의하여 금지되지 아니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하여 형사피의자가 되거나 형사기소되거나 유죄로 인정받지 아니한다.
- (b)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인 모든 아동은 최소한 다음 사항을 보장받는다.
  - (i) 법률에 따라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받는다.
  - (ii) 피의사실을 신속하게 그리고 직접 또는, 적절한 경우, 부모나 후견인을 통하여 통지받으며, 변론의 준비 및 제출시 법률적 또는 기타 적절한 지원을 받는다.
  - (iii) 권한있고 독립적이며 공평한 기관 또는 사법기관에 의하여 법률적 또는 기타 적당한 지원하에 법률에 따른 공정한 심리를 받아 지체없이 사건이 판결되어야 하며,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반한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는 경우, 특히 그의 연령이나 주변환경, 부모 또는 후견인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1) 이하 최병각a, 앞의 논문, 14~17면 참조.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의 목표에 양보해야 한다.<sup>22)</sup>

셋째, 생명, 생존 및 발달의 권리이다(CRC 제6조). 아동 각자에게 내재된 권리는 소년비행의 예방을 위한 국가적 정책과 프로그램의 개발에 있어서 기초가 되어야 한다. 즉, 소년비행정책은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발달을 지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의사표현의 권리이다(CRC 제12조). 아동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아동의 견해를 자유로이 표현할 수 있는 권리는 소년사법의 모든 단계에서 충분히 존중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다섯째, 존엄과 가치의 원칙이다(CRC 제40조 제1항). 법위반 아동의 처우에 있어서는 다음의 원칙이 유지되어야 한다. 즉, 법집행기관과의 최초 접촉에서부터 아동을 다루는 모든 조치의 시행에 이르는 모든 길에서, 즉, 아동을 다루는 모든 과정을 통하여 아동은 존중되고 보장되어야 한다. 아울러 소년사법제도에 있어서 아동의 처우와 교육은 인권과 자유에 대한 존중의 발달에로 방향지워져야 하며,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고 아동의 재통합과 사회에서 건설적 역할의 수행을 증진하는 처우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아가 법위반 아동의 처우에 있어서 어떠한 형태의 폭력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소년법 제1조에서도 “이 법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기본적으로 위의 국제준칙을 준수하고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 여기서 소년의 건전육성과 인권보장은 모순·대립하는 것이 아니며 건전육성을 위해서는 적절한 보호, 즉 가장 효과적인 개선처우가 요구된다.<sup>23)</sup> 그런데 소년사법절차에 있어서 적절한

22) 전술한 것처럼 CRC 제40조 제3항 b와 UN의 「소년사법운영최소표준규칙」 11.1에서는 범죄소년에 대한 비사법적 처우의 마련을 권고하고 있다.(11.1 Consideration shall be given, wherever appropriate, to dealing with juvenile offenders without resorting to formal trial by the competent authority, referred to in rule 14.1 below.)

23) 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는 것, 즉 비행소년에 대해서 보호를 하는 것은 ‘복지정책’에서의 요청일 뿐만 아니라 ‘형사정책’에서의 요청이라고도 한다. 범죄를 억압하여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기 위해

처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발견, 조사, 심판의 과정에 있어서 진실이 발견되고, 그 발견된 진실에 따른 적합한 처우가 행해질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소년사범에 대한 절차상의 보장을 강화하는 것이야말로 소년에 대한 가장 강력한 인권보장을 의미하는 것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한다.<sup>24)</sup>

## 2. 소년의 ‘보호’에서 ‘회복적 사법’으로

소년사범의 이념인 보호주의는 개별 소년의 특성에 부응한 성장발달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조해주는 것, 즉 건전한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하며, 이것은 범죄가 발생하기 전에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인의 사회적응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교육에 중점을 두는 데 그 특징이 있다. 구체적으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sup>25)</sup>

첫째, 소년보호절차는 교육기능 및 사법기능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므로 객관적 범죄 사실 외에 소년의 인격과 관련된 개인적 범죄특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인격주의) 둘째, 소년범의 목적은 재범방지와 범죄예방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예방주의), 셋째, 소년사건에서 소년보호조치는 범죄인 개개인에게 알맞은 처우를 해야 한다.(개별주의), 넷째, 소년의 범죄환경에 대한 연구와 소년 범죄자에게 어떤 종류의 제재를 어느 정도 부과하는 것이 적당한가에 대한 연구·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과학주의), 다섯째, 소년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위주로 할 것이 아니라 치료·개선을 우선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교육주의)<sup>26)</sup> 여섯째, 효율적인 소년보호를 위해 국가는 물론이고 소년의 보호자를 비롯한 민간단체 등이 서로 협력해야 한다.(협력주의) 일곱째, 보호

서는 성인범죄의 온상인 소년범죄를 억압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지만, 범죄를 범한 소년에게 형벌로써 임하는 것은 효과적이라고는 할 수 없고, 개선처우를 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므로 범죄소년의 처우에 관해서는 객관주의의 형법이론 특히, 응보형이론은 형사정책의 전진을 위해서 그 길을 양보하여야 한다고 한다.(澤登俊雄, 犯罪者處遇制度論(上), 大成出版社, 1985, 280면)

24) 澤登俊雄, 앞의 책, 280면.

25) 배종대, 앞의 책, 489~492면.

26) 소년사범에 있어서의 교육은 ‘준법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가치의 내면화를 위한 타율적 교육’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수형자의 자율성을 내용으로 하는 성인형사범에 대한 특별예방과는 다르며, 단순한 개선이나 재사회화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고 한다.(소년법학회 편, 앞의 책, 36면)

소년을 개선하여 사회생활에 적응시키고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서는 문제소년을 가급적이면 노출시키지 않아야 한다.(밀행주의)

이러한 소년법에 대한 보호주의의 근간에는 형벌의 유해성을 고려하여 보호를 중시하는 사상이 그 근저에 있으며, 소년의 경우 성인과 달리 정신적·사회적 미성숙으로 범죄에 쉽게 빠지기도 하지만 교정·교화될 가능성도 크다는 기대를 출발점으로 하고 있다.<sup>27)</sup> 따라서 요보호성은 ‘재비행의 위험성’과 ‘보호처분에 의한 교정의 가능성’이라고 하는 2가지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한다. 전자는 소년의 환경적·인격적 요인을 고려해서 방치해 두면 재비행의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 판단이고, 후자는 당해 보호처분에 의해 소년의 개선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이것은 장래의 행동예측을 포함하는 것이지만 조사관이나 재판관의 전문적 지식을 전제로 한 경험적 판단으로 족하고, 자연과학적인 의미에서의 확실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sup>28)</sup> 이러한 보호주의 이념은 소년법에 대한 보호절차 뿐만 아니라 형사절차, 나아가 교정과정<sup>29)</sup>에서도 모두 적용되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이러한 보호주의원칙에 대해서는 국친사상의 과잉으로 인한 문제점과 우려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입장에서는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소년사법의 규범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조기에 비행소년의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보호요인을 강화함과 동시에 스스로 위법행위에 대한 적절한 책임성을 수용하도록 강제하고 교육하는 것을 가장 핵심적인 소년사법체계의 목표이자 임무로서 구조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27) 장중식, 앞의 논문, 159면.

28) 澤登俊雄, 高内壽夫 編著, 少年法の理念, 現代人文社, 2010, 72면. 다만, 성격조정과 환경조정은 보호처분의 두 바퀴이지만 ‘교정가능성’이라고 할 경우 환경조정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으므로 이것보다 더 넓은 개념인 ‘개선가능성’(立ち直し可能性) 개념을 사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29) 소년사법기관 시설내 처우의 문제점과 낙인으로 인한 사회부적응 등 현행 교정제도의 비효율성이 문제되면서 소년범죄자들의 사회내로 통합할 수 있도록 원조하여 재범가능성을 줄이고 범죄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서 사회내 처우로의 교정정책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나아가 소년범죄를 예방함과 동시에 비행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문제원인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체계적이며 지속적인 사후지원이 요구되면서 오늘날 청소년비행과 관련된 경찰, 검찰, 법원, 소년원 및 청소년관련 기관간의 통합적 연계망 구축을 통한 지역사회교정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김봉수/강동욱, “소년사법에 대한 지역사회교정의 현황과 개선방안”, 법과정책연구 제12집 제2호, 한국법정책학회, 2012.6, 433~434면)

한다. 그러나 세계 각국이 소년사범의 형사법체계에서 ‘소년보호’의 이념에 따라 소년범에 대한 절차를 구분하면서 ‘복지모델’과 ‘사범모델’을 절충하려는 이러한 노력은 적법절차원칙을 후퇴시키고, 교육적 효과도 거두지 못하는 등, 실패로 끝났다. 따라서 최근 소년사범에 있어서는 당사자들의 상호이해와 합의에 근거한 문제의 해결과 치유를 강조하는 회복적 사범이 강조되고 있다.<sup>30)</sup>

회복적 사범이란 1977년 Albert Eaglash가 처음 사용한 용어로서 형벌에 기초를 둔 응보적 사범, 범죄자의 치료적 처우에 중점을 둔 배분적 사범과는 다른 범죄대응양식이다.<sup>31)</sup> 즉, 가해자와 피해자, 더 나아가서 범죄문제에 대하여 일정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지역사회공동체까지 범죄사건의 해결주체로 끌어들이고, 그들 사이의 상호 이해와 화해 및 피해배상 등을 통하여 사회공동체의 평화의 회복을 목표로 한다.<sup>32)</sup> 따라서 회복적 사범에서는 범죄로 인한 피해의 회복,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와 화해, 지역사회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한다.<sup>33)</sup> 회복적 사범은 소년에게 형사책임이 아니라 비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회복할 책임을 추궁하는 것으로 그 과정에서 자신이 저지른 비행의 영향을 명확히 인식하고, 회복적 책임의 완수를 통하여 사회에 재통합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소년법의 목표 실현에도 기여한다.<sup>34)</sup> 이러한 회복적 사범

30) 김은경 외, “21세기 소년사범 개혁의 방향과 과제 (I) - 제Ⅲ부 대안의 모색”,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7.12, 137면 이하 참조.

31) 회복적 사범은 특정 제도나 시스템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의미하는 개념이라고 한다.(김혁a, “회복적 사범의 이념구현을 위한 경찰의 경미소년사건처리”, 경찰학연구 제11권 제1호, 경찰대학, 2011, 64면)

32) 종래 회복적 사범에 대하여는 당해 범죄와 관련된 모든 이들이 함께 모여서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 및 장애에의 영향에 관하여 서로 협의하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순수모델’과 범죄로 인한 피해를 회복함으로써 정의의 실현을 추구하는 모든 행위로 이해하고 배상명령과 같은 강제적 회복이나 사회봉사명령과 같은 상징적인 회복, 그리고 간접적인 대화도 회복적 사범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인식하는 ‘확장모델’을 대립이 있었지만(김혁a, 앞의 논문, 64면) 본고에서는 후자의 의미로 이해한다.

33) 회복적 사범은 경찰, 검찰, 법원 그리고 교정의 모든 단계에서 가능하다고 한다.(장규원/윤현석, 앞의 논문, 13~14면, 17면) 우리나라의 회복적 사범의 논의에 대한 연혁과 그 의미에 대하여는 이호중, “한국의 형사사범과 회복적 사범 - 과거, 현재, 미래”, 형사법연구 제19권 제3호(상), 한국형사법학회, 2007, 297~308면; 이호중a, “소년범죄자에 대한 경찰단계의 비범죄화 정책제안”, 형사정책연구 제15권 제3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4, 18~24면 등 참조)

은 가해자의 반성을 도모하고 재범을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형사절차와 전과자의 낙인을 피할 수 있다는 긍정적 효과로 인하여<sup>35)</sup> 세계 각국은 물론, 우리나라의 소년사법에 있어서도 회복적 사법의 원칙과 가치를 수용하는 방향으로의 개혁이 강조되고 있다.<sup>36)</sup>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재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회복적 사법은 기존의 형사사법체계를 대체하는 것은 아니고, 보완하는 수단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sup>37)</sup>

### 제3절 현행 소년사건 처리절차

우리나라에서는 19세 미만의 자가 비행을 범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소년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sup>38)</sup>

소년보호사건은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의 관할에 속하며, 그 심리와 처분 결정은 소년부 단독판사가 하도록 되어 있다.(소년법 제3조 제2항, 제3항) 이때 범죄소년에 대해서는 경찰서장은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하지만(「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3436호, 2011.12.30. 제정, 2012.1.1. 시행) 제81조, 이하 ‘수사지휘 및 준칙규정’이라고 한다.), 축법소년과 우범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이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한편, 이들 소년의 보호자, 학교장,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비

34) 김혁a, 앞의 논문, 68면. 다만, 이 경우에 소년의 사회복귀만을 위하여 피해자가 이용되거나 피해자에게 소년과의 직접 대면이나 화해를 강요하는 것은 안된다고 한다.

35) 徳岡秀雄, 少年法の社會史, 福村出版株式會社, 2009, 132면 이하 참조. 우리나라에서도 회복적 사법에 대하여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 공정하다고 만족하고 있으며, 회복적 사법경험 이후 재범율은 재산범죄나 피해자 없는 범죄에 비해서 대인범죄에서 좀 더 뚜렷한 감소효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김은경, “회복적 사법 실천모델의 효과성 연구”, 형사정책연구 제20권 제3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9, 242면)

36) 김은경, 앞의 논문, 239~240면; 장규원/윤현석, 앞의 논문, 23~24면 등.

37) 김용세, “한국의 형사사법체제와 회복적 사법”, 형사법연구 제20호, 한국형사법학회, 2003, 354~356면; 김혁a, 앞의 논문, 66면.

38) 이하의 내용은 강동욱b, “소년사건 처리절차에 관한 고찰” 한양법학 제23권 제4집, 한양법학회, 2012.11의 내용을 보완하여 새로 정리한 것이다.

행소년을 발견하면 소년법원에 통고할 수 있다.(동법 제4조 제3항)

소년피의사건을 송치 받은 검사는 수사결과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선도 또는 소년의 선도·교육과 관련된 단체와 시설에서의 상담·교육·활동 등을 받게 하고 피의사건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동법 제49조의3, 조건부 기소유예),<sup>39)</sup>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년법원에 송치한다.(동법 제49조 제1항)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년피의자를 성인과 같이 「형사소송법」(이하 ‘형소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일반형사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이를 ‘검사선의주의’라고 한다.<sup>40)</sup> 이때 기소를 받은 형사법원이 소년피고사건에 대한 심리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동법 제50조)

소년법원은 이들 통고나 송치를 받은 소년보호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하여 대상자가 19세 이상이거나 그 동기와 죄질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거나 송치한 형사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동법 제7조, 제49조 제2항, 제51조) 그렇지 않으면 소년부는 심리를 진행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심리불개시 결정(동법 제19조), 불처분 결정(동법 제29조) 또는 보호처분 결정(동법 제32조) 등을 하여야 한다. 이때 결정된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동법 제32조 제6항)

보호처분에는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등 10종류가 있으며(동법 제32조 제1항), 일부 처분 상호간에는

39) 이 경우 소년과 소년의 친권자·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동조 단서)

40) 우리나라에서는 소년사건을 형사사건으로 처리할 것인지 보호사건으로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우선적인 결정권을 검사가 가지고 있다. 검사선의주의의 장·단점에 대하여는 이춘화, “소년법상의 검사 결정전 조사제도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제20권 제2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6, 75~76면 등 참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병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동조 제2항)<sup>41)</sup> 다만, 위의 제3호의 처분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고(동조 제3항), 제2호 및 제10호의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동조 제4항)<sup>42)</sup>

한편, 보호관찰관에 의한 단기보호관찰(제4호), 장기보호관찰(제5호) 처분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 또는 소년의 상담·선도·교화와 관련된 단체나 시설에서의 상담·교육을 받을 것을 동시에 명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을 제한하는 명령을 추가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가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호자에게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또는 보호관찰소 등에서 실시하는 소년의 보호를 위한 특별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32조의2)

이들 보호처분과 부가처분은 위탁받은 자나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자의 신청에 변경하거나(동법 제37조) 또는 보호처분 받은 소년이 처분 당시 19세 미만이거나 행위당시 10세 미만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를 비롯하여, 보호처분 계속 중 유죄판결이 확정되거나 새로운 보호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동법 제38조~제40조)할 수 있으며, 보호처분과 부가처분 및 그 변경결정에 대하여는 항고(동법 제43조)와 재항고(동법 제47조)가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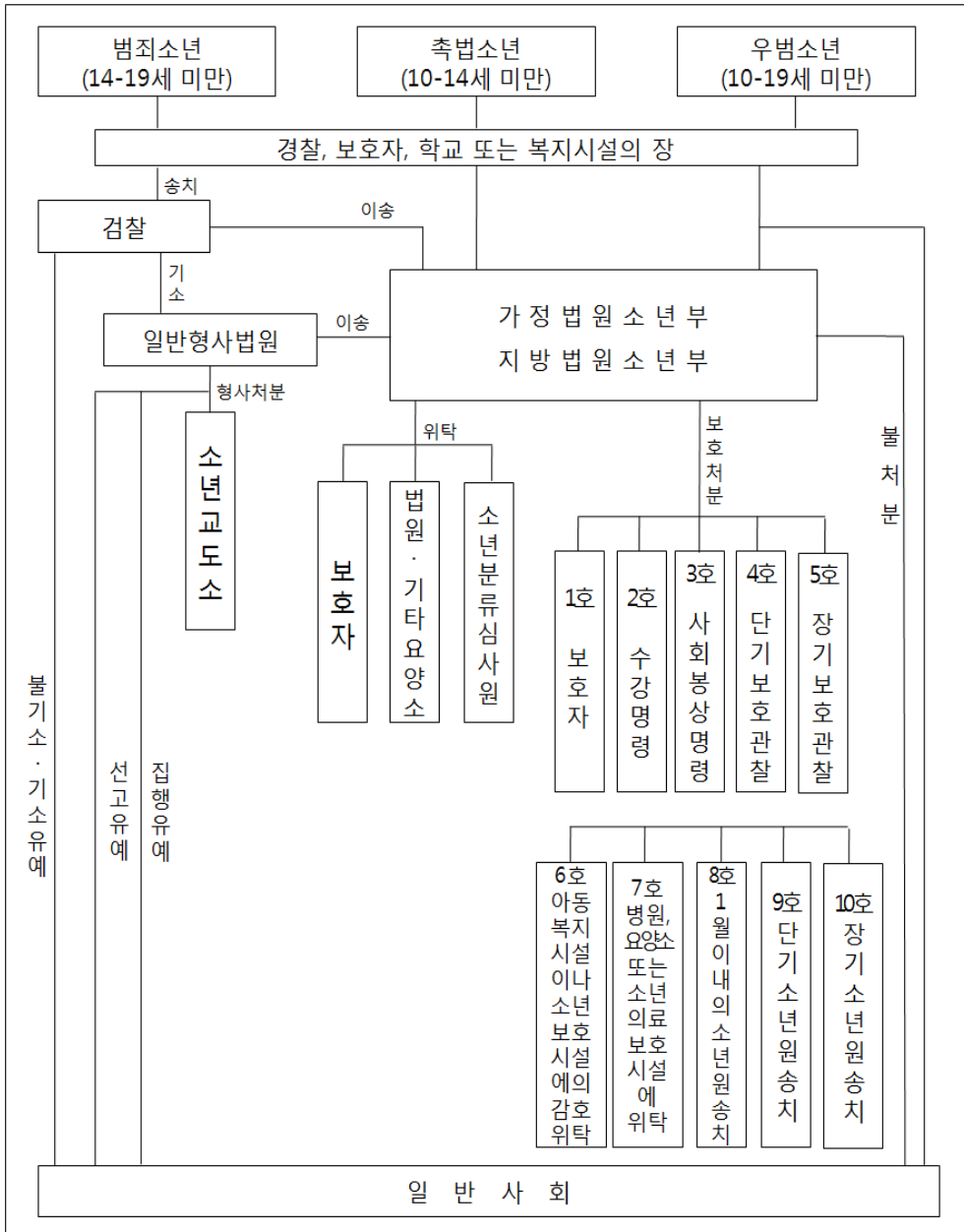
소년사건에 대한 처리절차를 도표로 나타내면 <그림 2-1>과 같다.

41) 제32조 ② 다음 각 호 안의 처분 상호 간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병합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제2호·제3호·제4호 처분
2. 제1항제1호·제2호·제3호·제5호 처분
3. 제1항제4호·제6호 처분
4. 제1항제5호·제6호 처분
5. 제1항제5호·제8호 처분

42) 위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한 경우 소년부는 소년을 인도하면서 소년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위탁받는 자나 처분을 집행하는 자에게 넘겨야 한다.(동조 제5항)

〈그림 2-1〉 소년사건 처리절차



\* 이영란, “소년사법절차에 관한 연구”, 소년보호연구 제15호, 한국소년정책학회, 2010.12, 13면의 <도표 3>을 기초로 하여 수정한 것임.

## 제3장 외국에서의 경찰의 소년범 처리절차

### 제1절 미 국

미국에 있어서 소년범에 대한 수사는 경찰뿐만 아니라 부모, 학교, 피해자, 보호관찰관 등에 의해 개시되는데, 경찰은 소년범의 수사과 체포에 있어서 성인범의 경우보다 더 많은 재량권을 가진다. 경찰은 범죄의 성질이나 소년의 비행전력, 타인의 신체·생명에 대한 위험가능성,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일정한 표준과 지침에 따라 선도프로그램 수강을 전제로 하여 소년을 석방할 수 있다. 또 경찰이 스스로 판단하여 재판 외의 절차에 회부하거나 지역사회봉사위원회 또는 복지기관에 위탁하는 다이버전 방식을 취할 수도 있다.<sup>43)</sup> 다만, 경찰이 소년을 체포한 때에는 소년의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지체없이 소년의 비행사실과 체포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미국에 있어서 경찰의 다이버전은 1965년 청소년 범죄가 심각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기존의 사법정책으로는 더 이상 증가하는 청소년의 재범률을 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연방위원회’를 설치하고 문제 해결 모색하면서 도입되었다. 이것은 수사 초기단계의 소년범에 대해 선도정책을 실시함으로써 형사절차로 인한 낙인효과를 차단하고, 경미초범 소년을 분리시켜 재범방지를 얻고자 한 것이었다. 이에 1968년 「‘소년비행의 예방과 통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미국 전역에서 확대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경찰다이버전의 실시 이후 재범율이 10% 수준으로 감소하였다고 한다.<sup>44)</sup>

미국에 있어서 경찰다이버전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애리조나 주 피닉스 경찰에서 1993년 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청소년통행금지 위반 다이버전프로그램(Juvenile curfew

43) 김은경 외, 앞의 논문(I-III), 61면 참조.

44) 경찰청, “청소년범죄 다이버전”(2012) 참조.

diversion program)’이 있다. 경찰은 통행금지를 어긴 청소년을 통행금지 시설로 운영되고 있는 레크레이션 센터에 위탁하고, 이곳에서 「통행금지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부모나 보호자가 올 때까지 보호한다. 한편에서는 부모나 보호자에 대한 교육도 제공하는데, 부모의 역할이나 문제해결을 위한 의사소통 기술의 개발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sup>45)</sup>

## 제2절 영국

영국에서는 소년사범에 있어서 경찰이 많은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경미범죄에 대하여는 경찰이 비공식적 경고(informal warning)에 의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이 처분은 정식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소년의 갱생에 있어서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일종의 다이버전 처분이다.<sup>46)</sup> 비공식적 경고에 의해 처리된 사건은 공적으로 기록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후 형사절차에서 원용되지 않는다.

또 경찰관이 비행사실을 입증할만한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고, 범죄소년이 비행을 자백하였으며, 유죄판결을 받은 전과가 없어서 소추하지 않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다<sup>47)</sup>고 판단되고, 보호자와 함께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경찰관은 법원에 송치하지 않고 훈계(reprimand)나 최종경고(final warning) 또는 조건부경고(youth conditional caution)를 한다.(범죄 및 질서위반법(Crime and Disorder Act, 1998) 제65조, 제66조) 훈계와 경고는 보호자의 참석하에 이루어지고, 보호자와 대상소년은 정해진 양식에 따라 훈계 또는 경고를 받은 것을 확인하는 서류에 서명을 하며, 사본은 소년범죄대응팀

45) 이금형, “비행소년에 대한 경찰의 다이버전 정책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47면.

46) 이승현a, “영국 소년사범제도의 최근경향”, 소년보호연구 제18호, 한국소년정책학회, 2012, 166면.

47) ‘공공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지’에 관한 판단이 용이치 않은 경우에는 YOT가 재범위험성에 관하여 작성한 ‘경고위험성 평가도구(Final Warning Asset)를 고려하여 처분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김혁a, 앞의 논문, 72면)

(Youth Offending Team : YOT)<sup>48)</sup>에게 보내진다. 통상 초범은 훈계, 2회째는 경고, 3회째는 기소를 하게 된다.<sup>49)</sup>

## 1. 훈계

훈계는 경미한 초범자를 대상으로 하는 가장 약한 처분으로 공식적인 구두경고이다. 훈계는 원칙적으로 1회만 가능하고, 경고를 받은 자에게는 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경고를 받은 지 2년이 경과하였고, 재판을 받을 정도의 심각한 비행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다시 훈계하고 방면할 수 있다. 훈계에는 의무적 개입프로그램이 뒤따르지 않으나 경찰이나 YOT의 권고에 따라 자발적으로 범죄예방 혹은 복지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경찰의 훈계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훈계는 매우 진지하고 중요한 것이다. 둘째, 매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후의 범죄에 대해서는 경고나 기소처분을 받게 된다. 셋째, 경찰은 훈계와 관련된 상세한 정보를 소년이 살아 있는 동안 보존할 것이고, 그 기록은 필요한 경우 공개된다. 넷째, 아동이나 소년에 대한 훈계처분은 장래의 범죄처리과정에서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다섯째, 「성범죄법(Sexual Offences Act, 2003)」에 적용되는 범죄인 경우 훈계를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그 법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지켜야 한다.

48) YOT는 소년비행예방과 범죄소년의 재범방지를 위해서 구축된 소년사법 관련기관의 협력체계기관이다. 지역에 따라 YOS(Youth Offender Services)라 불리기도 하며, 지방정부의 교육 및 사회복지 담당부서소속이다. 1998년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지방정부마다 2개 이상씩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2009~2010년 기준 전체 139개가 설치되어 있다고 한다. YOT는 경찰에서 훈계나 경고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해 범죄원인 등을 평가하며, 그 결과에 따라 언제 혹은 어떤 부분에서 소년에게 개입하는 것이 좋은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YOT에 대한 자세한 것은 법무부, 영국의 소년보호제도, 2011, 24~38면 참조)

49) 이하의 내용은 법무부, 앞의 책, 55~59면 참조.

## 2. 최종경고

최종경고는 구두경고라는 점에서 훈계와 같지만 경찰이 의무적으로 YOT에게 경고 대상자에 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YOT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최종경고자를 위한 평가도구(Assert - Final Warning Profile)를 이용해 비행소년에 대해 평가를 하며, 이때 가능하면 가정방문도 해야 한다. 만약 대상자가 평가를 위한 면접을 거부하면 2회의 기회를 준 후 기소할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한다. 경찰은 최종경고처분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YOT에 평가를 의뢰할 수도 있다. 경찰은 소년이 YOT의 평가에 참여하도록 하거나 경고처분을 실행하기 위해 보석을 명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경고처분은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통상의 경고(standard warning), 경찰관이 경고처분을 부과할 때에 피해자의 의사를 전달하는 회복적 경고(restorative warning), 피해자 및 관련당사자들이 참가하는 회복적 컨퍼런스(restorative conference) 등의 형태로 부과된다. 즉, 범죄내용이 경미한 때에는 경찰관과 소년 및 보호자와의 면담을 통하여 부과된다. 그러나 당해 범죄의 내용이 그보다 중하고 소년의 재범방지를 위한 복지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가, 가족, 커뮤니티, 피해자 등이 참가하는 회복적 컨퍼런스가 개최된다고 한다. 또 피해자가 당해 사건을 관여하는 것을 희망하지 않을 때에도 경찰관은 범죄가 피해자 및 커뮤니티에 미친 영향을 소년에게 인식시키는 등 회복적 기법을 이용하여 경고처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sup>50)</sup>

최종경고를 할 때에는 훈계와 달리 소년을 사회복귀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데, YOT의 평가에 따라 대략 1~10시간의 단기상담, 피해복구활동, 학교출석 등 생활지도를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시킨다. 소년은 특별한 사유 없이 프로그램에 불참할 경우 기소될 수 있으며, 경고처분에 따른 재범방지프로그램이나 회복적 사범 프로그램이 종료된 경우 YOT는 위의 평가도구를 이용해 범죄위험성이 개선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재평가를 한다.

50) 김혁a, 앞의 논문, 74면.

경찰이 최종경고를 할 때에는 소년에게 다음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첫째, 최종경고는 심각한 것이다. 둘째, 매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이후의 범죄는 기소된다. 셋째, 경찰은 경고기록에 대한 상세정보를 소년이 살아 있는 동안 보존할 것이고, 필요한 경우 공개할 수 있다. 넷째, 아동이나 소년에 대한 최종경고처분은 장래의 범죄처리 과정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다섯째, 최종경고처분을 내리기 전 혹은 경고를 받은 후 2년 안에 추가범죄로 기소되면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법원에서 조건부 방면(Conditional Discharge) 될 수 있다. 여섯째, 「성범죄법」에 적용되는 범죄인 경우 최종경고를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그 법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지켜야 한다. 일곱째, YOT 직원은 경고처분시 참석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소년관과 추가적 면담 일정을 잡을 수 있다. 여덟째, YOT는 경고대상자에 대한 평가를 하고, 소년의 범죄행동을 다루거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복지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피해자와 지역사회의 범죄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활동을 명할 수 있다. 아홉째, 정당한 이유 없이 위의 프로그램에 따르지 않을 경우 그에 대한 기록이 남으며, 이는 장래의 범죄처리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sup>51)</sup>

### 3. 조건부경고

조건부경고는 처분당일 사건이 종료되는 훈계나 최종경고와 달리 3개월 동안 효력이 있게 된다. 따라서 3개월 안에 추가범죄로 기소되면 조건부경고처분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4. 분류심사프로그램

영국의 분류심사프로그램(Police Triage)은 Sandwell 위기청소년지원(Targeted Youth

51) 훈계 및 경고처분을 받은 사실은 향후 5년간(5년 후 소년이 18세에 이르지 않았을 때에는 18세가 될 때까지) 경찰기록에 유지·관리되고, 경고처분을 받은 자가 2년 이내에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건부석방(conditional discharge)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1998년 법 제66조)(김혁a, 앞의 논문, 73면)

Support : TYS) 팀<sup>52)</sup>에서 운영하는 일종의 다이버전 프로그램이다. 이것은 2008년 11월 시범적으로 실시된 후 재범방지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sup>53)</sup>로 인하여 계속 실시되고 있으며, 경찰이 경미한 사건으로 소년을 체포하면 TYS팀에 소년에 대한 분류심사를 의뢰하고, TYS팀의 의견에 따라 더 이상의 사법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TYS팀의 개입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이다. 이 프로그램의 대상은 과거에 경찰로부터 훈계 또는 최종경고처분을 받은 경험이 있는 소년들이며, 예외적으로 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경험이 있는 소년도 포함된다.

경찰은 이 프로그램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28일 동안 보석을 명하고, 소년을 TYS팀의 프로그램 담당자에게 위탁한다. 그러면 담당자는 Onset를 이용해 소년에 대해 평가하고 적절한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거나 공동체 배상활동을 하게 한다. 소년이 성공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완수하면 보석이 취소되고, 사건은 종결되지만 프로그램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건을 법원에 넘기게 된다. 그 내용을 보면 프로그램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소년은 피해자에게 사과편지를 쓰거나 피해자에게 공감하고 그들의 범죄로 일어난 결과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작업에 참가한다. 더 나아가 분노관리, 신뢰구축, 또래 관계프로그램 등에 참여하기도 한다. 이 프로그램은 대개 6주 정도의 단기개입으로 끝나지만, 담당자는 해당소년이나 그들의 가족을 약물남용, 정신건강, 상담, 교육과 육아 분야의 관련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sup>54)</sup>

### 제3절 프랑스

프랑스에서는 소년<sup>55)</sup>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일반 성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형

52) 영국의 대부분 YOT에서는 TYS팀을 별도로 운영하여 위기청소년 비행예방프로그램(targeted prevention programme)을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53) 최근 1년 동안의 성과를 보면 이 프로그램을 받은 소년의 94%가 성공적으로 프로그램을 마쳐 사건이 종결되었으며, 이 프로그램을 받은 121명의 소년 중 112명이 재범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한다.

54) 법무부, 앞의 책, 146면 참조.

55) 18세미만의 자를 말한다.

소법 제17조 제1항<sup>56)</sup>에 의해 사법경찰에게 고소·고발할 수 있으며, 이때 초동수사권은 경찰 또는 헌병대가 갖는다.<sup>57)</sup> 이러한 소년의 수사는 각 경찰서의 담당부서에서 행하며, 검사의 지휘하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사건을 접수받은 경찰은 현행범인 경우나 법에 의해서 예정된 조건하에서 신원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년을 현장에서 체포하여 경찰서나 헌병대로 인계할 수 있다. 다만, 소년에 대한 강제수사는 예외에 속하며, 이외의 경우에는 수사판사의 명령이 있는 경우에만 체포할 수 있다.<sup>58)</sup>

한편, 사법경찰은 어떤 자가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였다고 추정할만한 징표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상 필요를 위하여 그 자를 24시간동안 경찰서에 유치할 수 있다. (형소법 제77조 제1항<sup>59)</sup>) 이를 ‘보호유치(garde à vue)’라고 한다. 사법경찰이 소년피의자를 보호유치하거나 구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검찰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호유치기간은 원칙적으로 24시간이며, 24시간 연장할 수 있다.(동조 제2항<sup>60)</sup>)<sup>61)</sup> 그러나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하고 있다고 추정할만한 징표가 전혀 없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들에 대한 진술청취에 필요한 시간 동안만 유치할 수 있다.(형소법 제62조 제5항<sup>62)</sup>)

56) 제17조 ① 사법경찰관은 제14조에 정한 권한을 행한다. 사법경찰관은 고소 및 고발을 수리한다. 사법경찰관은 제73조 내지 제78조에 규정된 요건 하에서 예비수사를 행한다.(이하 법내용은 법무부b, 프랑스 형사소송법, 2011. 11 참조)

57) 이하의 내용은 조종태, “프랑스의 소년사법제도 연구”, 해외연수검사연구논문집 제19집 1-2, 법무연수원, 2003, 401면 이하 참조.

58) 제5공화국 시절인 1958년 12월 22일 법률명령에 의하여 소년법원의 관여범위가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는 물론, ‘위험에 처한 청소년(les mineurs en danger)’에게 확장되었다고 한다. 즉, 소년판사에게 위험에 처해 있는 소년들에 대하여 보호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59) 제77조 ① 사법경찰관은 수사상 필요한 경우에 범죄를 범하였거나 또는 범하였다고 의심이 들게 하는 1개 또는 수개의 이유가 존재하는 자를 보호유치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은 보호유치를 시작한 때에 그 사실을 검사에게 보고하고, 보호유치된 자는 24시간을 초과하여 구금할 수 없다.

60) 제77조 ② 검사는 24시간이 경과하기 전에 보호유치를 최장 24시간 연장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보호유치를 연장하는 경우에는 미리 보호유치 대상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는 예외적인 경우에 보호유치 대상자의 인치없이 이유를 붙인 서면에 의한 결정으로 보호유치를 연장할 수 있다. 수사가 진행되는 장소가 사건을 인지한 검사의 관할구역 바깥인 경우 수사지를 관할하는 검사가 보호유치의 연장조치를 명할 수 있다.

61) 다만, 마약사범의 경우에는 형소법 제706-29조에 따라 보호유치기간이 24시간 외에 추가로 48시간 연장할 수 있고, 테러범죄의 경우에는 동법 제706조-23조에 의해 동일한 기간의 추가연장이 가능하다.

62) 제62조 ⑤ 범죄를 저질렀거나 저지르려 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없는 자에 대하여는 진술을 청

보호유치기간의 연장은 검사가 서면으로 허가하며, 13세 이상의 소년에 대해서는 검사 또는 수사판사가 소년을 면접한 후에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10세 미만의 소년은 보호유치 할 수 없으며, 10~12세의 소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보호유치가 허용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사법당국의 엄격한 통제 하에 최대 10시간 유치할 수 있다. 이를 도표로 나타내면 <표 3-1>과 같다.

〈표 3-1〉 프랑스의 소년유치제도

구 분	10~12세	13~15세	16~18세
가능한 처분	유치(retenue)	보호유치	보호유치
법적의 조건	범죄의 징표가 완연하고 미성년자가 중죄나 7년 이상의 금고형에 해당하는 경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미성년자가 중죄 또는 금고형에 처할 수 있는 경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징표가 있는 경우	
다른 조건	사법관의 사전동의	보호유치 후 즉시 관할 검찰청에의 보고	
처분기간	10시간, 예외적으로 사법관 앞에 출석한 후에 10시간 연장가능	24시간, 중죄나 5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경죄의 경우에는 사법관 앞에 출석한 후에 24시간까지 연장가능	24시간, 사법관 앞에 출석한 후에 24시간까지 연장가능

한편, 경찰이 소년을 보호유치한 경우에는 부모나 후견인, 보호유치된 소년의 고용주에게 검사의 결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16세 미만의 소년에게는 보호유치 즉시 의료검사가 실시되어야 한다. 16세 이상의 소년도 본인 또는 부모, 후견인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보호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도 새로운 의료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검사나 사법경찰도 직권으로 의료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형소법 제63-3조<sup>63)</sup>) 또 10세부터 12

취하는 경우 필요한 시간 동안만 유치할 수 있다.

- 63) 제63-3조 ① 보호유치된 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지정한 의사의 진료를 받게 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보호유치가 연장된 때에는 재차 진료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언제든지 직권으로 의사를 지명하여 보호유치된 자를 진료하게 할 수 있다.
- ③ 보호유치된 자, 검사, 사법경찰관 등 누구의 청구도 없는 경우에는 보호유치된 자의 가족이 의

세까지의 소년에 대하여는 경찰의 유치(retenu)가 시작되자마자 변호인접견이 이루어져야 한다. 13세부터 18세까지의 소년은 보호유치가 시작되면 그의 변호인과 접견할 수 있고, 접견 후 20시간이 경과하면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등의 요구에 의하여 다시 변호인을 접견할 수 있다. 경찰에서 보호유치된 미성년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비디오 촬영이나 녹음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 경우 촬영된 필름원본은 봉인하고 그 복사본은 수사기록에 첨부된다.

사법경찰은 보호유치 기간이 종료하면 즉시 보호유치된 혐의자를 검찰에 데려간다. 이때 검사는 대상자를 면담하고 그에 대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날 즉시 기소(즉시개정방식에 의한 기소) 또는 예심수사개시를 청구하면서 재판부나 수사판사에 대해 가구속을 요구한다.

## 제4절 캐나다

캐나다의 경우 경찰은 범죄를 실행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범인을 체포할 수 있다. 만약 경찰이 소년을 체포한 경우에는 소년에 대하여 ① 훈방(Taking No Further Action), ② 주의(Warnings), ③ 경고(Caution), ④ 위탁(Referrals) 등 네 가지 비사법 처분 중 하나를 선택하여 부과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진다.(소년사법법(the Youth Criminal Justice Act) 제6조 제1항) 이 때 경찰이 네 가지 처분들 중 하나를 부과하면 소년에 대한 사법절차는 종결되고 그 소년은 사회로 복귀한다. 만약 경찰이 위 네 가지 처분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소년에 대하여 ① 비사법 제재(an extrajudicial sanction)를 부과하거나 ② 위탁의견으로 송치, ③ 기소의견으로 송치 중 하나를 결정하여 검사에게 사건을 이송한다.<sup>64)</sup>

사의 진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지정한다.

- ④ 의사는 지체 없이 보호유치된 자를 진단하고, 진단서에 보호유치의 계속을 감내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진단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진단서는 사건기록에 첨부한다.
- ⑤ 특별규정에 따라 의사의 진료가 행해지는 경우에는 본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 1. 훈방

훈방이란 경찰이 더 이상 형사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석방하는 것을 의미한다. 경찰은 소년이 경범죄(minor offences)를 범한 경우 훈방을 실시하고 있다.(소년사법법 제6조 제1항) 훈방의 대상이 되는 경범죄는 대부분 사안이 경미하고 발생빈도가 높은 사건들이다. 따라서 경찰 및 다른 소년사법기관이 한정된 인력과 자원을 이런 분야에 까지 투입할 여력이 없으며, 소년의 부모, 피해자 또는 제3자가 이미 소년에게 자신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묻는 충분한 조치를 취했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경찰이 더 이상의 책임을 물을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 2. 주의

주의란 비공식적인 것으로 전형적인 경찰재량권의 행사이다. 많은 경범죄 사건들(minor cases)에 있어서 경찰의 주의는 소년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하는 주의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소년사법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한 대응수단이 되고 있다. 주의는 소년으로 하여금 사회에서 수용가능한 행동의 범위를 알려주는 기능을 한다.

## 3. 경고

경고란 공식적인 것으로, ‘좀 더 공식적인 주의(more formal warnings)’라고 할 수 있다. 「소년사법법」 제7조에 의하면 각 주에서는 ‘경찰 경고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sup>65)</sup> 있는데, 의무는 아니다. 따라서 경찰은 경고프로그램이 없다면 경고 대신에 주의를 사용함으로써 경고의 효과를 대신할 수 있다.

경고는 대부분 경찰관이 소년과 부모에게 편지를 보내는 방식을 취하거나, 소년과

64) 이하의 내용은 최응렬, 정우일, 차훈진, “회복적 사법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제17권 제1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6. 3., 19면 이하 참조.

65) 주지사가 임명한 검찰총장 또는 기타 장관은 이 법이 규정하고 있는 소년에 대한 사법처리를 대신 하여 경찰에게 경고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고 한다.

부모를 경찰서로 소환하여 고참 경찰관이 소년의 범죄사실에 대해 상담하는 방식을 취한다. 경고는 소년에게 범죄의 심각성을 일깨워 주고, 현재 소년이 주의와 사법처리 사이의 단계에 있음을 인식시키려는 것이므로 소년을 사법처리하기 위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소년이 경찰관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거 범죄와 현재 범죄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경과가 있거나, 과거 범죄가 경미하거나, 과거 범죄와 현재 범죄가 질적으로 상이한 범죄인 경우는 다시 경고를 할 수 있다.<sup>66)</sup>

#### 4. 위탁

위탁이란 경찰이 소년을 지역사회 프로그램에 위탁하는 것을 의미한다. 경찰은 소년이 범죄를 실행했다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소년을 사법처리하는 대신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선도할 수 있는 지역사회 프로그램이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위탁의 목적은 범죄 원인들을 제거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나 단체들에 소년범죄자를 연결시켜 주는 데에 있기 때문에 경찰의 비사법 처분 중에서 위탁은 일종의 ‘기소 전 전환(a form of pre-charge diversion)’의 성격을 가진다. 위탁은 오락 프로그램, 상담 기관, 아동복지기관 및 정신건강 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지역사회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이때 사전에 검찰총장 등의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경찰관이 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소년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소년은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 받아야 하고, 변호인과 접견할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66) 호주에서도 경고가 시행되고 있는데, 연구결과를 보면 경찰로부터 경고를 받은 70~85%의 소년들이 재범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Federal-Provincial-Territorial Task Force on Youth Justice, 1996: 153~154).(최응렬 등, 앞의 논문, 23면에서 재인용)

## 5. 비사법제재

### 가. 개관

비사법제재란 경찰이 자신의 범죄사실을 인정한 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비사법제재 프로그램에 위탁하는 것을 의미한다.(소년사법법 제10조 이하) 소년이 범죄의 실행에 참가(participation)하거나 관여(involvement)한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비사법 제재를 부과할 수 없다. 비사법제재 프로그램은 위탁프로그램과 달리 사전에 검찰총장 또는 주지사가 임명한 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경찰관은 소년범죄사건을 처리하면서 소년이 저지른 범죄의 경중, 과거 범죄의 성격 및 횡수, 주변 환경의 영향 등을 고려하여 훈방·주의·경고·위탁 등의 처분을 부과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비사법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sup>67)</sup> 비사법제재는 경찰뿐만 아니라 검사 또는 기타 관련 공무원 등도 부과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비사법제재의 내용 및 절차 등을 소년에게 충분히 고지하여 소년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 동의 전에 변호인 선임 및 접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소년이 입건되거나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소년법원의 정식재판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비사법제재를 부과할 수 없다.

또 소년이 비사법제재 프로그램에 위탁된 경우 프로그램 집행자는 그 소년의 부모에게 프로그램의 내용 및 절차 등에 대해 통지해야 한다. 또 피해자의 요구가 있으면 경찰, 검찰총장, 피해자 지원단체 등은 피해자에게 소년의 신분, 사건의 처리절차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나. 비사법처분을 위한 회의

2003년 「소년사법법(the Youth Criminal Justice Act)」의 시행으로 비사법 처분을 부

67) 중범죄자와 상습범죄자는 소년판사에 의한 사법심판의 대상이 되므로 비사법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준중범죄는 ① 5000 캐나다 달러 이하 절도 ② 장물취득 ③ 법원출석위반 ④ 처분준수 위반 등이다.(최응렬 등, 앞의 논문, 38면)

과할 수 있게 된 경찰은 과거보다 훨씬 유연한 입장에서 지역사회와 동반자들과 협력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캐나다의 소년범죄 대응전략은 경찰이 지역사회에서 범죄예방을 위해 학교, 기타 사회 및 소년단체들과 강력한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도록 요구하는 ‘사회 발전을 통한 범죄예방 모델(a crime prevention through social development model)’을 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범죄의 위험성이 있는 초기단계에 개입하여 소년범죄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전환 및 회복적 사법 전략을 이용한 소년 선도예방 프로그램들을 실시하고 있다. 이때에는 반드시 각종 지역의 프로그램과 연계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회복적 사법의 특징에 가장 잘 부합하는 것이 바로 경찰에서 실시하고 있는 소년범죄자 처우를 위한 ‘회의’이다. 즉, 「소년사법법」 제19조에 의하면 경찰관 등은 비사법적 처분을 부과하기 전에 소년범죄자에 대한 적절한 처우를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거나 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이 회의에서는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참여하여 소년범죄사건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하면서 보다 창의적인 해결방법을 제시하고, 보다 적절한 처우를 위해 의견을 조정한다. 회의의 인적 구성원은 상황에 따라 가해자인 소년과 피해자, 그 부모, 소년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 이웃주민, 지역사회단체의 대표 또는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 등 다양하게 구성된다. 다만, 가해자와 피해자에게는 자발적인 참석이 요구된다.

회의는 주로 경찰이 특정 소년에게 범죄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적절한 비사법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조언하는 회복적 기제의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정책적 조언을 제시하는 전문가 회의의 역할도 수행한다.

## 제5절 뉴질랜드

### 1. 개관

범죄를 범한 소년에 대한 경찰단계에서의 처우로는 체포, 다이버전, 청소년원조부(Youth Aid Section)에의 송치 등의 3가지가 있다.<sup>68)</sup> 체포는 소년의 법원에의 출두를

확보하기 위하여나 또는 재범 및 증거은닉의 방지하기 위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경미한 범죄내지 초범의 경우에는 현장에서의 경고 등의 전환처우가 이루어진다. 하지만 지속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소년원조부에 사건을 송치할 수 있다. 청소년원조부에서는 소년의 부모를 불러 소년에게 경고처분을 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사죄 또는 사회 내 노동 등의 부가적인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한편, 청소년원조부에 송치된 사건이 청소년원조부의 통상적인 업무의 범위를 넘는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사건을 사회복지국(Department of Social Welfare)의 ‘청소년사법조정관(Youth Justice Coordinator)’에게 송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가족집단협의회가 개최된다. 청소년사법조정관<sup>69)</sup>은 사건이 중대한 경우이거나 소년에게 전과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족집단협의회가 아니라 다이버전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경찰과 교섭한다. 또 이들은 법원 또는 교통사건처리와 관련된 운송부(Ministry of Transportation, MOT) 등의 다른 집행기관으로부터 사건송치를 수리한 경우에도 경찰과의 다이버전의 교섭을 실시한다.

## 2. 가족회합제도

뉴질랜드에서는 소년사범에 대한 회복적 사법의 일환으로 가족회합제도가 시행되고 있다.<sup>70)</sup> 가족회합(Family Group Conferencing)은 당해 청소년이 기소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이미 유죄가 평결된 사건의 처분에 한정되며, 기소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소년사법절차의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sup>71)</sup> 이것은 다음의 것을 그 목적으로 하

68) 이하의 내용은 박상열, “뉴질랜드의 소년사법제도”, 소년보호연구 제18호, 한국소년정책학회, 2012, 37~39면 참조.

69) 청소년사법조정관은 여러 가지의 경력을 갖고 있는 자들로 구성되는데, 예를 들어 사회복지기관, 보호관찰기관, 교정시설 등에 근무한 경력을 갖고 있는 자들로서 상당수가 마오리족이며, 사회복지국에서 임명한다.

70) 자세한 것은 George Mousourakis(김희균 역), “소년범죄에 대한 뉴질랜드의 가족단위협의회 : 정책과 현행 실무의 개관”, 피해자학연구 제14권 제2호, 한국피해자학회, 2006.10, 89면 이하; 김성돈, “우리나라 소년사법에 있어서 가족집단협의 제도의 도입방안”, 피해자학연구 제13권 제2호, 한국피해자학회, 2005.10, 139면 이하; 박상열, 앞의 논문, 43~44면 등 참조.

고 있다. 첫째, 가해소년에게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게 하고, 자신이 저지른 행동의 결과를 회복하게 하기 위해 노력하게 한다. 둘째, 피해소년이 받았던 신체적·정신적 피해와 금전적 손상 및 피해소년의 부모의 정신적 피해를 회복하고, 나아가 추가적인 피해로 인한 손상을 최소화한다. 셋째, 가해소년과 가해소년의 가족, 피해소년과 피해자의 가족이 사건에 관련된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도록 한다.<sup>72)</sup>

가족회합은 형사절차가 예상되는 경우에 의무적으로 당해사건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소집되며,<sup>73)</sup> 당해 소년을 시작으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변호사, 가족구성원과 그 가족이 초대할 자,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 경찰, 피해자의 가족, 청소년사법조정관 등으로 구성된다. 가족회합은 소년이 체포되지 않고 경찰의 청소년원조부에 위탁된 경우에는 기소 이전에 소집되어야 하며, 청소년을 위한 처분계획을 작성하거나 기소를 포함한 적절한 권고를 할 책임이 있다. 그 범위는 사회 내 노동, 손해배상(reparation), 사죄(apology) 등을 포함한다. 소년이 체포되어 살인 또는 구금형에 의해 처벌되지 않는 교통범죄 이외의 범죄 등으로 청소년법원에 송치되어 유죄가 판결된 경우에는 가족회합을 소집하기 위하여 당해사건의 최종판단을 연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족회합은 당해소년에 대해 처분계획을 작성하거나 적절한 권고를 할 책임이 있으며, 청소년법원은 당해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가족회합의 권고 등을 존중하여야 한다.

71) 뉴질랜드의 소년사법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회복을 위한 대화과정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순수모델’이라 할 수 있으며, 소년사법절차를 회복적 사법으로 전환한 것으로 ‘소년사법절차 대체형’에 해당한다고 한다. 또한, 회의에 진행담당자 및 가해자·피해자, 그리고 가족과 범죄와 관계되는 공동체의 대표가 회의에 참가하고 있으며, 회의의 주요목표가 범죄사실을 분명히 하여 가해자에게 비난을 가하고 피해배상을 하도록 하며, 가해자의 사회복귀를 촉진시킨다는 점에서 ‘가족집단회의형’에 속한다고 한다.(박상열, 앞의 논문, 33~34면)

72) 김은경 외, “21세기 소년사법 개혁의 방향과 과제 (I) - 제II부 새로운 대응방안으로서 회복적 사법의 실제와 전망”,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7, 152면.

73) 당해 청소년이 구금되어 있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하며, 법원이 가족회합의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한다. 또한, 청소년사법조정관이 체포되어 있는 청소년에 대하여 기소예정의 통지를 받거나 10세부터 13세까지의 아동이 범죄를 이유로 원호 및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에는 그 통지의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한다.(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박상열, 앞의 논문, 43~48면 참조)

## 제6절 일본

일본 「소년법」에서는 소년범을 우리나라와 같이 범죄소년,<sup>74)</sup> 촉법소년,<sup>75)</sup> 우범소년<sup>76)</sup>으로 구분하여 처리하고 있다.<sup>77)</sup>

### 1. 범죄소년

#### 가. 사건의 송치

일본 형소법 제246조에 의하면 사법경찰원은 범죄수사를 한 때에는 신속하게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일반원칙은 소년<sup>78)</sup>사건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되지만(제40조), 「소년법」은 그 특칙으로서 사법경찰원으로부터 가정재판소에 직접 사건을 송치해야 할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제41조) 따라서 경찰에 있어서 소년범의 사건처리로는 「소년법」에 의한 가정재판소에의 송치와 형소법 제246조에 의한 검찰에의 송치가 있다. 「소년법」에서는 모든 소년사건을 가정재판소에 집중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검사의 기소유예(형소법 제248조)는 인정되지 않고, 경찰에 있어서 소위 미죄처분(微罪處分)(동법 제246조 단서, 犯搜規 제198조)<sup>79)</sup>도 소년사건에 대해서는 인

74) 범죄소년은 죄를 범한 소년이지만 14세 미만의 소년의 행위는 형법상 범죄로 되지 않기 때문에(형법 제41조), 14세 이상 20세 미만으로서 죄를 범한 소년을 말한다.(소년법 제3조 제1항 제1호)

75) 14세에 이르지 않은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소년법 제3조 제1항 제2호)

76) (i)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따르지 않은 성벽이 있는 것, (ii) 정당한 이유없이 가정에 가지 않는 것, (iii) 범죄성이 있는 사람 혹은 부도덕한 사람과 교제하거나 또는 수상한 장소에 출입하는 것, (iv) 자기 또는 타인의 덕성을 해치는 행위를 하는 성벽이 있는 것 중의 하나에 해당하고, 동시에 그 성격 혹은 환경에 비추어 장래 죄를 범하거나 또는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소년을 말한다.(소년법 제3조 제1항 제3호)

77) 이하의 내용은 河村 博 編著, 少年法 - その動向と實務, 東京法令出版, 2009, 65면 이하 참조

78) 20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소년법 제2조 제1항)

79) 미죄처분은 일정한 경미사건에 대하여 전건송치주의의 예외로 검사가 가지는 기소유예권의 행사를 사법경찰원에게 위임하는 것을 말하며, 미죄사건에 대하여는 송치를 요하지 않고, 1월마다 일괄적으로 그 내용을 검사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미죄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되지 않기 때문에 검사에 의하여 특별히 입건되지 않는 한 당해사건의 피의자로서 기소되지 않는다.(松本時夫, 土本武司,

정되지 않는다. 즉, 일본에서는 성인의 경우와는 달리 소년사건의 경우에는 아무리 경미한 사건이라도 기소유예나 미죄처분과 같은 수사기관이 사건을 종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수사기관은 모든 사건을 가정재판소에 송치하여야 한다.(전건송치주의)<sup>80)</sup> 따라서 일본에서는 송치 전에 경찰이 회복적 사법을 도입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송치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가정재판소 송치 후에는 경찰의 관여가 차단된다.<sup>81)</sup>

### 나. 가정재판소에의 송치

사법경찰원은 소년피의사건에 대한 수사결과 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한 때에는 가정재판소에 송치하여야 한다.(제41조 전단). 범죄 혐의가 없는 경우에도 가정재판소에 부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마찬가지로이다.(동조 후단) 벌금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사건(제20조 제1항) 및 축법사건, 우범사건은 처벌대상이 아니고, 보호절차로서 종결하므로 가능한 한 빨리 가정재판소의 보호절차로 옮기는 것이 좋기 때문에 검찰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가정재판소로 송치하게 되

條解 刑事訴訟法(第3版 増補版), 弘文堂, 2008, 438면) 미죄처분 대상사건은 (i) 성인사건으로 (ii) 범죄사실이 경미한 것, (iii) 절도·사기·횡령·도포죄에 대하여는 피해액인 1만엔 이하이고(피해회복의 경우에는 이것을 다소 초과해도 상관없다.) 범정이 경미하며, 피해회복이 되어 있는 것,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것, 피의자가 품행불량자가 아닌 것, 우발적 범행일 것, 재범의 우려가 없는 것, (iv) 도박에 대하여는 득실의 목적인 재물이 극히 적고, 범정이 경미하고, 공범자 모두가 재범의 우려가 없는 초범자일 것, (v) 폭행에 대하여는 우발적 범행으로 범정이 경미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것 등이다. 다만, 피해자가 불명 등의 이유로 증거품의 환부불능, 피의자를 체포한 사건(통상체포 또는 긴급체포), 현행범체포한 사건으로 24시간 이상 피의자를 유치한 사건, 고소·고발·자수한 사건 등은 제외된다.(菊田幸一, 西村春夫, 宮澤節生, 社會のなかの刑事司法と犯罪者, 日本評論社, 2007, 205~206면)

80) 수사기관 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가정재판소의 심판에 부하여질 소년을 발견한 때에는 이것을 가정재판소에 통고(가정재판소에 통보해서, 그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통지행위를 말한다.)할 의무가 부과되어 있다.(소년법 제6조 제1항)

81) 하지만 일본에서도 경찰이 (송치를 전제로 하여) 가정재판소 송치 전에 훈계나 조언을 하거나, 불량행위소년에게 주의나 비행방지를 위한 조언이나 지도가 가능한 것(소년경찰활동규칙 제13조)에 근거하여 당사자의 동의를 전제로 회복적 사법조치를 할 수 있고, 소년이 재차 비행그룹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불처분 또는 보호처분이 끝난 소년에게 당사자의 동의를 전제로 회복적 사법조치를 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細井洋子, 西村春夫, 櫻村志郎, 辰野文理 編著, 修復的司法の統合的研究, 風間書房, 2005, 157면)

어 있다.

가정재판소로 직접 송치해야할 경우를 분설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이다. 법정형으로서 벌금이하의 형(벌금, 구류, 과료)만이 규정되어 있는 죄를 말하고, 벌금이하의 형과 금고이하의 형(금고, 징역, 사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죄의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검찰에 송치하여야 한다.

- (i) 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죄의 사건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의 사건과 병합죄(형법 제45조) 또는 과형상 1죄, 즉 상상적 경합 혹은 결련범(동법 제54조)의 관계에 있는 때 - 소년사건에 있어서는 소년을 전인격적으로 고찰해서 보호하는 목적을 고려할 때 동일소년의 관련사건을 통일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요청이 성인 이상으로 강하므로, 위의 경우에는 일괄해서 검찰에 송치한다.(犯搜規 제210조 제2항 참조)
- (ii) 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죄의 사건이 고소, 고발 또는 자수에 의한 것인 때 - 고소, 고발, 자수사건의 송부에 관한 형소법 제242조<sup>82)</sup> 및 제245조<sup>83)</sup>는 동법 제246조의 예외를 정하는 특별규정으로 해석한다.(이설 있음) 한편, 「소년법」 제41조는 형소법 제246조<sup>84)</sup>의 특칙으로 해석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고소, 고발에 의한 사건에 대하여 고소인 등의 입장을 충분히 배려할 필요가 있고(형소법 제260조,<sup>85)</sup> 제261조<sup>86)</sup> 참조), 자수는 형의 감면사유로(형소법 제42

82) 제242조(사법경찰원의 절차) 사법경찰원은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신속하게 이것에 관한 서류 및 증거물을 검찰관에게 송부해야만 한다.

83) 제245조(자수) 제241조((고소·고발의 방식) 및 제242조(사법경찰원의 절차)의 규정은 자수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84) 제246조(사법경찰원으로부터 검찰관으로의 사건 송치) 사법경찰원은 범죄의 수사를 한 때에는 이 법률에 특별히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속하게 서류 및 증거물과 같이 사건을 검찰관에게 송치하여야만 한다. 다만, 검찰관이 지정한 사건에 대하여는 이 제한은 없다.

85) 제260조(고소인에 대한 기소불기소의 통지) 검찰관은 고소, 고발 또는 청구가 있는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또는 이것을 제기하지 않은 처분을 한 때에는 신속하게 그 지(旨)를 고소인, 고발인 또는 청구인에게 통지해야만 한다. 공소를 취소하거나 또는 사건을 다른 검찰청의 검찰관에게

조 등) 검사에게 사건의 내용을 알리고 처리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이들 규정은 「소년법」 제41조에 우선하는 것으로 해석한다.<sup>87)</sup> 다만, 가정재판소가 이것을 간과해서 절차를 진행하고, 보호처분을 부과한 경우에도 이 결정을 무효라고 할 정도의 하자는 아니라고 한다.

- (iii) 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혐의는 인정되지만 심판조건을 흠결한 때 - 심판조건을 흠결한 때에는 가정재판소는 절차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원칙에 따라 검찰에 송치한다. 사법경찰원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사건을 잘못하여 가정재판소에 직접 송치한 경우에는 이 절차는 「소년법」 제41조, 형소법 제246조에 위배하는 위법이기 때문에 가정재판소로서는 심판조건 흠결을 이유로 심판불개시결정을 한 다음, 다시 검찰을 경유하여 사건을 송치시켜야 한다. 다만, 가정재판소가 이것을 간과하고 절차를 진행하여 보호처분 결정, 逆送결정 등을 한 경우에도 송치절차의 하자 때문에 이들 결정이 무효로 된다고 해석할 정도는 아니라고 한다.

둘째, 범죄혐의는 없지만 축범 또는 우범사유가 있는 경우이다. 축범사건이나 우범사건은 수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이 축범소년, 우범소년을 발견한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통고 혹은 송치를 해야 한다. 실무상 범죄사건으로 수사가 개시되었지만 단지 축범사유나 우범사유가 있음에 지나지 않는 사례가 있다. 이 같은 경우에 경찰이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거나 우범소년 등을 이유로 해당기관에 통고하는 것도 상당하지 않기 때문에 「소년법」 제41조 후단에서는 그 같은 경우에 가정재판소에 송치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축범소년에 대하여는 처리시의 연령에 관계없이 아동상담소 등에서의 통고 또는 송치를 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종래의 통설에 따르면 본조 후단의 적용이 있는 것은 우범소

송치한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86) 제261조(고소인등에 대한 불기소 이유의 고지) 검찰관은 고소, 고발 또는 청구가 있는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처분을 한 경우에 있어서 고소인, 고발인 또는 청구인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신속하게 고소인, 고발인 또는 청구인에게 그 이유를 알려주어야만 한다.

87) 昭和 46.10.29 最高裁家庭局長回答, 家月 24.2.11

년 중 14세 이상의 자에 한정되고(소년법 제3조 제2항 참조), 촉법소년 및 14세 미만의 우범소년은 아동상담소에 통고해야 하는 것으로 된다. 하지만 촉법소년도 수사기관이 취급하고 있는 사이에 14세에 도달한 경우에는 직접 가정재판소에 송치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유력설에 따르면 촉법소년 및 14세 미만의 우범소년도 포함되는 것으로 된다. 또 14세 이상 18세 미만의 우범소년에 대하여 「소년법」 제41조 후단에 의해 송치해야 하는 경우에도 경찰관은 우선 「아동복지법」에 의한 조치에 맡기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접 아동상담소에 통고하는 것도 가능하다.(제6조 제2항, 또 少警規 제33조 참조)<sup>88)</sup>

#### 다. 검찰에의 송치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의 사건과 그 외 가정재판소에 직접 송치해야 하는 사건 이외의 사건은 형소법 제246조에 따라 모두 검찰에 송치해야만 한다.<sup>89)</sup>

#### 라. 간이송치

통상의 송치절차의 예외로서 소위 간이송치절차가 1950년 이래 행하여져 오고 있다. 이것은 최고재판소, 최고검찰청 및 국가지방경찰본부 사이에서 행하여진 협의 결과<sup>90)</sup>로, 경찰이 소년의 사안이 경미하고 요보호성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는 소년에게 훈계만을 하고 검찰 또는 가정재판소 소년부에 비행사실과 약간의 정상을 기재한 송치서만을 매월 1회 일괄 송부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성인에 대한 미죄처분과 달리 전건 송치주의에 대한 예외는 아니다. 이것은 사안이 극히 경미한 소년사건까지 일률적으로

88) 가정재판소에 직접 사건송치를 하는 경우에는 형소법 제203조 제1항 중 '검찰에 송치하는 절차'라고 하는 것은 '가정재판소에 송치하는 절차'로 바꾸어 읽어야 할 것이고, 또 동조 제4항의 '송치의 절차'는 가정재판소에 대한 송치의 절차를 말하는 것으로 된다. 가정재판소에 대한 송치의 방식에 대하여는 규칙 제8조에 정하여져 있다.

89) 소년사건이 다른 소년사건 또는 성인사건과 관련하는 경우의 취급에 대하여는 犯搜規 제211조, 제212조 참조.

90) 일본 最高裁家庭甲第235號家庭局長通達 '簡易送致事件の處理について'(昭和 25.8.14.)

복잡한 절차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은 소년의 보호지도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으며, 경찰의 사건송치의욕이 저하되는 것을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간이송치는 법규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관계기관의 협의에 기한 통달에 의한 운용으로 각 가정재판소의 기준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각 가정재판소에 대응한 지방검찰청 및 경찰본부가 협의하여 각각의 기준을 정하고 있다고 한다. 간이송치의 대상은 절도, 사기, 횡령 및 장물 등에 관한 죄, 기타 장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로 피해액 또는 장물의 가액 총액이 약 1만엔 미만이고, 기타 범의침해의 정도가 극히 경미한 것 등에 해당하는 경우이다.<sup>91)</sup>

간이송치가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경찰에서 성인사건의 미죄처분의 경우의 처치(犯搜規 제200조 참조)에 준해서 소년, 보호자 등에 대한 훈계, 주의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한 다음, 극히 간략화된 방식에 따라 사건을 검찰 또는 가정재판소에 매일 일괄송치한다.(犯搜規 제214조) 가정재판소의 취급도 원칙적으로 서면심리로 마치는 등, 될 수 있는 한 간략한 절차에 의해 처리하는 것으로 된다.<sup>92)</sup> 그러나 간이송치는 송치 절차의 간략화를 의미하므로 간이 송치 된 사건에 대하여 가정재판소가 통상의 방식으로 조사·심판을 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경우 가정재판소로부터 자료의 추가송부가 요구되면 수사기관은 될 수 있는 한 신속하게 이에 응해야 한다. 만일 간이송치 절차에 의해서는 아니 될 사건을 이 절차로 송치한 경우에도 송치자체는 유효하기 때문에 새로 송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료의 추가송부 등을 하면 된다.<sup>93)</sup>

91) 다만, 총포·도검 등을 범행도구로 사용한 경우, 피의사실이 2 이상인 경우(범행 일시 및 장소가 접착하여 1개의 기회에 행한 동일 죄중은 제외), 과거 2년 이내에 가정재판소에 송치 또는 통고된 경우, 피의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경우, 고소 또는 고발사건, 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체포(경찰에의 인도 후 즉시 석방된 경우는 제외)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권리자에게 반환할 수 없는 증거물이 있는 경우에는 간이송치의 대상에서 제외된다.(일본 最高裁家二第 000730號家庭局長通達 '簡易送致事件の處理について'(平成 17.7.13.) 참조)(김혁a, 앞의 논문, 76면)

92) 간이송치를 송부받은 가정재판소는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서기관이 기재사항 및 비행력을 검토한 후 간이송치의 형식적 요건에 합치되는지 여부를 재판관에게 보고하여 문제가 없으면 심판불개시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하게 된다.(服部朗, “「輕微な」非行の取扱い簡易送致の運用をめぐって”, 法律時報 제63권 제12호, 1991.12, 法律時報社, 62면)

93) 이에 대하여는 형식적인 기준의 적용에 흘러 전건송치주의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라든가 수사기관인 경찰에게 실질적인 처우에 관한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는 것 등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菊田

이러한 간이송치제도에 대하여는 이에 대하여는 형식적인 기준의 적용에 흘러 전건 송치주의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라든가 수사기관인 경찰에게 실질적인 처우에 관한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는 것<sup>94)</sup> 또는 아무런 개입조치 없이 사실상 범죄소년을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소년의 건전육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 등이 제기되고 있다.<sup>95)</sup>

## 2. 촉법소년

촉법소년 사건에 대하여는 (i) 경찰은 범죄수사에 관련해서 취급하는 경우와 (ii) 소년보도<sup>96)</sup> 등의 행정경찰활동의 과정에서 취급하는 경우가 있지만 범죄소년 사건으로 체포해서 취조한 결과 촉법소년 사건인 것이 명백해진 때에는 수사를 종결하고, 곧바로 신병을 석방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체포절차서·辨解錄取書 등을 작성하고, 체포절차의 유효성을 확보해 두어야 한다.

또 위의 (i) 또는 (ii)의 어느 경우에도 경찰은 객관적인 사정으로부터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촉법소년이라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발견한 경우에 있어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사건에 대하여 조사<sup>97)</sup>를 할 수 있다.(소년법 제6조의2 제1항) 촉

幸一, 少年法, 北樹出版, 2002, 56~57면; 裁判所書記官研修所 編, 少年法實務講義案, 法曹會, 1991, 88~91면 등 참조) 또 아무런 개입조치 없이 사실상 범죄소년을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소년의 건전육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 등이 제기되고 있다.

94) 菊田幸一, 少年法, 北樹出版, 2002, 56~57면; 裁判所書記官研修所 編, 少年法實務講義案, 法曹會, 1991, 88~91면 등 참조.

95) 김혁a, 앞의 논문, 76면 참조.

96) 일본에서는 '소년보도센터'가 소년비행화방지정책의 실현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그 주관부국은 당해 지방공공단체의 종합적 청소년대책주관부국 또는 아동복지, 교육 혹은 경찰부국이 한다. 소년보도센터는 일반직원, 교육직원, 경찰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주요활동으로는 (i) 비행소년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는 불량행위소년에 대한 보도활동, (ii) 학교폭력피해소년에 대한 상담활동, (iii) 그 외 소년비행의 유발요인으로 지적되는 유해환경에 대한 정화활동 등이 있다. 이러한 활동은 관계기관과 일반시민(보도위원)이 공동으로 하고 있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자세한 것은 강경래, "일본의 소년비행화에 대한 사전예방정책", 소년보호연구 제12호, 한국소년정책학회, 2007, 171면 이하 참조)

97) '조사'라고 하는 이유는 촉법소년이나 우범소년의 비행사실은 범죄가 아니므로 형소법상 수사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실무상 촉법행위나 우범사유 해당행위를 '해명'하는 경찰관의 직무행위는 수사가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다.(葛野尋之 編, 少年司法改革の檢證と展望, 日本評論社, 2006, 210면)

법소년에 대한 조사는 소년의 정조의 보호에 배려하면서 사안의 진상을 명백히 하고,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조치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행하여진다.(동조 제2항)<sup>98)</sup> 조사사항은 행위의 구체적인 태양, 동기배경을 포함한 사안의 전부이므로 조사는 필연적으로 상세하게 되고, 그에 수반하여 장기화하게 된다.<sup>99)</sup> 또 소년의 특성에 일층 배려한 조사를 하기 위해 경찰관의 지휘명령에 의해 소년의 심리 및 그 외의 특성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少年補導職員’이라고 불리는 경찰직원이 임의조사를 할 수 있다.(동조 제3항)<sup>100)</sup>

경찰은 임의조사로 소년, 보호자 또는 참고인에 대해 호출하여 질문(소년법 제6조의4 제1항)하거나 공무소 등에 대한 조회(동조 제3항)할 권한을 가진다. 다만, 이 권한은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질문에 당하여 강제에 해당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된다.(동조 제2항) 또 경찰은 대물강제처분으로서 압수, 수색, 검증 또는 감정촉탁을 할 수 있다.(제6조의5 제1항) 그 절차에 대해서는 형소법 중의 사법경찰직원이 행하는 압수 등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만(동조 제2항), 촉법소년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소년의 체포, 구류 등의 신병구속은 인정되지 않고, 감정유치에 관한 것도 제외된다.<sup>101)</sup>

경찰은 위의 조사 결과 (i) 촉법소년 사건에서 「소년법」 제22조의2 제1항 각호에 기재한 죄, 즉, 고의의 범죄행위에 의해 피해자를 사망시킨 죄 또는 그 이외의 사형 혹은 무기 또는 단기 2년 이상의 징역 혹은 금고에 해당하는 죄에 관한 형벌법령에

98) 촉법소년 조사의 기본사항에 대하여는 少警規 제15조 참조.

99) 葛野尋之 編, 앞의 책, 212면.

100) 심리학 등 전문적 지식이나 기능을 가진 소년보도직원이 조사를 담당하게 한 것은 소년의 특성을 배려한 조치이다.(葛野尋之 編, 앞의 책, 212면)

101) 소년 및 보호자는 촉법소년에 관련된 조사에 있어서 변호사인 부첨인(付添人)을 선임할 수 있다.(제6조의3) 이것은 촉법소년사건에 관한 경찰의 강제처분권 부여에 상응하여 소년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때 소년은 단독으로 부첨인을 선임할 수 있고, 보호자는 그 동의가 없는 것을 이유로 소년에 의한 선임을 취소할 수 없다. 부첨인은 소년에 대하여 심판단계의 부첨인(법 제10조)과 같이 소년에 대해 범적인 충고를 할 수 있고, 조사단계에서 경찰이 행한 소년에 대한 압수 등의 처분에 관해 준항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부첨인’은 우리나라 「소년법」 제17조의 ‘보조인’과 같은 의미이다. 그 선임절차에 대하여는 少警規 제19조 참조.

저촉하는 것인 경우, (ii) 이외의 촉범소년에 관련한 사건에서 가정재판소의 심판에 부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사료되는 경우의 어느 것에 해당하는 경우는 당해 사건을 아동상담소에 송치하여야 한다.(제6조의6 제1항)

또 수사기관은 촉범소년(14세미만의 우범소년도 같다.)에 대하여는 당해 소년에게 보호자가 없거나 또는 보호자에게 감호시키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 우선 아동상담소 등에 통고하여야 한다.(아동복지법 제25조) 따라서 위의 (i)과 (ii)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에서 동조에 해당하는 것은 이러한 통고를 해야만 한다. 「아동복지법」의 통고와 「소년법」 제6조의6 제1항의 송치제도는 법적 성질이나 요건이 다른 별개의 제도이고, 양자는 병립할 수 있는 것이므로 후자에 해당하는 사건도 「아동복지법」의 통고를 할 수 있다. 이 통고는 아동상담소 등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통지행위라는 성질을 가진다. 경찰로부터 사건송치가 있는 때에는 당해 송치에 관련된 소년사건은 당연히 아동상담소에 계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해아동에 대하여 중복해서 통고할 필요는 없다.

경찰로부터 촉범소년에 관련한 사건의 송치를 받은 아동상담소 등은 그것이 「소년법」 제22조의2 제1항 죄에 관련한 중대한 촉범행위를 한 촉범소년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건을 가정재판소에 송치해야만 한다.(제6조의7 제1항 본문, 소위 원칙가정재판소송치제도) 다만, 이 같은 소년사건에서도 소년의 연령이나 심신발달의 정도, 사안의 내용 및 그 해명의 정도 등에 비추어 가정재판소의 심판을 거칠 필요도 없이 「아동복지법」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아동상담소장 등의 판단에 의하여 가정재판소에 송치하지 않을 수 있다.(동조 단서)<sup>102)</sup>

102) 촉범소년에 대해서는 가정재판소가 당연히 심판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고, 都道府縣 또는 아동상담소장으로부터 「아동복지법」의 규정에 기초하여(제27조 제1항 제4호, 제32조) 송치를 받은 경우에 한해 심판에 부할 수 있다. 즉, 14세 미만의 비행소년은 (우범소년도 마찬가지이다.) 모두 아동상담소에 통고 혹은 송치되고, 아동상담소장 및 지사에 의해서 「아동복지법」상의 조치(아동복지법 제27조 등)가 취하여진 다음, 이들로부터 송치된 후 비로소 가정재판소에 의한 보다 강력한 보호수단이 취하여지게 된다. 이와 같이 촉범소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이 「소년법」보다 우선해서 적용되므로 가정재판소중심주의의 예외가 된다.(河村 博 編著, 앞의 책, 28~29면)

### 3. 우범소년

범죄소년의 사건으로서 체포해서 취조한 결과 우범소년인 것이 명백해 진 경우 14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는 촉범소년과 같이 「아동복지법」이 우선 적용되므로 「아동복지법」 제25조<sup>103)</sup>의 요건이 있으면 아동상담소에 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14세 이상 18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는 경찰은 원칙적으로 직접 가정재판소에 송치하여야 하고, 다만, 「아동복지법」의 조치에 맡기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접 아동상담소에 통고할 수 있다. 우범소년이 18세 이상이면 가정재판소에 송치하여야 한다.(소년법 제3조 제2항, 제6조 제2항, 제41조 후단, 少警規 제33조 참조) 위의 소년의 신병은 범죄가 아닌 것이 명백한 시점에서 석방하여야 하지만 우범소년 중에는 가출 중인 자나 도주의 우려가 강한 경우 등도 많고, 석방하는 것이 본인의 보호를 위해 상당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다. 또 사건의 송치를 위해서는 약간의 시간을 요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경우에는 가정재판소에 송치해야 할 사건에 한해 가정재판소에 적절한 방법으로 연락하여 송치 혹은 통고가 있는 것으로써 사건수리를 받고 긴급동행장(소년법 제21조)의 발부를 받아서 그 집행으로써 가정재판소에 연행한다고 하는 방법이 실무상 행하여지고 있다.<sup>104)</sup>

한편, 경찰관이 수사가 아닌 보도활동 중에 우범소년을 발견한 경우에는 가정재판소에 송치(제6조 제2항)하든가 통고(제6조 제1항)를 할 수 있다.<sup>105)</sup> 전화에 의한 통고가 인정되는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누어져 있지만 긴급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통고자 및 통고내용이 특정되고, 긴급성이 명백한 경우에는 전화에 의한 통고도 허용된다고 한다.

103) 요보호아동을 발견한 자는 이것을 市町村, 都道府縣이 설치하는 복지사무소 혹은 아동상담소 또는 아동위원을 매개로 하여 市町村, 都道府縣이 설치하는 복지사무소 혹은 아동상담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죄를 범한 만 14세 이상의 아동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이 경우에는 이것을 가정재판소에 통고하여야만 한다.

104) 그러나 긴급동행장은 원래 가정재판소의 조사심판을 위한 것이므로 위의 실무관행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무리가 있으므로 입법적인 해결이 요구되고 있다.

105) 일본 最高裁判所家庭局長回答(昭和 35.12.13.), 家月 13.1.201. 2007년 법개정에 의해 제8조가 개정되고, 경찰관이 가정재판소에의 송치주체로서 명시되어 있다.

## 4. 교통사건의 특칙

일본에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건의 처리에 대하여 특례로 소위 교통표제도(交通切符制度)와 교통반칙통고제도(交通反則通告制度)가 있으며, 이들 모두 소년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되지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 가. 교통표제도

교통표제도의 정식명칭은 ‘도로교통법위반사건 신속처리를 위한 공용서식’이며, 형소법 제6편에 규정된 ‘약식절차 및 교통사건즉결재판절차법에 의한 즉결재판절차’에 대하여 이것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경찰, 검찰청, 재판소의 사이에 통합하여 공용하는 것에 의하여 이 2개의 절차를 최대한으로 간이·신속화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소년사건의 경우에는 성인의 경우와 달리 곧바로 약식명령 혹은 즉결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일단 가정재판소에 송치하여 이곳으로부터 다시 역송된 자에 대하여만 약식명령이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검거경찰관은 위반자가 소년인 것이 판명되면 그 자의 보호자를 확인하여 교통표 소정란에 기입하여야 하고, 상주경찰관은 위반내용을 확인하고 가정재판소에 송치해야 할 사건(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사건)인 때에는 교통표에 소년사건송치서를 첨부하여 가정재판소에 송치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통상대로 교통표를 검찰에 송치하여야 한다.

### 나. 교통반칙통고제도

교통반칙통고제도(도로교통법 제9장)는 1968년부터 실시되었으며, 당초에는 소년에게 적용하지 않았으나 형평성의 문제와 소년의 준법정신의 저하를 이유로 1970년부터 소년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즉, 소년반칙자와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는 거소불명 등 일정한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자가 경찰본부장으로부터 당해 반칙행위에 관련한 반칙금(反則金)의 납부통고를 받고, 동시에 반칙금납부의 기간이 경과하기까지는 가정재판소의 심판에 부하지 않는다.(제130조) 소년이 반칙금을 납부한 때에는 가

정재판소의 심판에 부하지 않는다.(제128조 제2항) 따라서 반칙금납부를 마친 사건에 대하여는 심판조건을 흠결하므로 사법경찰원은 그것이 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죄의 사건이더라도 가정재판소에 송치하는 것을 요하지 않고, 또 고소·고발사건을 제외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것도 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반칙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상의 절차에 의해서 가정재판소에 송치하여야 한다. 반칙금 불납부로서 송치되고, 심판이 개시된 소년에 대하여 가정재판소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반칙금의 납부를 지시할 수 있다.(제130조의2 제1항)<sup>106)</sup> 이 지시를 받은 자가 납부할 것인가의 여부는 임의이므로 이 지시는 독립한 보호처분은 아니고 일종의 경고적 의미를 가진 사실상의 보호적 조치라고 한다. 이 지시에 따라 반칙금을 납부하면 심판권이 없게 되기 때문에 불처분결정이 이루어지고, 납부하지 않으면 필요에 따라 보호 또는 역송처분 등의 조치가 취하여지게 된다.

---

106) 이 지시가 행하여진 경우의 반칙금의 납부방법 및 납부의 효과는 경찰본부장의 통고에 의한 반칙금의 납부의 경우와 같이 취급한다.(동조 제3항)

## 제4장 경찰의 소년범처리에 관한 법제와 현황

### 제1절 소년범처리에 관한 법제

우리나라에서는 소년사범에 대한 경찰의 처리와 관련하여서는 「소년법」에 따르면 범죄소년인 경우에는 일반 형사절차에 따라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하여야 하지만,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에 대하여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도록 하고 있다.(제4조 제2항)<sup>107)</sup>

이에 따라 경찰에서는 「소년업무 처리규칙」(1991.7.31. 제정(경찰청 예규 제10호), 2009. 11. 19. 최종개정(예규 제413호), 이하 ‘소년규칙’이라고 한다.)<sup>108)</sup>과 「범죄수사규칙」(1991. 7. 31. 제정(훈령 제57호), 2012.7.16. 폐지후제정(훈령 제669호)). 이하 ‘수사규칙’이라고 한다.)에서 그 처리절차에 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 1. 범죄소년의 검찰에의 송치

##### 가. 의의와 성격

사법경찰관이 소년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범죄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소년법」상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소년법」 제48조에 따르면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일반 형사사건의 예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소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sup>109)</sup> 따라서 소년범의 경우

107) 「소년법」상 경찰의 임무에 대한 규정으로는 비행소년의 인지 및 소년법원으로의 송치(제4조 제2항), 동행영장의 집행(제16조), 임시조치로서의 감호의 집행(제18조 제5항), 검사의 수사보조(제48조) 등이 있다.

108) 소년업무 처리에 관하여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소년법」, 「형사소송법」, 「아동복지법」, 「청소년보호법」, 「사법경찰관직무집행규칙」, 「범죄수사규칙」 등 기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소년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되어 있다.(제1조 제2항)

에도 성인 형사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사법경찰은 사건기록 일체를 검사에게 송치하여 검사로 하여금 기소여부 및 소년부 송치여부를 결정하게 하여야 한다.(소년법 제48조, 제49조) 이때 사법경찰관에 의한 소년피의사건의 검찰에의 송치는 의무적이다. 소년피의사건을 조사한 결과 소년에게 범죄혐의도 없고, 촉법소년이나 우범소년에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소년법」 제4조 제2항은 형소법의 제95조의 예외규정이므로 예외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원칙규정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일 경찰이 범죄소년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아닌 소년부에 송치한 경우에는 송치가 현행법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주장이 있다. 이 견해에 따르면 이때 소년부는 심판조건의 흠결을 이유로 불개시결정을 한 다음, 다시 검찰을 경유해서 소년부에 송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행법상 私人이 범죄소년을 소년부에 통고할 수도 있고, 소년부도 자체적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으며, 소년부의 검찰송치결정이 있으면 그 후의 수사에서 보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설령 경찰에 의한 범죄소년의 소년부 송치가 위법하더라도 반드시 무효라고 할 것은 아니다.<sup>110)</sup>

## 나. 절차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종결한 경우의 사건의 송치와 이송의 절차에 관하여는 수사규칙에서 자세히 규정되어 있다.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종결하였을 때에는 경찰관서장의 지휘를 받아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치하거나 기타 상당관서에 이송하여야 한다.(제189조, 제190조) 사건을 송치함에는 소속관서의 장인 사법경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관서장이 사법경찰관이 아닌 경우에는 수사주무과장인 사법경찰관 명의로 하여야 한다.(제192조 제6항) 다만, 사법경찰관이 수리한 고소·고발사건에 대하여 기소, 기소중지 또는 참고인중지 의견으로 송치한 후 관할지방검찰청

109) 형소법상 수사의 주재자는 검사이므로(제195조)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종료하였을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수사지휘 및 준칙규정 제81조, 수사규칙 제189조)

110) 강동욱, “소년사범에 대한 수사기관의 처분에 관한 고찰”, 한양법학 제19집, 한양법학회 2006.8, 142~152면 및 도중진 외, “소년사범의 적정한 처리절차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5, 89~112면 참조

또는 지칭으로부터 그 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 '공소권 없음', '죄가 안됨', '각하'의 처분결과와 함께 피의자에 대한 수사자료표를 폐기하도록 통보받은 때에는 그 수사자료표가 지체없이 폐기될 수 있도록 처분결과를 보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193조 제4항)

## 2. 촉범소년과 우범소년의 소년부예의 송치

경찰서장은 수사결과 그 대상이 (i)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촉범소년)이거나 (ii)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거나,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자로서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우범소년)은 직접 관할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소년법 제4조 제2항) 일반적으로 '直送'이라고 하며, 이들 사건을 '직송사건'이라고 한다. 이는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소년사건의 경우는 기소·불기소여부의 판단을 검사로부터 소년부로 이전하는 것으로, 소년의 경우에 조기송치, 조기보호의 필요에 의하여 경찰서장에 의한 직송을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사법경찰관이 소년사건을 수사한 결과 피의자가 촉범소년 또는 우범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선도보호사건으로 처리하되,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에게 감호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아동복지법」에 의한 조치<sup>111)</sup>를 강구하거나 이를 소년보호사건(촉범)으로 하여 경찰서장이 직접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수사규칙 제214조 제1항, 제3항) 다만, 촉범소년의 행위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년보호사건으로 하여 소년법원에 직접 송치하도록 하고 있다.(동조 제2항)

111) 제27조(응급조치의무등) ① 아동학대신고를 접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아동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하며,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의 격리 또는 치료가 필요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치료기관의 인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아동학대의 신고를 접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와 학대의 방지를 위하여 제10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등을 의뢰할 수 있다.

### 3. 소결

전술한 것처럼 소년법상 경찰에 의한 소년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범죠평년은 검사에 게 송치하고, 촉법소년 또는 우범소년은 소년보호사건으로 경찰서장이 소년법원에 직접 송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법의 태도로 볼 때 경찰은 소년사건에 대하여 재량권을 행사하여 스스로 사건을 종결할 수는 없으며, 조사 후 모든 사건을 검사 또는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sup>112)</sup> 이를 ‘전건송치주의’라고 한다. 이러한 태도는 경찰이 사회질서의 유지에 치중한 나머지 사건의 경중 보다는 비행소년의 요보호성을 중시하는 소년법의 이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사건을 처리할 우려가 있다는 것에 근거하고 있다고 한다.<sup>113)</sup>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는 경찰단계에서 심리불개시 또는 불처분상당으로 판단된 소년사건들이 소년부에 있어서도 심리불개시 또는 불처분상당으로 결정된 비율이 매우 크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경찰의 재량처분을 인정하여 선별송치주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sup>114)</sup>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에 의한 개입형<sup>115)</sup> 다이버전<sup>116)</sup>(선도조건부 훈방)의 도입과 그 활성화에 관한 논의가 최근 다양하게 논의되고

112) 하지만 경찰에서는 소년규칙 제43조에서 “촉법소년을 조사한 결과 송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신속히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우범소년 준용(제45조))으로써 전건송치는 아니고 가정법원에의 송치 필요성을 여부를 판단하여 처리하고 있다.

113) 도중진 외, 앞의 논문, 92면

114) 강영철, “소년사건처리절차의 현황과 개선방안”, 소년보호연구 제1호, 한국소년보호협회, 1999, 84면; 김용우, “소년사건처리절차의 문제점”, 국회도서관 입법조사분석실, 1998, 10~11면; 정태균, 소년법재범방지에 관한 연구, 법조문화사, 1981, 135면

115) 이승현, “소년 다이버전 개념과 제정립”, 소년보호연구 제16호, 한국소년정책학회, 2011.6, 212~214면에서는 여기의 ‘referral’의 사전적 의미는 ‘위탁’에 가깝고, 국가기관이 공식적 이탈을 하는 조건으로 다른 곳에 보내서 교화시킨다는 것을 의미하고, 개입의 존재여부보다는 일정한 부담이나 사회적 제재의 절차나 내용이 중시된다는 점에서 ‘위탁’이라는 표현이 더 타당하다고 한다.

116) 다이버전은 흔히 소년범죄자를 공식 사법절차로부터 전환시켜 비공식 처우활동에 위탁하는 노력이라는 의미에서 흔히 ‘전환처우’로 번역된다. 그러나 다이버전은 소년범죄자를 공식절차로부터 이탈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대안적 방법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흔히 ‘개입형 다이버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한다.(이순래, “소년사범의 현황과 소년범죄에 대한 대응전략”, 형사정책연구 제18권 제3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7.9, 1074면 각주 28 참조) 소년보호주의원칙을 고려할 때 경찰

있다.<sup>117)</sup>

소년규칙 제43조(촉범소년에 대한 조치)에서는 “촉범소년을 조사한 결과 송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신속히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우범소년에 대해 준용(제45조))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동조에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소년부송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마치 경찰에 소년부송치에 대한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 현재 경찰실무에서도 소년풍기사범<sup>118)</sup>을 단속하여 즉결심판회부, 관계당국 통보, 엄중훈계방면 등의 조치를 통해 자체적으로 종결하고 있다.<sup>119)</sup>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경찰의 소년범처리와 관련하여 상위법이라고 할 수 있는 「소년법」에서 예외를 두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경찰내부규칙인 소년규칙을 근거로 촉범소년이나 우범소년에 대한 경찰의 종결처분을 인정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며, 일반 형사사건에 대한 형사소송절차와 고려해 보더라도 현행법상 촉범소년이나 우범소년의 처리에 있어서 경찰의 선별송치주의가 법적으로 인정되는가에 대하여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현행 법과 경찰실무의 불일치로 인한 적법성여부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촉범소년이나 우범소년을 포함하여 소년범처리에 있어서 경찰의 종결권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하루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sup>120)</sup>

단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한다.(김혁a, “회복적 사범의 이념구현을 위한 경찰의 경미소년사건처리”, 경찰학연구 제11권 제1호, 경찰대학, 2011, 62면)

117) ‘개입형 다이버전’은 ‘공식적 이탈이라는 요소’와 ‘일정한 부담이나 제재’라는 두 가지 요소를 내용으로 하며, 이때 일정한 부담이나 사회적 제재여부는 국가가 결정하지만, 그 부담이나 제재의 주체는 민간인이어야 한다고 한다.(이승현, 앞의 논문, 196~201면)

118) 여기서 ‘소년풍기사범’이라고 함은 소년법상의 불량행위소년, 즉, 비행소년은 아니지만 음주·흡연·싸움 기타 자기 또는 타인의 덕성을 해하는 행위를 하는 소년을 말한다.(소년법 제2조 제6호)

119) 이외에 소년에 대한 복지행정과 관련하여 요보호아동을 발견하여 「아동복지법」 제15조에 정해진 보호조치를 받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원혜옥, “소년사건처리절차의 보장”, 형사정책 제11호, 한국형사정책학회, 1999.10, 355~356면 참조)

120) 김용우/최재천, 형사정책, 박영사, 1998, 530면에서는 「소년법」에 경찰 재량처분의 근거를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

## 제2절 소년범처리의 현황과 대책

### 1. 경찰의 소년범 처리실태

#### 가. 소년범 검거현황

경찰의 소년범 검거현황을 보면 <표 4-1>에서 보는 것처럼 2009년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2007년부터 「소년법」이 개정되어 소년이 '19세 미만의 자'로 되었기 때문에 그 대상이 축소된 것에 연유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전체 소년범 대비 강력범의 비율이 2007년, 2008년 각각 1.8%에서 2009년 3.5%, 2010년 3.6%, 2011년 3.7%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때 소년범이 갈수록 흉폭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므로 범죄대책에 있어서도 이러한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표 4-1> 소년범 검거현황

(단위 : 명)

구분	총계	계	형 법 범										특별 법범
			강 력 범					절도	폭력	지능	풍속	기타	
			소계	살인	강도	강간	방화						
2007	115,661	80,008	2,113	29	1,399	467	218	38,143	32,265	6,091	72	1,324	35,653
2008	123,044	75,331	2,322	19	1,604	464	235	36,044	30,294	5,434	26	1,211	47,713
2009	118,058	87,535	4,234	23	2,100	1,902	209	43,549	30,241	8,051	102	1,358	30,523
2010	94,862	74,368	3,428	23	1,198	2,029	178	37,069	24,578	7,822	48	1,423	20,494
2011	86,621	69,071	3,205	12	1,144	1,883	166	32,693	23,792	7,768	46	1,567	17,550
2012.8	70,596	58,075	2,144	17	615	1,368	144	23,320	23,887	6,906	47	1,771	12,521

\* 경찰청 내부자료

한편, 학교폭력이 우리사회의 이슈가 되면서 집중단속한 결과를 보면 <표 4-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교폭력에 대한 범정부적인 대처에도 불구하고 크게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소년범에 대한 '보호'중심의 사법절차나 강력한 처벌위주의 대책이 모두 큰 효과를 나타내고 있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소년범에 대한 현재의 사법체제 전반에 대한 개선과 더불어, 개별 소년범의 특성에 맞는 다

양한 대책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표 4-2〉 학교폭력사범 검거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폭력	갈취	성폭력	기타
2007	21,710	14,368	5,584	298	1,460
2008	25,301	16,295	6,961	413	1,632
2009	24,825	16,039	6,017	381	2,388
2010	25,175	15,537	5,992	575	3,071
2011	21,957	14,837	3,902	444	2,774
2012.8	17,792	10,790	4,804	303	1,895

\* 경찰청 내부자료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서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살인·강도·절도 등은 포함되지 않은 것임.

한편, 학교폭력사범의 연령대를 보면 〈표 4-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학생 - 고등학생 - 초등학생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고등학생은 그 수가 줄어들고 있는 반면, 초등학생의 수는 대폭 늘어난 것을 볼 때 소년범죄가 점점 저연령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초등학생들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대책방안으로서 경찰다이버전 등, 다양한 선도대책을 마련할 것이 요구된다.

〈표 4-3〉 학교폭력사범 연령대별 검거현황

(단위 : 명)

연도별	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기타
2008			25,301		
2009			24,825		
2010	25,175	467	12,696	9,367	2,645
2011	21,957	463	9,944	8,867	2,683
2012.8	17,792	894	9,049	6,489	1,360

\* 경찰청 내부자료

\*\* 2010년 이전에는 초·중·고교생 구분없이 총 검거인원만 관리하였음.

## 나. 소년사건 처분현황

소년사건에 대한 경찰의 처분현황을 보면 <표 4-4>에서 보는 것처럼 대부분 구속보다는 불구속에 의해 처리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전체 소년사건 중 구속비율이 최근 들어 감소되고 있는 것은 소년범의 개선·교화라는 견지에 보면 매우 바람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표 4-4> 소년사범 처분현황

(단위 : 명)

연도별	계	구속	불구속
2010	94,862	2,243(2.4)	81,383
2011	86,621	1,698(2.0)	74,840
2012.8	70,596	1,334(1.9)	59,565

\* 경찰청 내부자료

한편, 소년사건 중 학교폭력사건에서도 경찰에 의한 처분현황을 보면 <표 4-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 소년범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불구속상태에서 입건조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2012년의 경우를 보면 전체 소년범의 구속비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과는 달리, 학교폭력의 경우에는 전년도 보다 2배 이상으로 구속율이 늘어났다. 이것은 최근 우리 사회에서 학교폭력의 심각성으로 인해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학교폭력에 대하여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표현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소년범은 단지 구속만으로도 낙인효과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므로 소년범의 재사회화를 위해서는 흉악범이나 개선이 어려운 상습범이라고 판단되지 않는 한 가급적 불구속상태에서 경찰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표 4-5> 학교폭력사범 처분현황

(단위 : 명)

연도별	계	구속	불구속	소년부송치	기타
2009	24,825	131(0.5)	18,241	2,436	4,017
2010	25,175	143(0.6)	16,928	1,755	6,349
2011	21,957	103(0.5)	16,228	1,473	4,153
2012.8	17,792	210(1.2)	11,531	1,803	4,248

\* 경찰청 내부자료

## 2. 경찰훈방

### 가. 개념

경찰훈방은 실무상의 개념으로, 피의자의 범죄사실이 경미하고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피의자를 형사입건하지 않고 엄중훈계 후 즉시 방면하는 것을 말한다. 경찰훈방은 연혁적으로 보면 1923년 일제시대의 조선총독부훈령 제52호 「사법경찰 관리집무규정」 제72조<sup>121)</sup>에서 “사건이 경미하여 처벌의 실익이 없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피의자에게 훈계를 하고, 이를 송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여 경찰에게 훈계 방면권을 인정하는 것에서 유래하며,<sup>122)</sup> 이것이 1948년 3월 10일자 ‘대검서(大檢庶) 제65호 지령’<sup>123)</sup>에 의해 계승된 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사법경찰관에 의한 훈계방면권이 부활된 것은 검찰이 단순한 소추기관의 지위를 넘어서서 본격적으로 수사기관으로서 기능하게 됨에 따른 검찰의 업무부담의 경감을 위한 조치라는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sup>124)</sup> 이러한 경찰훈방은 단순훈방과 선도조건부 훈방으로 나눌 수 있는데, 소년에 대한 훈방은 주로 후자의 형태로 행하여진다.

121) 제72조 ① 사건이 경미하여 처벌의 실익이 없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피의자에게 훈계를 가하고 이를 송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고소 또는 고발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피의자로 하여금 가능한 한 장물의 반환, 손해의 배상 또는 사죄의 방법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만족을 주게 하도록 주의하고 만일 범금물(현재의 금제품: 역주) 또는 범죄공용물건이 있는 때에는 피의자로 하여금 임의로 폐기 기타 적의(適宜)의 처분을 하게 하여야 한다.

제73조 전항의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취지를 소할 지방법원검사장 및 사건 소관청의 검사에게 보고하고 피의자가 다른 관내에 거주하는 때에는 소할 경찰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22) 훈계방면권은 일제당시 ‘범죄즉결례’에 따라 인정된 경찰의 즉결심판권과 표리관계에 있는 것으로 그 적용범위가 객관적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채 사법경찰관의 재량판단에 맡겨져 있었다는 점에서 선고형을 기준으로 하는 범죄즉결례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었다고 한다.(신동운a, “수사지휘권의 귀속에 관한 연혁적 고찰”, 서울대 법학 제42권 제1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1.5, 181~182면 참조)

123) 동 지령은 “1. 사법경찰관은 급속처분을 행치 아니한 극히 경미한 형사사건에 한하여 훈계방면의 처분을 할 수 있음, 2. 사법경찰관이 훈계방면한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기(其) 전말보고서를 징(徵)하여 적의(適宜) 검토할 사(事)”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고 한다.

124) 연혁적 고찰에 대해서는 조국, “경찰‘훈방권’의 법적 근거와 한계”, 한국경찰법연구 창간호, 한국경찰법학회, 2003, 16~17면 참조

## 나. 법적 근거

경찰은 「소년법」상 전건송치주의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비행소년에 대하여는 소년에 대한 낙인배제, 신속한 절차해결 등의 관점에서 경찰내부의 직무규범인 소년규칙과 수사규칙에 근거하여 독자적으로 훈방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다만, 범죄소년의 훈방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은 없다.

즉, 경찰은 소년규칙 제20조에 근거하여 불량행위소년<sup>125)</sup>을 발견하면 이들을 ‘미성년자풍기사범’으로 처리하고, 선도·보호라는 차원에서 즉결심판 청구, 관계당국에의 통보하는 것 이외에, 보호자에게 통보, 훈방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소년규칙 제22조부터 제28조에서는 경찰의 비행소년의 선도에 관한 세부적 규정을 두고 있다. 또 수사규칙 제214조<sup>126)</sup>에 근거하여 경찰이 소년사건을 수사한 결과 촉법소년 또는 우범소년으로 판명되었을 때에는 반드시 내사종결이나 수사종결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경찰서장이 자체적으로 선도 또는 보호하거나 요보호아동으로 행정기관에 의한 보호조치(아동복지법 제15조)를 하거나, 소년보호사건으로 소년법원에 송치하고 있다.<sup>127)</sup>

125) ‘불량행위소년’이란 비행소년은 아니지만 음주·흡연·싸움 기타 자기 또는 타인의 덕성을 해하는 행위를 하는 소년을 말하며(제2조 제6호), ‘타인의 덕성을 해하는 행위’란 흥행장 출입, 남녀혼숙, 흥기소지, 환각물 흡입 등과 같은 행위를 말한다.

126) 제214조(소년보호 사건의 송치 등) ① 경찰관은 소년사건을 수사한 결과 피의자가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이하 “촉법소년”이라 한다)으로 판명되었을 때에는 해당 소년에 대하여 적당한 선도 보호의 조치가 취하여지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자에게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에게 감호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아동복지법」에 의한 조치를 강구하거나 이를 소년보호사건(촉법)으로 하여 경찰서장이 직접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이하 “소년부”라 한다)에 송치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촉법소년의 행위가 형법상의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것인 때에는 이를 소년보호사건으로 하여 소년부에 직접 송치하여야 한다.

③ 피의자가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 것이 판명되었으나 소년법 제4조제1항 제3호(이하 “우범소년”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년에 대하여 적절한 선도보호 조치가 취하여지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자에게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에게 감호하게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아동복지법」에 의한 조치를 강구하거나 이를 소년보호사건(우범)으로 하여 경찰서장이 직접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127) 수사준칙규정 제64조에서는 학생범죄사건도 수사상 소년과 같이 처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성인범죄자도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처우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를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적용의 형평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범죄소년에 대한 훈방은 물론, 「소년법」의 하위규범인 소년규칙이나 수사규칙에 근거한 촉범소년이나 우범소년의 훈방의 적법성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다. 이를 긍정하는 견해에서는 경찰훈방권에 대하여 경미범죄의 신속한 처리와 소송경제의 측면에서 대부분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이하 ‘즉심법’이라고 한다) 제19조<sup>128)</sup>에 근거하여 형소법 제247조 제1항의 규정(검사의 기소유예)을 준용한 처분으로 이해하고 있다.<sup>129)</sup> 하지만 개정 형소법에서는 경찰훈방권을 형소법 제196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찰의 수사개시권에서 파생된 권리로 이해함이 타당하다. 형소법 제196조 제1항에서 ‘모든 수사’에 대해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경찰훈방의 대부분은 형사입건 이전의 단계에서 행하여지는 것이므로 검사의 수사지휘권의 범위 내에 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법원도 경찰의 훈방조치에 대하여 권한남용이나 직무유기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경찰훈방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sup>130)</sup>

#### 다. 요건과 절차

‘경찰업무편람’에 따르면 훈방권자는 경찰서장 및 지구대(파출소)장이며, 그 대상은 범죄사실이 경미하고, 개선의 정이 현저한 경우<sup>131)</sup>로서하며, 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i) 연령상 - 60세 이상 고령자나 미성년인 초범자, (ii) 신체상 - 정신박약, 보행불구 또는 질병자, (iii) 신분상 - 주거나 신원이 확실하거나, 부득이한 정상참작 사유가 있는 자, (iv) 죄질상 - 공무방해 또는 상습범이 아닌 자 또는 과실범, (v) 기타 경찰서장이 훈방할 사유가 된다고 인정하는 자 등이다.(경찰업무편람 3-12(즉결심판청구

128) 제19조(형사소송법의 준용) 즉결심판절차에 있어서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한 것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129) 권봉관, “경찰단계 회복적 소년사법정책의 도입방안 연구”, 창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147면; 송병호, “한국경찰의 훈방제도에 관한 연구”, 유관순 연구 제9호, 백석대학교 유관순연구소, 2006, 219면; 이호중a, 앞의 논문, 35면; 조국, 앞의 논문, 20면 이하 등. 경찰측에서도 이 입장에 따르고 있다.(경찰청, 경범죄처벌법 등 해설집, 1992, 227면; 경찰청, 경찰법령질의회신집(제7집), 2000, 114면(송병호, 앞의 논문, 214면에서 재인용)

130)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다45927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5도4202 판결 등

131) 중전의 ‘피해자가 없는 경우’라는 요건은 삭제되었다.

사무) 참고) 따라서 소년사범은 초범자인 경우에 한하여 훈방대상이 될 수 있다.<sup>132)</sup>

경찰훈방은 단속현장, 지구대, 경찰서에서 각각 행하여지는데,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단속현장에서 경찰관은 위 훈방심사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계도 후 귀가조치하고, 경미사범의 경우에는 지도장을 발부하여 훈방하거나 범칙금 납부고지서를 발부한다. 다음으로 지구대(파출소)에 동행되거나 인지사건에 대하여는 지구대(파출소)장이 범죄사실에 대하여 훈방, 통고처분, 즉심청구 또는 형사입건여부를 심사하고, 훈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무일지에 훈방대상자를 기재한 후 훈방한다. 그리고 경찰서로 송치된 경우에는 지구대에서 보고된 즉결심판 위반사범 적발보고서 및 지구대(파출소)장의 심사자료표(1차 예심 결과)를 토대로 생활안전과장(야간·공휴일 : 상황실장)이 재심사하여 즉심업무의 목적이나 취지 등을 고려한 후 훈방조치해도 정당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2차 예심결과를 소명(의견제시)한 후 훈방처리한다. 그 절차를 구체적으로 보면, 지구대 서류 여성청소년계 접수 → 보호자 연락 → 진술조서(축법소년) 작성, 조사시 보호자 동석 → 서류작성(소년법환경조사서, 비행성예측자료표, 소년범수사시전문가 참여보고서, 수사보고서 등) → 귀가(보호자동행, 보호자 없을시

132) 한편, 2010년 경찰이 법무부와 협의하여 마련한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중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 처리지침’”에 따르면 불입건훈방기준으로 (i) 학생 또는 18세미만의 자진신고 청소년(부모, 교사, 친구 신고도 포함)으로 (ii) 전회처분(전과, 보호처분)이 없으며, (iii) 사안이 경미하고(피해액이 50만원 이하이거나 인적피해 진단 2주 이하인 경우, 다만, 가해기간, 피해학생 수, 상습성, 반성 정도, 전문가 분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액이 50만원 이상이거나 인적피해 진단 2주 이상인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불입건 건의), (iv) 피해가 회복되고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없을 것 등을 그 요건으로 하였다. 다만, 불입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학교폭력 중성폭력 가해학생, 전과 또는 보호처분 경력 있는 경우), 2005~2009년 자진신고자가 다시 자진 신고하는 경우(CIMS 수사대상자 검색을 통해 전회처분 및 불입건 전력 확인), 자진 신고 전 검거된 가해자 또는 선도기관 교육 불이행자는 불입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2012년 3월 19일부터 4월 30일 까지(6주간) 운영한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운영’ 내역에 따르면 그 신고대상은 ‘초·중·고 학생과 18세미만의 자’로 동일하지만 ‘신고형 2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로 경미한 초범, 피해자처벌불원, 반성·사과, 전문가 참여시 분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훈방, 즉결심판, 입건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성폭행, 상습·보복폭행 등 죄질이 중하고, 폭력씨를 구성하여 집단적으로 행한 경우, 既 자진신고자가 재신고한 경우 등에는 즉시 입건조치하도록 하였다.(경찰청,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운영 계획”(2012) 참조)

쉽터 연계)로 이어진다고 한다.<sup>133)</sup>

경찰서장이 훈방조치한 사건에 대해서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훈방 후 고소나 피해신고 등 사정변경이 있으면 입건하여 형사처벌할 수 있다.<sup>134)</sup>

## 라. 운영실태

최근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훈방과 즉결심판청구에 대한 2012년 1월에서 6월까지의 실태를 보면 <표 4-6>과 같다.

<표 4-6> 학교폭력 가해학생 처리실태

(단위 : 명)

구 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계	13,787	1,349	2,560	3,011	3,252	2,020	1,595
구 속	198	12	49	52	36	47	2
불구속	8,838	1,073	1,882	1,780	1,782	1,209	1,112
소년부송치	1,302	185	248	276	231	224	138
훈 방	1,087	-	-	250	574	189	74
즉결심판	40	-	-	4	7	15	14
기 타 (내사종결등)	2,322	79	381	649	622	336	255

\* 훈방·즉심청구는 3.19 이후 실시하여 3월 이후부터 통계관리함

## 3. 소년범조사시 전문가참여제

‘소년범조사시 전문가참여제’는 「소년법」 제12조(전문가의 진단), 수사지휘 및 준칙 규정 제61조(범죄의원인 등과 환경조사), 경찰 소년규칙 제32조(처우에 관한 의견)에 근거한 것으로서, 보호자 및 본인이 전문가 참여를 희망하거나 동의하는 소년범을 대상으로 하여 그 조사과정에 범죄심리사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제도이다. 현재 이 제도

133) 전영실, 기광도, “저연령 소년의 비행실태 및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205면

134) 송병호, 앞의 논문, 198~199면

는 가정·학교 환경 등 43개 비행촉발요인과 공격성·반사회성 등 344개 인성평가항목을 심층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소년범의 선도 및 재범가능성을 판단하여 전문적인 선도프로그램과 연결시켜주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소년범조사시 전문가참여제는 경찰에서는 <표 4-7>에서 보는 것처럼 2003년 처음으로 2개 경찰서(서울 송파서, 수원 남부서)에서 시범운영한 이후, 2012년에는 120개 경찰서(소년범수가 많은 1급서 기준)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특히 경찰청에서는 2005년 8월 한국심리학회 업무협약식을 체결하여 심리전문가 인력풀을 구축하였으며, 2012년 453명의 전문가(지도교수 112명, 범죄심리사 등 341명)가 참여하고 있다. 비행성예측 결과보고서는 인성검사 후 7일 이내에 경찰서에 제출되며, 그 결과는 소년 선도자료로 활용하거나 송치서류에 첨부하여 검찰 또는 법원에서의 처우결정을 위한 참고자료로 제공되고 있다.<sup>135)</sup>

이 제도는 소년범에 대한 비범죄화 내지 다이버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제도로, 형사제재 혹은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거의 없거나 상대적으로 적은 소년에게 대해서는 경찰단계에서 조기에 다이버전프로그램을 통하여 처리함으로써 낙인효과를 최소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sup>136)</sup>

경찰에서는 2007년부터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 운영시 가해학생 조사에 전문가참여제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표 4-7>에서 보는 것처럼 그 참여비율은 점점 증가하고 있고, 2011년에는 참여소년범 수가 대폭 증가하여 전체소년범의 8.8%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11년의 경우 전체 소년범 86,643명의 8.8%인 7,639명에 대해서만 실시(서별 월평균 6.4명)하고 있는 등, 관련예산 부족으로 아직 전체 소년범의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경찰청에서는 전문가참여제의 긍정적 효과가 확인됨에 따라 관련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운영관서 연차적으로 매년

135) 경찰청, 경찰백서, 2011. 127면. 재범가능성이 낮은 비행소년(저위험군)(검찰 또는 법원단계에서 가소유예 또는 1호처분이 예상되는 경미소년범 대상)은 Wee센터나 청소년상담지원센터와 연계하고, 재범가능성이 높은 비행소년(고위험군)은 검찰 또는 법원에 선도조치를 일임하도록 하고 있다.(경찰청,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중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 처리지침’”(2010) 참조)

136) 이호중, 앞의 논문, 7면

20%씩 확대를 추진하여, 2013년에는 144개 경찰서, 2014년에는 173개 경찰서, 2015년에는 208개 경찰서으로의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sup>137)</sup>

〈표 4-7〉 소년범조사시 전문가 참여제 운영 현황

구 분 \ 연 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6
운영관서 (개소)	2	5	45	52	52	52	60	70	100	120
전체 소년범(명)	96,697	86,861	83,477	90,628	115,661	123,044	118,058	94,862	86,643	49,120
참여 소년범(명)	55	331	1,320	3,958	5,675	6,266	5,507	7,172	7,639	3,262
참여비율(%)	0.05	0.38	1.6	4.4	4.9	5.1	4.7	7.6	8.8	6.6

\* 주 : 경찰청의 전체소년범 수치(94,862명)와 검찰청의 전체소년범 수치(89,776명)가 다른 것은 검찰 단계에서 촉법소년의 수치가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 자료 : 경찰청, 경찰백서, 2011. 128면.

#### 4. 사랑의 교실

경찰에서는 소년범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 지방경찰청별로 청소년상담 지원 센터, 청소년수련관, 종합사회복지관 등과 협조하여 '사랑의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사랑의 교실은 1989년 서울지역에서의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된 것으로, 비행·불량소년과 타 기관 선도대상에서 제외된 청소년(중·고등학교의 문제학생 등) 등을 대상으로 하여 레크레이션, 인간관계개선훈련, 사회심리극 등 인성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소년범의 비행예방활동을 하고 있다.

사랑의 교실은 현재 (사) 한문화인성교육원, (사) 한국청소년육성회, (사) 한국BBS 부산연맹 등의 단체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전국 33개 청소년 전문교육 단체에서 총 17,877명을 대상으로 2,506회의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2011년에는 9,859명으로 전년대비 55%밖에 되지 않으며, 2012년도에는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운영실적은 〈표 4-8〉 및 〈표 4-8-1〉과 같다.

137) 경찰청, 경찰백서, 2011. 128면

〈표 4-8〉 사랑의 교실 운영실적(1)

구분 \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실시횟수	153	132	445	1,110	2,506
참가인원(명)	5,577	5,883	7,630	6,837	17,877

- \* 2010년 최종·연령별 소집단 5회 교육으로 프로그램 개편, 실시횟수 증가
- \* 경찰청, 경찰백서, 2011, 130면

〈표 4-8-1〉 사랑의 교실 운영실적(2)

(단위 : 명)

구분	참가인원	대 상 별						비 행 내 용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근로소년	재수생	무직기타	절도	폭력	성범죄	약물	기타
2010	17,877	568	8,872	7,084	10	13	1,330	6,257	6,645	139	310	4,526
2011	9,859	149	4,918	4,021	4	29	738	3,276	4,885	58	78	1,562
2011.6	4,184	45	2,062	1,783	1	26	267	1,466	2,095	35	57	531
2012.6	2,753	98	1,619	929		2	105	561	1,520	29	13	630
대비(%)	-34.2	117.8	-21.5	-47.9		-92.3	-60.7	-61.7	-27.4	-17.1	-77.2	18.6

- \* 경찰청 홈페이지 자료

사랑의 교실은 재범방지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sup>138)</sup> 하지만 현재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서 교육참가를 위한 대상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기가 어렵고, 교육이수자에 대한 전환처우나 양형참작 등, 인센티브 부재로 대상청소년들이 참석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sup>139)</sup> 따라서 그 법적 근거를 경직법이나 「소년법」에 두고, 그 세부교육도 외부민간 전문단체에 위탁하여 교육하는 것에서 한발 나아가 경찰이 직접 조정자로서 참여하도록 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sup>140)</sup>

138) 2005년 경찰 통계자료를 보면 학원폭력 가해학생 11,205명 중 경찰에 의해 선도된 8,610명이 자진 신고를 하였는데 그 중 8,429명이 선도조건으로 불입건 조치되었고, 이 선도조치된 학생들을 추적 조사한 결과 오직 104명만이 재범을 하여 재비행률은 0.9%에 불과하였다고 한다.(경찰청, 경찰백서, 2009, 77면)

139) 권봉관, 앞의 논문, 162면

140) 이영란, 앞의 논문, 20면

## 5. 청소년상담교실

경찰은 청소년들의 고민이나 애로사항을 직접 면담이나 전화상담을 통하여 들어 주고 문제의 사전 진단과 해결을 위해 전국 경찰관서에 '청소년상담교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또한 경찰은 컴퓨터에 친숙한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인터넷·사이버 상담제도를 도입하여 청소년 운집장소를 방문하거나, 전화·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1:1 집중 상담 및 선도 실시를 하고 있다.

2011년 한 해 동안 경찰관 6,286명, 민간 자원봉사자 960명을 모집·운영하여 청소년 31,383명을 상담하였으며, 2010년 대비 전체 인원은 소폭 감소(4.5%)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운영실적은 <표 4-9> 및 <표 4-9-1>과 같다.

<표 4-9> 청소년상담교실 실시현황(1)

구 분 \ 연 도	2006	2007	2008	2009	2010
상담횟수	26,734	30,925	31,278	29,995	32,877

\* 경찰청, 경찰백서, 2011, 126면

<표 4-9-1> 청소년상담교실 실시현황

(단위 : 명)

구 분	상 담 대 상					상 담 요 원			
	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기타	경찰관		기 타	
						남	여	남	여
2010	32,877	4,463	14,413	9,127	4,874	4,590	2,440	386	798
2011	31,383	3,908	14,130	9,471	3,874	4,123	2,163	167	793
2011.6	12,833	1,454	5,937	3,855	1,587	1,768	923	58	288
2012.6	15,662	2,840	7,269	3,880	1,673	2,321	900	118	350
대비(%)	22.0	95.3	22.4	0.7	5.4	31.3	-2.5	103.4	21.5

\* 경찰청 홈페이지 자료

## 6. 범죄예방교실

범죄예방교실은 경찰관(서장·지구대장·여청 전담강사 등)이 각급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청소년들이 범죄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요령·피해시 조치요령 등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표 4-10〉에서 보는 것처럼 2011년의 경우 전국 초·중·고등학교 12,122개교 4,253,651명을 대상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범죄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중·고등학생들에게는 청소년범죄의 심각성과 폐해를 인식시키고 범죄예방 교육시 시청각교재를 활용하는 등 교육의 효과를 제고하였다. 다만, 2011년도의 경우는 전년 대비 학교 수 기준으로 19.1%, 교육인원 기준으로 23.1%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2012년도에는 학교폭력에 대한 심각성이 사회문제로 되면서 범죄예방교육도 대폭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4-10〉 범죄예방교실 실시현황(2)

구 분	학 교 별(개)				교육실시인원(명)			
	계	초	중	고	계	초	중	고
2010	14,979	7,084	4,736	3,159	5,529,634	2,287,375	1,895,405	1,346,854
2011	12,122	5,609	3,868	2,645	4,253,651	1,765,366	1,468,160	1,020,125
2011.6	7,124	3,335	2,207	1,582	2,557,597	1,067,266	872,686	617,645
2012.6	17,743	7,778	6,306	3,659	6,143,225	2,515,993	2,178,148	1,449,084
대비(%)	149.1	133.2	185.7	131.3	140.2	135.7	149.6	134.6

\* 경찰청 홈페이지 자료

## 제3절 개선방안

### 1. 소년범처리에 있어서 경찰재량권 확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소년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검사와 경찰에 의하여 중복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형소법 상 수사지휘권과 수사종결권이 검사에게 있는 현행제도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소년의 입장에서 보면 중복된 조사를 경찰과 검찰에서 이중으로 받는 것이므로 큰 심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소년범처우의 원칙인 조기치료의 원칙에도 반하고, 사건처리 지연으로 인해 소년을 사법절차 내에 불필요하게 장기간 남겨두는 부담을 주게 된다. 특히, 사건이 경미하여 소년범이 검찰에 송치된 후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게 되는 경우에도 장기간의 사법절차에의 노출로 인해 이미 낙인효과가 발생된 이후이므로 재범방지 효과를 매우 감소시키는 것으로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위에서 외국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소년사건에 대한 경찰의 재량권을 대폭 확대하고, 소년사건에 대한 종결권을 부여함과 동시에 다양한 절차를 마련하여 조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sup>141)</sup> 이것은 사건증대에 따른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의 합리적 배분이라고 하는 요청에도 적합하다.<sup>142)</sup>

### 2. 경찰훈방의 법적 근거 마련 및 활성화 도모

경미한 소년범 조차 경찰단계에서 종결되지 못하고 검찰에 송치되다보니 형사절차

141) UN의 「소년사범운영최소표준규칙」 11.2에서는 경찰, 검찰은 물론 소년사건을 취급하는 모든 기관에게 정식심리를 거치지 않고 재량으로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11.2 The police, the prosecution or other agencies dealing with juvenile cases shall be empowered to dispose of such cases, at their discretion, without recourse to formal hearings, in accordance with the criteria laid down for that purpose in the respective legal system and also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contained in these Rules.)

142) 이금형, 앞의 논문, 84면.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검찰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중요범죄에 수사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한다.

의 장기화와 경찰과 검찰의 중복조사과정에서 욕구충동이 강한 성장기의 소년에게 반사회성이 강화되고, 범죄환경에 노출되거나 주변 뿐 아니라 스스로 낙인찍는 등, 선도시기와 효과의 부적절성으로 기소유예소년의 재범이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촉법소년이나 우범소년을 가정재판소에 송치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sup>143)</sup>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불기소될 만한 경미소년법에 대해서는 경찰단계에서 조기 선도개입하여 사법절차를 효과적으로 종료시킬 필요가 있다.<sup>144)</sup>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경찰업무의 경감과 소년법의 낙인 및 재범방지에 있어서 필요성과 유효성이 인정되고 있는 경찰훈방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경찰실무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경찰훈방은 전술한 것처럼 경찰내부의 직무규범인 소년규칙과 수사규칙에 근거하여 행하여지고 있어서 그 법적 근거가 미약하고, 범죄소년의 검찰송치 뿐만 아니라 촉법소년이나 우범소년에 대한 가정재판소로의 전건송치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소년법」 제4조 제2항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음을 고려할 때 장래적으로 경찰훈방의 법적 근거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키고, 소년사건에 있어서 경찰훈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그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경찰훈방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있어서는 독립법률을 제정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선은 경찰훈방권 일반에 관해서는 형소법이나 경직법에 규정하고, 소년법에 대한 경찰훈방은 「소년법」에서 규정하되, 구체적인 대상과 기준 및 세부적인 절차는 수사규칙이나 소년규칙 등에서 명문화하면 될 것이다.<sup>145)</sup>

143) 소년사건 처리기간을 보면 촉법소년의 경우에는 약 70일 정도가 소요되고, 범죄소년의 경우는 검사송치의 경우에 약 3개월, 형사법원 송치의 경우에 약 7개월이 소요된다고 한다.(정해룡, “소년보호정책의 현안과제 및 발전방향”, 형사정책연구 제44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12, 84면)

144) 이금형, 앞의 논문, 79면

145) 동지, 김은경 외, “21세기 소년사법 개혁의 방향과 과제 (I) - 제1부 청소년비행 및 소년사법정책 현황분석”,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7, 129면

### 3. 소년범전담부서의 일원화와 전문성 강화

#### 가. 소년사건전담부서의 일원화

경찰의 소년업무는 원칙적으로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아동청소년계 또는 소년업무 취급부서에서 주관하도록 하고 있지만 「소년법」 제17조에 규정된 복지범죄<sup>146)</sup>와 소년범죄의 송치에 관한 사항은 수사계에서 주관하되, 소년업무 담당부서 감독자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고, 수사기능에서 범죄소년을 조사 처리한 경우에는 소년카드(소년환경조사서)를 작성하여 소년업무 담당부서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소년규칙 제3조, 제49조 제2항) 따라서 경찰의 소년사건처리에 있어서는 소년규칙에 따르게 되면 범죄소년에 대하여는 수사경찰이, 촉범소년과 우범소년에 대하여는 소년경찰이 처리하도록 하는 이원적 구조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경찰에서 ‘소년수사전담반’을 설치하여 원칙적으로 범죄소년도 소년경찰이 담당하도록 한 「경찰업무편람」<sup>147)</sup>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으며, 소년사건의 수

146) 경찰관은 「초등교육법」, 「아동복지법」, 「근로기준법」, 「직업안정법」, 「청소년보호법」, 「형법」기타 법률에 위반하여 소년을 착취, 학대, 혹사하거나 또는 이용의 대상으로 희생시키거나, 그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소년의 복리를 해하는 행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수사하여야 하며, 동시에 즉각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47) 경찰에서는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소년비행을 선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19세 미만의 소년범죄를 ‘소년수사전담반’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이하 경찰청, 경찰업무편람(3-23) 참조) 전담반은 수사경험이 1년 이상인 자로서 소년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주무과장이 소년범죄 수사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구성하며, 그 구성인원은 각 경찰서 6명 이내이다.(서울시내 6명, 도청소재지 4명, 시소재지 2명, 기타 1명으로 하며, 사건 취급 건수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도록 하였다.)

그 업무는 (i) 청소년의 지도 및 보호, (ii) 청소년 선도대책 업무, (iii) 청소년 유해환경의 단속, (iv) 소년환경조사서 작성, (v) 소년범죄자료 수집, 분석, (vi) 비행소년에 대한 조사, 송치 등이다. 그러나 소년이라고 하더라도 (i) 살인·강도·강간·방화 등 강력사건, (ii) 마약·밀수 관련사건, (iii) 절도·폭력범으로 동종전과 3범 이상의 사건, (iv) 특수폭행사건, (v) 성인과 소년(공범)이 관련된 동일사건, (vi)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 (vii) 도로교통법 위반사건, (viii) 보안 및 정보(선거법 위반 사범 포함) 관련사건, (ix) 소재수사 및 기소중지사범의 수배, 검거 동행, (x) 수사본부 설치·운영을 요하는 중요사건, (xi) 소년범죄 발생 및 신고(112) 사건, (xii) 기타 수사인력 등의 문제로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지정한 사건의 초동수사는 수사기능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실무에서는 대체로 5인 이상의 사건과 절도폭력 등

사지도는 여성청소년과(또는 여성청소년계)에서 담당하도록 한 「경찰청사무분장규칙」 제21조(경찰청 훈령 제701호, 2013. 4. 15)와도 조화되지 않는다.<sup>148)</sup> UN의 「소년사범운영 최소표준규칙」 12.1에 따르면 “경찰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 자주 혹은 독립적으로 소년들을 다루는 경찰관이나 주로 소년범죄의 예방에 종사하는 경찰관은 특별히 교육되거나 훈련되어야 한다. 대도시에서는 그 목적을 위해 특별한 경찰부서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sup>149)</sup> 이러한 국제적 기준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서도 경찰조직 내에 소년사건 전담부서를 일원화하여 모든 소년사건을 사건의 경중에 관계없이 1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관련부서(수사과나 형사과)로 이첩하는 체계를 갖추으로써 소년법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sup>150)</sup>

최근 경찰에서는 학교폭력과 성폭력 예방 관리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종전의 생활안전과의 여성청소년계를 생활안전과로부터 분리·승격시켜 101개 경찰서<sup>151)</sup>에 ‘여성청소년과’를 신설하고,<sup>152)</sup> 그 부속기구로 ‘아동여성계’와 ‘청소년계’로 나누어 업무를 분장하게 하도록 하였다.<sup>153)</sup> 따라서 앞으로 경찰에서의 소년업무에 대한

종전과 3범 이상은 형사기능에서 처리하고 있다고 한다.(경찰청, “소년법 수사 관련”(2012) 참조)

148) 강영철, 앞의 논문, 84면 참조. 이것은 경찰청이 내무부 소속 직할기구로 승격되면서 제정형식으로 되어 있는 소년규칙이 이 규칙의 제정에 의해 폐지된 구 ‘소년경찰직무요강’(1966. 10. 12, 내무부에 규 제66호)을 그대로 답습한데서 온 입법의 불비라고 한다.(김용우/최재천, 앞의 책, 531면)

149) In order to best fulfill their functions, police officers who frequently or exclusively deal with juveniles or who are primary engaged in the prevention of juvenile crime shall be specially instructed and trained. In large cities, special police units should be established for that purpose.

150) 권봉관, 앞의 논문, 151면에서는 현재 경찰에서는 소년에 의한 강력범죄는 수사전문가가 담당하고, 소년계에서는 미아, 가출인 등의 수배업무를 맡고 있는 현재의 체제에서는 소년사범에 대한 경찰 재량권을 확대할 경우 역기능의 우려가 있으므로 소년사범처리기구를 일원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151) 이외의 경찰서(1급지, 2급지)에서는 종전과 같이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계에서 소년업무를 취급하게 된다.

152)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320호, 2012.10.19, 일부개정·시행) 제49조 제1항. 전술 경찰청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에 따르면 여성청소년과는 종전의 소관업무인 ‘여성보호업무’, ‘청소년선도업무’에서 ‘여성업무’, ‘청소년업무’, ‘아동업무’, ‘성폭력대책업무’로 업무범위가 세분화되고, 확대되었다.(제21조)

153)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조직 및 정원관리 규칙」(2012.10.19., 경찰청훈령 제683호)제9조 제2항에

충실성과 전문성은 한층 높아질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설되는 ‘청소년계’(또는 ‘여성청소년계’)에서 모든 소년사범에 대한 1차적 조사와 수사기능을 갖도록 하되,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는 훈방하거나 또는 즉결심판에 회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sup>154)</sup> 중한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기능 또는 형사기능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체제를 강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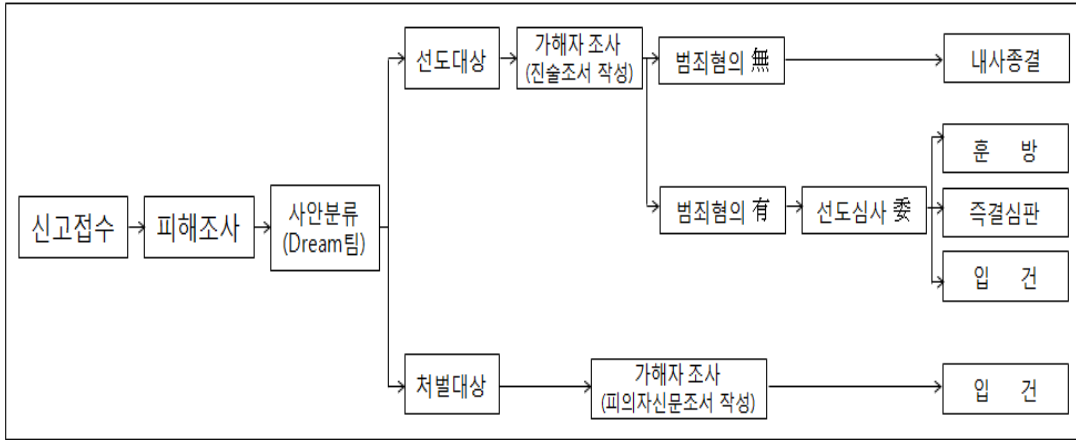
#### 나. 소년업무 처리절차의 신속화와 합리화

2012년 상반기 경찰에서는 한시적이거나 학교폭력의 경우에 상담, 방문, 온라인 등 경찰이 학교폭력 신고를 접수받은 경우 경찰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 우선순위로 취급하고, 경찰서장은 ‘안전Dream팀’을 구성·운영하였다. ‘안전Dream팀’에서는 피해사실 조사 후 사례회의(필요시 전문가 참여)를 통해 사안의 경중에 따라 선도 및 처벌 대상으로 분류하고 해당기능에 따라 배당하도록 하였으며, 피해내용이 선도대상인 경우에는 선도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훈방즉심입건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처벌대상일 경우에는 입건하여 검찰송치를 하도록 하였다. 안전드림팀은 서장(팀장), 생활안전과장, 형사과장, 정보과장으로 구성되며, 여성·청소년계장이 간사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야간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생활안전과장(또는 상황실장)이 구성·운영하도록 하였다.<sup>155)</sup> 그 처리절차를 도표로 나타내면 <그림 4-1>과 같다.

따른 [별표 3] 참조. 그러나 현행법상 ‘아동’과 ‘청소년’의 개념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담당부서를 이와 같이 구분하는 것은 현재아동업무와 청소년업무를 각각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의 소관사무로 하고 있어서 상당한 혼란과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앞으로 경찰 일선에도 실무상 어려움이 초래될 것으로 판단된다.(강동욱/문영희, 아동학대 - 법과 제도-, 청목출판사, 2011, 19~23면 참조) 경찰업무의 효율성을 감안하면 오히려 ‘여성계’와 ‘아동청소년계’로 나누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154) 후술하는 바와 같이 경찰훈방과 즉심업무를 담당하는 독립부서로서 즉심계(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년업무를 전담하는 여성청소년과 청소년계(또는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계)에서 조사 후 의견을 첨부하여 송치하면 이에 따라 즉심계(과)에서 훈방 또는 즉심청구를 하도록 하는 체제를 갖추면 될 것이다. 소년사건 처리절차의 이원화로 인하여 절차가 복잡해지고, 양 기관의 의견이 불일치할 경우에는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지 않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기관 상호간에 견제를 가능하게 만들고, 소년사건 처리절차의 체계성과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1〉 학교폭력사건 경찰처리절차도



\*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제399호), “학교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2012.2.8.-)

한편, 학교폭력의 경우에도 자진신고의 경우에는 안전드림팀을 대신하여 ‘선도심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였다. 선도심사위원회는 5~7인으로 구성되며, 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생활안전과장<sup>156)</sup> 형사(수사)과장, 정보과장, 청문감사관, 필요시 민간위원<sup>157)</sup>으로 구성하며, 여성청소년계장<sup>158)</sup>을 간사로 하였다. 회의는 사건 담당자가 사건개요 및 가해학생의 특성에 대하여 보고한 후, 위원들이 의견제시 및 토의식으로 진행하며, 경찰서장(위원장)이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였다. 다만, 즉심청구권이 경찰서장의 권한임을 감안하여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 위원장의 최종 결정권을 기속하지 않도록 하였다. 그 처리절차를 도표로 나타내면 〈그림 4-2〉과

155) 이상은 경찰청, “학교폭력 사건처리 매뉴얼”(2012) 및 경찰청, “학교폭력 처리시 훈방 관련 FAQ”(2012) 참조. 이때 교내 일진회, 폭력조직과 연관이 있는 경우나 성폭행, 상습상해(폭행), 보복폭행, 장기간 집단따돌림 등 죄질이 중한 사건 및 선도대상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은 처벌대상으로 하고, 사안이 경미하여 경찰의 개입 보다 가해자에 대한 선도가 필요한 경우나 가해자 자진신고 또는 피해회복·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도대상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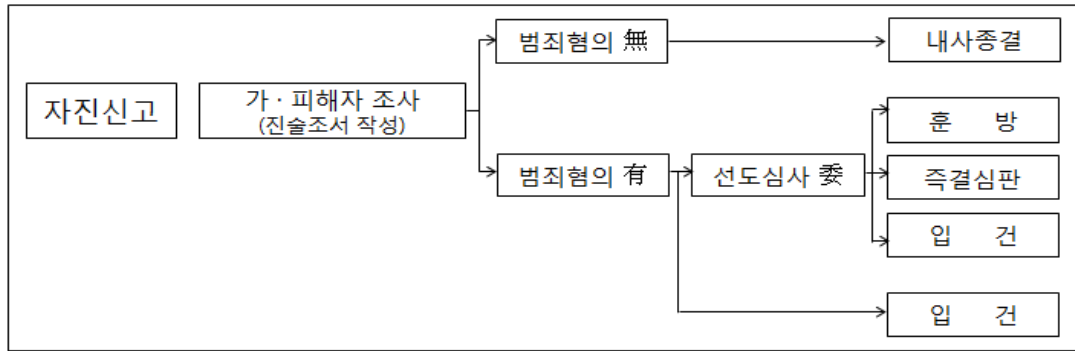
156) 경찰서에 여성청소년과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생활안전과장’이 아니라 ‘여성청소년과장’이 참여하거나 둘 다 모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157) 민간위원은 경찰서장이 결정하며, 결정에 대한 신뢰 확보를 위해 교사·변호사·NGO 등을 참여시켜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참조하도록 하고 있다.

158) 여성청소년과가 설치되는 경찰서의 경우에는 ‘청소년계장’을 간사로 할 것으로 예상된다.

같다.<sup>159)</sup>

〈그림 4-2〉 자진신고 학교폭력사건 경찰처리절차도



\* 경찰청, “학교폭력 처리시 훈방 관련 FAQ”(2012)

또 서울경찰청에서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2012년 7월 26일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는 ‘학교 폭력 원스톱(one-stop)’센터<sup>160)</sup>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이것은 서울지방경찰청이 흩어져 있던 학교폭력 기관을 하나로 합친 것으로 기존학교폭력 117신고센터, 1319수사팀, 스쿨폴리스를 통합해 신고접수부터 조사, 사후조치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24시간 대응체제로서, 현재에는 전국의 경찰서로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한다.

소년보호가 요청되고 신속한 처리가 요구되는 소년사건의 특성을 고려할 때 소년사건의 합리적인 처리를 위해서는 한시적으로 운영된 위의 제도들을 학교폭력 뿐만 아니라 소년사건 전반에 관한 처리절차와 방법으로 확대·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다만, 위의 선도위원회의 경우 민간위원의 수를 늘리되, 아동·소년전문가나 관련분야교수 또는 형사법교수나 변호사 등의 법률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여 소년

159) 이상의 내용은 경찰청, “학교폭력 처리시 훈방 관련 FAQ”(2012) 참조

160) 현재 원스톱센터는 학교폭력 신고를 하루 평균 42건을 접수하고 있으며, 경찰 11명을 포함해 직원 24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한다. 원스톱센터가 생긴 후 단순 상담종결이 91.2%에서 56.7%로 줄어들었고, 수사개시·긴급출동 등 후속조치가 전체 접수 건수 중 8.8%에서 43.3%로 늘었으며, 100일간 원스톱 센터 전체신고 4,205건 중 1,821건의 후속조치를 함으로써 하루 18건꼴로 학교폭력을 해결한 셈이다.(조선일보, “4년 고민한 학교폭력, 신고 2일만에 해결하다”, 2012년 11월 7일자 A11면)

범에 대한 사실적 고려와 법리적 검토가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 그 명칭도 객관성을 담보하도록 하기 위하여 (가칭) ‘소년사건심의위원회’로 바꾸고,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경찰서장이 원칙적으로 존중하도록 법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소년범에 대한 경찰서장의 훈방권이나 즉결심판권의 확대요청에 따른 남용의 우려를 불식시키는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 다. 전문성 강화

소년사건의 처리에 있어서는 비행사실의 확인뿐만 아니라 인격이나 환경에 대한 조사, 소년의 미래에 대한 고려 등, 성인과는 다른 전문적인 지식이 요청된다. 그러므로 소년사건의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의 경우에도 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경찰서에 ‘여성청소년과’가 신설되면서 소년사건을 처리하는 경찰 인력이 대폭 보강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들 소년경찰은 소년범과 관련된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따라서 소년비행의 예방이나 선도 과정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므로 소년경찰조직의 확대에 즈음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훈련을 받은 요원을 양성하는 시스템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sup>161)</sup>

나아가 법제도적으로 경찰에서 ‘소년사건전담수사관제’<sup>162)</sup>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들을 소년사건전담부서에 배치함과 동시에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보수교육과 훈련을 통해 전문성을 유지·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또 소년사건전담 수사관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적어도 3년 이상 지속적으로 근무하게 하고, 승진 등에 있어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소년사건의 처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소년사건전담수사관의 전문화가 단기간에 달성되기 쉽지도 않고, 이들의 사건처리에 있어서 합리성과 적절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가 요구되는 점을 고려할 때 소년사건처리에 있어서는 반드시 소년전문가의 참여를 제도화하고, 최종 사건처리

161) 권봉관, 앞의 논문, 151면. 경찰교육과정에 소년에 관한 전문적인 교육을 시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16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제2항에서 각 경찰서마다 ‘성폭력범죄 전담사범경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참고로 될 수 있을 것이다.

시에는 소년전문가의 의견을 참조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4. 경찰다이버전의 확충과 실효적인 연계기관의 구축

경찰다이버전(diversion)은 소년범죄자를 조기에 사법절차로부터 이탈시킴으로써 낙인효과를 방지할 수 있으며, 비공식적 사회내처우를 활용하므로 소년범죄자에 내실화된 선도활동, 즉 소년범죄자의 개인적 문제에 대한 종합적 진단과 즉각적 조치가 가능하고, 다양한 선도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더구나 다이버전의 활성화로 다수의 소년범죄자가 사법절차로부터 이탈되면 그만큼 처리해야 할 소년범죄자 수가 줄어들게 됨으로써 소년사법체계의 제한된 인력과 자원을 범죄성향이 보다 심각한 소년들에 할당할 수 있으므로 이들에 내실화된 처우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sup>163)</sup>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볼 때 소송경제의 면에서 사법시설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동시에 형사사법시스템의 업무량을 줄일 수도 있다. 또한 청소년비행의 일부를 비범죄화를 통해 범죄국가라는 오명을 피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예방이 처벌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국가형벌정책의 수준을 한 단계 상향시킬 수 있다.<sup>164)</sup> 다른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경찰에 의한 비사법적 제도는 주요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sup>165)</sup>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경찰단계의 다이버전 정책들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그 법적 근거 및 제도화 정도가 미흡하고, 선도조치에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전문성 확보와 실효성 유지에 있어서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sup>166)</sup>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찰이 다이버전 정책을 자신감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이버전의 시행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는 등, 적정한 사법환경을 조성

163) 이순래, 앞의 논문, 1074~1075면

164) 이영란, 앞의 논문, 20면

165) 회복적 사법의 일환으로 소년사법에 있어서 뉴질랜드의 '가족회합(Family Group Conferencing)' 제도의 도입이 주장되고 있다.(김재민, "경찰의 소년범 다이버전 정책에 관한 고찰", 소년보호연구 제15호, 2010, 242면) 또 이영란, 앞의 논문, 21~22면에서는 이것과 호주의 Wagga Wagga 경찰회합모델을 융합한 '가족집단회의'를 제안하고 있다.

166) 김은경 외, 앞의 논문(I-I), 157~158면

해 줄 필요가 있다.<sup>167)</sup> 다만, 경찰단계에서의 다이버전은 현행 사법체계를 기반으로 회복적 사법이념을 반영시켜 나가는 모델의 선택이 현실적이다. 즉, 기본법질서의 통제범위 속에서 당사자의 자율을 위한 공간을 창설하고, 가해자의 책임원칙을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피해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가운데 당사자의 갈등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전략이 현단계에서 적합하다고 할 것이다.<sup>168)</sup> 이러한 경찰다이버전은 최근 신설된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서 주도적으로 시행하게 한다면 전문성과 실효성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sup>169)</sup>

아울러 경찰다이버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경찰이 적극적으로 지역의 사회복지관이나 청소년지원센터 또는 청소년 상담소 등, 청소년을 위한 상담복지인프라가 구축된 청소년관련 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정보를 교류함으로써 비행소년들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에 적응하도록 선도하는데 주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필요하다.

167) 김재민, 앞의 논문, 247면

168) 김재민, 앞의 논문, 233면

169) 경찰에서도 경찰단계 다이버전으로서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와 협조하여 초범이고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전문의 비행성예측검사 결과 재비행위험성이 낮고 '사랑의 교실' 등 선도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석한 경우 심리불개시처분·불처분을 추진하고 있다.(경찰청, 『소년법 선도』 시스템운영”(2012) 그러나 경찰단계의 다이버전의 내용을 다양화하고, 이것을 소년법 전반으로 확대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 제5장 소년범 처리절차로서의 즉결심판심제도의 활용방안

### 제1절 즉결심판에 관한 법제와 현황

#### 1. 법제

##### 가. 즉결심판의 의의와 성격

##### 1) 개념과 연혁

즉결심판이란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지방 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의 판사가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의 청구에 의하여 엄격한 정식의 공판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간이한 심판절차를 말한다.(즉심법 제2조, 제3조 제1항, 법원조직법 제34조 제1항 제3호, 제3항) 여기서 ‘경미한 범죄’란 주로 「경범죄처벌법」상의 범죄를 대상으로 하지만, 형법상의 범죄도 그 대상이 된다.

즉심제도는 프러시아의 「경찰범즉결령」<sup>170)</sup>에 기원을 두고 있으며, 이것이 일본에 1885년 「違警罪即決例」<sup>171)</sup>의 형태로 계수되고, 다시 우리나라에 소위 「범죄즉결례」의 형태로 도입되었다. 하지만 해방 후 미군정하에서는 일제하의 「범죄즉결례」를 폐지하

170) 일정한 경찰법령위반사범, 즉 위경죄의 범죄사건에 대하여 검사나 법관 등 법률전문가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부에 소속하는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곧바로 형사처벌을 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171) 위경죄즉결례는 ① 위경죄에 대해서는 경찰서장, 분서장 또는 그 대리인인 관리가 즉결처분할 수 있고(제1조), ② 즉결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진술을 듣고 증거를 조사한 다음 즉석에서 판결을 선고 하며(제2조 제1항), ③ 즉결의 선고에 이의가 있는 자는 위경죄재판소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제3조)는 것 등을 그 내용으로 하였다. 이 위경죄즉결례는 1947년 4월 16일 제정된 재판소법(법률 제59호)의 시행에 따라 1947년 폐지되었다.

고, 1946년 1월 10일 「군정법령 제41호」에 의해 당시 법률전문가의 부족을 고려하여 미국형 치안판사제도의 도입을 통해 경미사건의 해결을 담당하도록 하였다.<sup>172)</sup> 그러다가 1956년 「법원조직법」의 개정에 따라 이에 근거하여 경미사건의 신속한 처리의 요청에서 1957년 2월 15일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법률 제439호, 1957.2.15. 시행)을 제정하였으며, 이것이 1989년 6월 16일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법률 제4131호, 1989.6.16.시행, 이하 ‘즉심법’이라고 한다.)으로 전면개정되었으며, 이후 2차례의 부분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법률 제9831호, 2009.12.29. 일부개정·시행)<sup>173)</sup>

이러한 즉심절차는 우리나라 특유의 제도로<sup>174)</sup>, 경미한 형사사건의 신속·적절한 처리를 통하여 소송경제를 도모하려는 데 주된 목적<sup>175)</sup>이 있으며, 한편에서는 피의자·피고인의 시간적·정신적 부담을 덜어 준다는 의미에서 피고인이 이익보호도 고려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sup>176)</sup> 이외에도 즉결심판의 경우에는 전과기록이 남지 않으므로 경미한 범죄로 전과자가 양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sup>177)</sup>

172) 일본의 경우도 전후 미군의 형사법개혁에 따라 위경즉결제가 폐지되었다. 그러다가 1950년 교통사범의 신속한 처리 신속·적절한 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交通事件即決裁判手續法」이 제정되었으며, 2006년 「형사소송법」에 ‘即決裁判手續’이라는 장(제2편 제4장)을 별도로 마련하여 경미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도모하고 있다. 다만, 일본의 경우 즉결재판절차에서는 검사에게 공소제기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경우와 다르다.(신동운, 신형사소송법(제3판), 법문사, 2011, 1523면; 황태정, 앞의 논문, 51~52면 등 참조)

173) 이상은 신동운, 앞의 책, 1520~1522면; 황태정, “즉결심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3, 29~31면 참조

174) 신동운b, “경미범죄의 효율적 처리방안”, 형사정책 제15권 제2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3. 6. 16면

175) 제1조(목적) 이 법은 범증이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을 신속·적정한 절차로 심판하기 위하여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76) 노명선/이완규, 형사소송법, SKKUP, 2009, 779면; 배종대 외, 형사소송법(제3판), 홍문사, 2011, 903면; 신동운, 앞의 책, 1523면; 이은모, 형사소송법(제3판), 박영사, 2012, 937면; 이재상, 형사소송법(제9판), 박영사, 2012, 835면; 차용석/최용성, 형사소송법(제4판), 21세기사, 2012, 894면; 최영승, 형사소송법, 도서출판 대명, 2012, 749~750면

177)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수사자료표) ①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한 수사자료표를 작성하여 경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즉결심판 대상자
2. 사법경찰관이 수리(受理)한 고소 또는 고발 사건 중 불기소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의 피의자

## 2) 법적 성격

즉결심판은 법관이 공개된 장소에서 피고인을 출석시켜 실시하는 재판절차이다. 그러나 즉심절차는 통상의 공판기일에 행하는 절차는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정식 재판청구에 의하여 정식재판으로 이행되고, 판사의 기각결정이 있는 때에는 검사에게 송치하면 된다는 점에서 공판전의 절차이다.<sup>178)</sup> 다만, 제한된 범위이지만 공개된 법정에서 구두주의와 직접주의를 원칙으로 하여 심리가 진행되므로 약식절차 보다는 공판절차에 가까운 제도이다.

한편, 즉심절차는 형법상 형벌을 과하는 절차이며, 즉결심판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제16조) 따라서 즉심법은 형소법의 특별법이며, 형소법의 일부 내지 일체가 되어 있는 절차법이다.<sup>179)</sup> 따라서 즉심법은 범칙금절차(Bussgeldverfahren)를 규정하고 있는 독일의 질서위반법(Ordnungswidrigkeitsgesetz : OWiG)<sup>180)</sup>과는 그 성질을 달리한다.<sup>181)</sup>

## 나. 즉결심판의 청구

### 1) 청구대상

#### 가) 법규정의 내용

2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나 과료에 처할 범죄사건이다. 여기서 ‘처할’의 주체가

178) 배종대 외, 앞의 책, 904면; 신동운, 앞의 책, 1523면; 이은모, 앞의 책, 938면; 이재상, 앞의 책, 835면; 차용석/최용성, 앞의 책, 894면; 최영승, 앞의 책, 750면

179) 배종대 외, 앞의 책, 904면; 신동운, 앞의 책, 1525면; 이은모, 앞의 책, 938면; 이재상, 앞의 책, 836면; 황태정, 앞의 논문, 64면; 최영승, 앞의 책, 750면 등

180) 독일 질서위반법에서는 질서위반행위의 소추와 제재의 관할권은 행정관청이 갖는다.(제35조)(자세한 것은, 황태정, 앞의 논문, 41~43면)

181) 이재상, 앞의 책, 836면. 독일의 경우 전후 미군에 의한 형사절차의 개혁과정에서 경찰서장의 위경죄즉결처분권이 폐지되고, 경찰서장에게 위경죄에 대한 공소제기권한을 부여하였으며, 단독판사가 그 사건을 진속하게 처리하는 제도를 채택하였다. 그러다가 소위 질서위반법이라는 새로운 범죄유형을 도입·확장함으로써 경미범죄사건을 대부분 비범죄화하고, 이를 통하여 위경죄의 범주를 축소하였으며, 1975년 신형법에서 위경죄의 개념이 사라졌다.(신동운, 앞의 책, 1522~1523면)

모호하다는 점에서 그 기준이 되는 형이 무엇을 의미하느냐에 대하여는 의견이 나뉘어져 있으나 다수설은 선고형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한다.<sup>182)</sup> 따라서 주로 「경범죄처벌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범에 적용되지만,<sup>183)</sup> 벌금, 구류 또는 과료가 유일형 또는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이면 적용법률이나 죄명에 관계없이 일반 형사범의 경우에도 적용된다.<sup>184)</sup>

특히,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고 한다.)은 「경범죄처벌법」 위반사범에 대하여 범칙금통고처분을 함에 있어서 (i) 통고처분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 (ii) 주거 또는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iii) 그 밖에 통고처분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람인 경우나, (iv) 납부기간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이 납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도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iv)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그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8조 제1항) 또 (v)의 경우에 해당하여 즉결심판이 청구된 피고인이 즉심선고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그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그 피고인에 대한 즉심청구를 취소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이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사범에 대한 범칙금통고처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즉, 경찰서장은 「도로교통법」 위반사범에 대하여 범칙금통고처분을 함에 있어서 (i) 성명이나 주소가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ii) 달아날 우려가 있는 사람, (iii) 범칙금 납부통고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인 경우나, (iv) 납부기간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이 납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도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iv)에 해당하는 사람으

182) 이은모, 앞의 책, 938면; 황태정, 앞의 논문, 25면; 차용석/최용성, 앞의 책, 896면; 최응렬, “즉결심판제도에 관한 고찰”,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9호, 한국공안행정학회, 2000, 237면 등

183) 성윤환, “현행 즉결심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토를 중심으로”, 중앙법학 제8집 제3호, 중앙법학회 2006.10, 121면 참조

184) 김희욱, “즉결심판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2, 24면; 박상기/이건호, “경범죄처벌법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 133면; 황태정, 앞의 논문, 65~66면

로서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그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65조 제1항) 또 (iv)의 경우에 해당하여 즉결심판이 청구된 피고인이 즉심선고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그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경찰서장은 그 피고인에 대한 즉심청구를 취소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 나) 경찰실무상 즉심청구의 범위

경찰실무상 즉심청구 대상사건의 범위는 ① 즉심법 제2조, ② 「법원조직법」 제34조 제1항 제3호, ③ 검찰예규(1990. 10. 31.), ④ 「즉결심판청구사건 확대범위에 따른 지시」(대검형일 23100-1592(1988. 7. 20.))<sup>185)</sup> 등에 근거하여 정해진다.<sup>186)</sup>

위의 근거에 의거하여 경찰이 즉결심판을 청구하는 범주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고 한다. 첫째, 경범죄처벌법위반사범 50개 항목(제1조 제1호 내지 제54호). 둘째, 형법범 23개 항목 - 종래 관행상 즉결심판을 청구하던 사건으로 (i) 사안이 경미하고, (ii) 동종 초범이며, (iii) 피해가 회복된 사건에 한한다. 셋째, 특별법범 60개 항목 - (i) 법정형이 벌금 20만 원 이하 또는 구류나 과료가 포함되어 있는 사건, (ii) 법정형 벌금 20만 원 이상인 사건 중 별첨사건. 단, 벌금 20만 원 이상의 형과 선택형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안이 경미하고 초범인 경우에 한한다. 이외에 교통사고로 인명피해 없이 물적 피해 20만원 미만인 사건<sup>187)</sup>과 검찰청에서 개별적으로 추가 지정된 특별법범<sup>188)</sup>도 청구대상에 포함되며, 그 외의 사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하고 있다.<sup>189)</sup> 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경찰실무현장에서는 주로 후술하는 10개 범죄

185) 위 지시가 2000년 경찰실무전서에 그대로 실려 현재까지 개정 없이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경찰청, “즉심제도의 활성화방안”(2012))

186) 경찰청, “경찰업무편람”(3-12(즉결심판 청구사무)), 2012; 강원도지방경찰청, 1998, 11~12면; 김기완, “즉결심판(상)”, 수사연구 제162호, 수사연구사, 1997.4, 18~19면 참조.

187) 대검형사 01001-13110(1991.10.25.) 대물교통사고처리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188) 서울지검 총무 820-981(1980.1.20.)

189) 그러나 전술 대검예규에서는 사기 등 10개 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입건기준을 작성하여 시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반대하는 견해로는 김형훈, “즉결심판제도의 바람직한 운용방안”, 치안정책연구 제15호, 치안연구소, 2001.11, 399면 참조.

에 대한 형사입건기준만 업무에 참고하고 있어서, 10개 범죄 이외에는 즉심청구가 불가능한 것처럼 인식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에 따를 경우 즉결심판의 대상이 합리적 근거 없이 제한되고, 형사입건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게 된다는 점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즉심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전술 대검지시에 따른 즉심대상 사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5-1>과 같다.

<표 5-1> 즉심청구 가능 사건(대검 형일 23100-1592)

형법범 (23개 죄명)	행정범(60개 특별법)		
1. 폭행죄	1. 가축전염병예방법	24. 학원설립에관한법률	47. 전염병예방법
2. 협박죄	2. 개항질서법	25. 산림법	48.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3. 상해죄	3. 건축법	26. 생활보호법	49. 주민등록법
4. 사기죄	4.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	27. 선박안전법	50. 중기관리법
5. 횡령죄	5. 고물영업법(폐지)	28. 소방법	51. 직업안정법
6. 공갈죄	6. 공연법	29. 수난구조법	5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7. 손괴죄	7. 공유수면관리법	30. 수산업법	53. 철도법
8. 도박죄	8. 공중위생법	31. 식품위생법	54.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9. 장물죄	9. 광고물관리법	32. 신용조사업법	55. 축산물위생처리법
10. 주거침입죄	10. 군복및군용장구의단속에관한법률	33. 아동복지법	56. 폐기물관리법
11. 실화죄	11. 수면어업개발촉진법	34. 약사법	57. 하천법
12. 공연음란죄	12.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35. 양곡관리법	58. 향만법
13. 음화반포죄	13. 담배사업법	36. 어선법	59. 행정서사법
14. 절도죄(삭제)	14. 도로교통법(차량)	37. 유선및도선사업법	60. 향토예비군설치법
15. 권리행사방해죄	15. 도로교통법(보행자)	38. 유선방송관리법	
16. 다중불해산죄	16. 도로법	39. 윤락행위등방지법 (폐지)	
17. 공무원자격사칭죄	17. 도시계획법	40.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18. 증거인멸죄	18. 미성년자보호법(폐지)	41. 의료보호법	
19. 점유이탈물횡령죄	19. 민방위기본법	42. 인장법	
20. 수리방해죄	20. 병역법	43. 자동차관리법	
21. 명예훼손죄	21. 사행행위등규제 및 처벌특례법	44. 자동차운수사업법	
22. 신용훼손죄	22. 부동산중개업법	45. 자연공원법	
23. 업무방해죄	23. 사격및사격장단속법	46. 정당포영업법(폐지)	

\* 경찰청, “즉결심판제도의 활성화방안”(2012) 참조

한편 실무상 ① 합의관할사건, ② 고소·고발사건(직무상고발사건 제외), ③ 송치대상 사건과 관련되는 사건, ④ 형사입건사건 등은 즉결심판청구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하고 있다.<sup>190)</sup>

〈표 5-2〉 즉심피의자 행위 중 형사입건 사항

죄형별	범 죄 유 형	즉결 청구	형사 입건		
형법범	공무 집행 방해	1. 아무 이유 없이 근무중인 관공서에 들어와 행패 및 의자를 발로차고 2. 근무중인 공무원에게 협박과 혐오감을 주고 모욕하며 시비를 걸고 업무방해 한 자 3. 근무자의 옷을 찢고 단추를 떨어뜨리며 먹살을 잡는등 단순업무를 방해한 자	절대 불허	○	
	폭행죄	1. 동일 전과 3번 이상의 폭행범으로서 사안이 경미하고 단순폭행시라도 2. 근무중인 공무원에게 혐오감을 주며 시비를 걸며 공무원을 단순 폭행한자(1회) 3. 동행과정중 고의로 시비걸어 근무자를 폭행하는 자 4. 근무중인 근무자의 얼굴에 침을 고 심한 언동으로 시비를 걸며 업무방해하는 자		○	
	사기죄	1. 무전취식 무임승차로 3회이상 즉결청구된 자(액수 관계없이)전과 기록자 2. 무전취식 액수가 7만원을 넘으며 사기전과가 1회 이상 있는자(초범 및 보상 시 제외) 3. 무전취식 액수가 20만원을 넘을 때		○	
	손괴죄	1. 국가 공용물 및(파출소 유리, 집기) 파손해위 공중전화 박스 및 전화기 파손행위(피해액 상관 없이)		○	
		2. 손괴액수가 20만원을 넘을 때		○	
		3. 손괴 액수가 10만원을 넘으며 동일전과 1회 이상인자		○	
	주거 침입죄	1. 야간 주취하여 타인의 집에 들어가 난폭하게 행패하는자(전과기록자) 2. 아무 이유없이 타인의 건조물, 방실 침입자(전과기록자) 3. 행패하며 퇴거불응에 응하지 않는자 (단, 피해없이 주취하여 단순 주거 침입자는 즉결청구)		○	
		업무 방해	상습적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여 즉결재판에(4회)이상 청구된 전과기록자		○
	도박죄	1. 도박 관돈이 15만원이 넘을 때 2. 도박 전과자 1명이라도 가담시(관돈 관계없이) 3. 도박으로 즉결에 3회 이상 청구된 자(관돈 관계없이) 4. 식당, 다방, 당구장 등 도박장소 제공자(2회이상)		○ ○	
		식품 위생법	※식품위생법 무허가영업 실내1평 이상은 모두 입건 (단, 포장마차식으로 고정되어 있는 부업형태는 즉결청구 가능)		○
행정법		향도에비 군설치법	1. 귀국 신고지연 및 신고미필, 편성미필(초범이라도 입건) 2. 대간첩 작전 및 실제 상황불참시(초범이라도 입건) 3. 단순훈련불참(초범에 한해서 즉결청구)		○
		옥외광고 물관리법	1. 상습성 및 계속성이 있는 불법 광고물 부착, 배포자 (특히, 도로 및 노상에 술집선전 광고물 부착자) 2. 계속성 없이 단순 불법전단 부착 및 전단 배포자는 즉결청구 ※ 관혼상제는 대상에서 제외		○

\* 경찰청, “즉결심판제도의 활성화방안”(2012) 참조

190) 이상은 황태정, 앞의 논문, 67면 참조.

## 2) 청구권자와 관할법원

즉결심판의 청구권자는 경찰서장이다.(제3조) 청구권자의 청구는 보통의 공판절차에서 검사의 공소제기와 성질을 같이 하는 소송행위이다. 따라서 즉심청구에는 공소제기가 요구되지 않는다. 이러한 의미에서 경찰서장의 즉심청구는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예외가 된다.

즉결심판의 관할법원은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이다.(제2조, 법조법 제34조 제2항) 다만,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판사는 소속 지방법원장의 명령을 받아 소속법원의 관할사무와 관계없이 즉심청구사건을 심판할 수 있다.(제3조의2)

## 3) 청구방식

즉심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즉심청구서에는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죄명,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기재하여야 한다.(제3조) 이것은 공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형소법 제254조 제3항)과 같다. 약식절차와 달리 선고할 형량은 기재하지 않는다. 경찰서장은 즉심청구와 동시에 즉결심판을 하는데 필요한 서류와 증거물을 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4조) 이것은 즉결심판이 범증이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을 신속·적정하게 심판하기 위한 입법적 고려에서 공소장일본주의가 배제되도록 한 것이다.<sup>191)</sup>

### 다. 즉결심판청구사건에 대한 판사의 심사와 경찰서장의 송치

#### 1) 판사의 심사와 기각결정

즉결심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판사는 먼저 즉결심판을 함에 적당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심사결과 사건이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즉심절차에 의하여 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즉결심판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제5조 1항)

191) 대법원 2011.01.27. 선고 2008도7375 판결.

‘즉결심판을 할 수 없는 경우’란 즉결심판의 대상으로 청구된 사건이 즉결심판을 하기에 필요한 실체법상 또는 절차법상의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즉, 청구된 사건에 대하여 벌금·구류 또는 과료의 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이들 형이 병과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또는 청구된 사건에 대해 관할위반을 선고할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 ‘즉심절차에 의하여 심판함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란 즉결심판을 하는 것이 형식적으로는 가능할지라도 청구된 사건에 대하여 벌금·구류 또는 과료 이외의 형을 선고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건의 성질이나 양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통의 공판절차에서 신중하게 심판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등을 말한다.

## 2) 송치명령과 불기소처분

경찰서장은 즉심청구가 기각 결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제5조 제2항) 경찰서장의 즉심청구는 일반 공판절차에서 검사의 공소제기에 해당하는 소송행위이므로 공소제기된 사건을 판사가 다시 검사에게 송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경찰서장에 의해 관할검찰청에 송치된 사건은 이로써 검사의 수사사건이 되며, 검사에 의해 기소 여부가 결정되게 된다.

판사의 기각결정에 의하여 경찰서장이 사건을 송치한 경우에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다. 이에 대하여는 종래 검사는 불기소처분을 할 수 없고 반드시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하는 견해<sup>192)</sup>가 있었으나, 다수설<sup>193)</sup>은 경찰의 부당한 즉심청구를 시정할 수 있게 하고, 판사가 즉심청구의 기각결정을 한 때에는 즉심청구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다고 보아야 하므로 불기소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한다.<sup>194)</sup>

192) 김기두, 형사소송법, 박영사, 1987, 344면; 서일교, 형사소송법, 박영사, 1979, 399면(차용석/최용성, 앞의 책, 897면에서 재인용)

193) 배중대 외, 앞의 책, 906면; 신동운, 앞의 책, 1528면; 이은모, 앞의 책, 940면; 이재상, 앞의 책, 837면; 차용석/최용성, 앞의 책, 883면; 최영승, 앞의 책, 752면 등.

194)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도2735 판결에서는 “법원이 경찰서장의 즉결심판 청구를 기각하여

## 2. 즉결심판의 처리절차와 현황

### 가. 경찰의 처리절차

즉심사건은 대부분 최일선 경찰단위부서인 지구대, 파출소, 치안센터(이하 ‘지구대 등’이라고 한다.)에서 행하여지며, 그 처리절차에 대해서는 ‘경찰업무편람 3-12(즉결심판 청구사무)’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즉, 단속경찰관이 즉심대상이 되는 경미한 범죄나 질서위반행위를 인지하거나 신고에 의해 적발하게 되면 1차적으로 현지훈방, 지도장발부, 범칙금통고처분 또는 즉심대상자로 처리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한다.<sup>195)</sup> 만일 즉심대상자로 판명되면 지구대에 임의동행하여 지구대장, 파출소장, 치안센터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범죄사실을 조사한 후 지구대장 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러면 지구대장 등(순찰팀장, 부소장)은 훈방 또는 즉심회부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때 경직법상 보호조치대상이 아닌 즉심청구대상자는 지구대 등에서 전원 비보호 조치한다.<sup>196)</sup> 이때 주민조회 등을 활용, 대상자의 신원 및 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sup>197)</sup> 즉심출석통지서를 교부한 후 즉시 귀가조치 시키고 즉심사범적발보고서 등 관련서류만 경찰서 생활안전과(야간·공휴일: 상황실)에 인계한다. 반면에 경직법 제4조에 해당되는 보호조치 대상자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직무집행시의보고절차규칙」(경찰청훈령 제514호)에 의한 보호조치 보

경찰서장이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였으나 검사가 이를 즉결심판에 대한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가 있는 사건으로 오인하여 그 사건기록을 법원에 송부한 경우, 공소제기의 본질적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검사에 의한 공소장의 제출이 없는 이상 기록을 법원에 송부한 사실만으로 공소제기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을 뿐이다.

195) 경미사범의 경우, 외근경찰관이 현장에서 훈방하였을 경우에는 근무일지에 기재하고, 범칙행위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발부한다.

196) 일시귀가처리대상(불출석 심판 대상 포함)은 즉심회부 대상자 중 거주지와 신원이 확실한 자로 형집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신원미확인자는 신원보증인이 있는 경우에 한함), 타기관 고발사건으로서 형집행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도로교통법 위반 운전자 등이다. 이때 법원과 협조하여 장시간 대기하거나 결석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다.(오윤성, “군즉결심판제도에 대한 고찰”,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9호, 한국공안행정학회, 2000, 263면 각주 23)

197) 신원 및 주거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문및수사자료표등에관한규칙」(경찰청훈령 제672호, 2012.7.19)에 의거하여 신원확인을 위한 지문 채취 후 첨부하여야 한다.

고서를 작성하고, 대상자와 함께 지체없이 경찰서에 인계조치 한다.

사건을 인계받은 관할경찰서에서는 지구대 등으로부터 즉심사범적발보고서 등 관련서류만 인계받은 경우 생활안전과장(야간·공휴일 : 상황실장)이 서류에 의한 예심을 실시<sup>198)</sup>하여 훈방, 통고처분 또는 형사입건<sup>199)</sup> 조치하고, 예심결과를 전화 등으로 피의자에게 통지한다. 또 보호조치 대상자로 동행된 자에 대해서는 생활안전과장(야간·공휴일 : 상황실장)이 즉시 심사하여 보호조치하고, 보호조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및 보호자 등 신병인수인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귀가 조치한다. 이때 현역에 복무 중인 군인은 군수사기관에 이첩한다. 종래에는 즉심대상자는 경찰서 보호실에 유치하였으나 즉심대상자에 대한 경찰서보호자유치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sup>200)</sup> 이후 비보호를 원칙<sup>201)</sup>으로 하므로 일단 귀가조치하고, 즉결심판일에 즉심법정으로 출석하도록 하고 있다.<sup>202)</sup> 경찰 내 즉심사건 처리절차를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 5-1>과 같다.

198) 예심은 경찰서 내 일정한 장소를 선정하여 심사실 좌석을 배열하고 즉심피의자 전원을 동석시킨 후 피의자들이 보는 앞에서 1명씩 개별보고서를 검토, 변명을 충분히 듣고 모두가 긍정할 수 있는 공정한 예심이 되도록 하고 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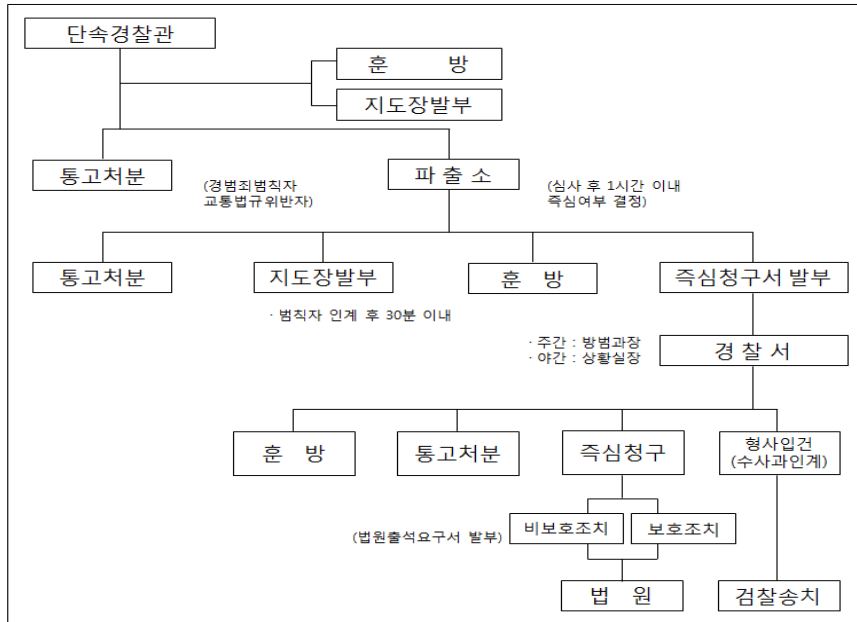
199) 즉심청구 대상자로 보고된 자라 하더라도 심사결과 범죄사실이 중하여 20만원이상의 벌금형에 처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사입건 조치한다.

200) 「형사소송법」이나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의 법률에 정하여진 구금 또는 보호유치 요건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즉결심판 피의자라는 사유만으로 피의자를 구금, 유치할 수 있는 아무런 법률상 근거가 없고, 경찰 업무상 그러한 관행이나 지침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인신구속을 행할 수 있는 근거로 할 수 없으므로, 즉결심판 피의자의 정당한 귀가요청을 거절한 채 다음날 즉결심판법정이 열릴 때까지 피의자를 경찰서 보호실에 강제유치시키려고 함으로써 피의자를 경찰서 내 즉결피의자 대기실에 10~20분 동안 있게 한 행위는 형법 제124조 제1항의 불법감금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피의자를 보호실에 밀어넣으려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하였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의2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877 판결)

201) 다만, 경직법 제4조에 위반한 사람들(정신착란자, 주취자, 자살기도자 등)의 경우와 주취상태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위해를 가한 즉심피의자 중 주거나 신원이 불확실하여 보호자에 연락·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호조치 할 수 있다고 한다.(박상진, “즉결심판제도의 문제점과 입법론적 고찰”, 중앙법학 제4권 제1호, 중앙법학회, 2002.3, 338~339면) 이에 대하여는 유치장 내에 이들을 다른 피의자와 분리하여 즉결피의자유치실을 마련하자는 견해도 있다.(김형훈, 앞의 논문, 402면)

202) 박상진, 앞의 논문, 336~338면; 최응렬, 앞의 논문, 248면; 황정익,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의 실증적 고찰”, 현대형사법론 : 죽헌 박양빈교수 화갑기념논문집, 죽헌 박양빈 교수 화갑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1996, 809면

〈그림 5-1〉 경찰의 즉결심판 단속처리절차



\* 박상진, 앞의 논문, 337면 <그림 1>을 기초로 하여 수정·보완한 것임

### 나. 즉결심판의 처리현황

경찰의 즉심청구 현황을 보면 <표 5-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년 100만명을 넘나들던 즉심청구가 2002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줄어들어 2005년 27,030건까지 감소했다가 다시 천천히 증가하여 2010년 59,139건에 이르고 있다. 이것은 2001년 「도로교통법」과 2002년 「경범죄처벌법」의 개정으로 그간 즉심건수의 대다수를 차지하던 범칙금 미납 사범이 가산금(50%) 납입으로 즉심에 넘겨지지 않은 결과라고 한다.<sup>203)</sup>

〈표 5-3〉 최근 10년간 즉심사건 청구현황

(단위 : 명)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인원	1,436,343	749,925	52,233	37,427	27,030	36,530	48,399	62,938	74,849	59,139

\* 경찰청, “즉결심판제도의 활성화방안”(2012) 참조

203) 경찰청, “즉결심판제도의 활성화방안”(2012) 참조

반면, 형법범에 대한 즉심청구 건수는 <표 5-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이것은 경미한 형법범에 대한 재판을 즉심절차로 전환한다는 의미의 활성화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sup>204)</sup>

<표 5-4> 최근 10년간 형법범 즉심사건 청구현황

(단위 : 명)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인원	15,660	9,926	6,998	6,296	5,667	16,769	12,578	17,778	19,488	12,488

\* 경찰청, “즉결심판제도의 활성화방안”(2012) 참조

한편 즉심청구사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면 <표 5-5>에서 보는 것처럼 2009년 처리건수가 74,850건에서 2010년 59,139건, 2011년 55,072건으로 2009년보다 21%나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9년 처리건수가 74,850건으로 특히 많은 것은 지역경찰 근무성적 평가시 즉심 단속건수에 높은 점수를 부여한 것이 원인이라고 한다. 반면에 2012년의 경우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사범의 경우 계도위주의 단속활동을 하면서 경범죄처벌법위반 즉심청구건수가 2011년에 비해 15.4%나 감소한 것이라고 한다.

<표 5-5> 경찰의 즉심사건 처리결과

(단위 : 명)

구분	즉심청구	죄종			심판결과							
		경범	특별법범	형법범	구류	벌금	과료	청구기각	무죄	선고유예형면제	면소공소기각	
2009	74,850	42,505	12,857	19,488	1,201	62,745	3,624	903	828	4,996	553	
2010	59,139	37,729	8,692	12,706	446	50,483	3,101	677	391	3,724	305	
2011	55,072	32,011	9,717	13,344	449	46,007	3,041	712	610	3,933	320	
2011.6	27,353	16,394	4,225	6,734	223	22,684	1,566	364	304	2,042	170	
2012.6	23,488	13,868	3,916	5,704	113	20,256	1,080	297	247	1,406	89	

\* 자료 : 경찰통계자료 참조

204) 경찰청, “즉결심판제도의 활성화방안”(2012) 참조

## 제2절 소년범처리시 즉결심판청구 등에 대한 이론적 검토

경찰의 현행 소년사건의 처리실무를 보면 경미한 비행소년에 대하여 통고처분이나 즉결심판에 의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하에서는 각 유형별로 나누어 그 정당성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 1. 18세의 범칙소년에 대한 통고처분과 즉결심판청구

「경범죄처벌법」 제5조 제2항 제4호는 명시적으로 18세 미만자를 범칙자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18세 미만의 소년이 「경범죄처벌법」상의 범칙행위를 하더라도 동법에 의한 통고처분이 불가능하다.<sup>205)</sup> 따라서 현행 「경범죄처벌법」상 문제되는 경우는 18세의 소년에 대하여 「경범죄처벌법」상의 통고처분 및 범칙금 미납시 즉심청구가 가능한가라고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경범죄처벌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총 54개의 경범죄 중에서 22개에 대하여 ‘범칙행위’로 규정하면서, 이에 대해서는 경찰서장이 1차적으로 범칙행위자에게 금전납부를 내용으로 하는 서면을 통고하고(제6조, 이를 ‘통고처분’<sup>206)</sup>이라고 한다), 이를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즉결심판을

205) 「도로교통법」에는 이러한 제한규정이 없지만 「경범죄처벌법」을 유추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도종진 외, 앞의 논문, 107면 주 124 참조) 그러나 이들 소년사건에 대해서도 범칙금납부로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키는 것이 소송경제에 부합하며 피단속자의 부담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 통고처분제도가 있는 「도로교통법」 등 다른 법률에서는 ‘18세 미만의 사람’에게도 통고처분이 가능하다는 점, 경미범죄에 대하여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비범죄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 낙인효과를 방지하여 처벌대상이 되더라도 신속하게 공동체로의 복귀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 현실적으로 경미한 사건의 증가로 인한 형사사법기관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들에게도 범칙금 통고처분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 있다.(김형훈a, “경미범죄와 즉결심판을 받을 권리”, 경찰학연구 제6권 제1호, 경찰대학, 2006.4, 10~11면; 박찬걸, “개정 경범죄처벌법의 내용에 대한 평가 및 향후 과제”, 경찰학논총 제7권 제1호, 경찰학연구소, 2012, 32면 등)

206) 통고처분 또는 범칙금 통고처분이란 일정한 범칙행위를 범한 자가 범칙자에게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이 서면으로 범칙금의 납부를 통고하고 그 기한 내에 범칙금을 납부할 경우 당해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소추를 면하게 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외에 「도로교통법」, 「조세범처벌법」, 「출입국관리법」에도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범칙금통고처분제도를 두고 있다.

청구하도록(제8조)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경찰실무에서는 18세의 소년들이 경범죄를 위반한 경우에는 범칙금을 통고처분 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이것은 「근로기준법」상 18세 이상의 소년은 근로활동이 가능하고, 「소년법」 제62조에는 18세 이상의 소년에 대한 환형처분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18세 이상의 소년에 대한 범칙금 통고처분이 가능하다는 것을 근거로 하고 있다.<sup>207)</sup> 따라서 18세의 범칙소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하고 있는 현행 경찰실무는 현행법상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18세의 소년의 경직법 위반에 대하여 일반 성인들과 같은 기준으로 경직법에 의한 범칙금의 부과가 아니라 바로 즉결심판에 회부하는 것은 소년보호의 입법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며, 즉결심판의 경우에는 구류형 등의 신체형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형법의 겸역성의 원칙이나 최소성의 원칙의 요청에 따르면 법률상 허용된 재량의 범위를 넘는 조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sup>208)</sup> 따라서 소년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가벼운 벌칙인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거나 재범인 경우 등, 부득이하게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즉결심판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 2. 18세 미만의 경범죄소년에 대한 즉결심판청구

18세 미만의 소년이 「경범죄처벌법」상의 경범죄를 범했지만 그 행위가 동법 제5조의 범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즉심법을 직접 적용하여 경찰서장이 직접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가’하는 문제이다. 즉심법에서는 그 적용대상과 관련하여 연령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형식적으로 즉심절차에 회부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소년법에 대하여 벌금, 선고유예 또는 형면제 등의 판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소년법」상 18세 미만의 소년에 대해서는 성인의 경우(형법 제70조<sup>209)</sup> 참조)와 달리 환형처분을 금지(제62조)<sup>210)</sup>하고 있어서 벌금미납의

207) 최병각, 앞의 논문, 110면

208) 김용우/최재천, 앞의 책, 533면

경우에도 강제처분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경범죄처벌법」상의 제1조 각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의 처리절차로는 다음 2가지가 가능하다. 하나는 「경범죄처벌법」 제2장에 따라서 범칙행위자에게 범칙금납부를 통고하고 미납시 즉결심판을 청구하는 방식(소위 통고처분절차)이며, 다른 하나는 통고처분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범죄에 대하여 즉심법을 적용하여 즉결심판을 청구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현행 「경범죄처벌법」상 제재수단을 행정질서벌(범칙금)과 형벌(벌금 등)로 나누고 있는 것은 중한 위반행위에는 즉결심판을 통하여 형벌을 부과하고, 경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고려에 기초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sup>211)</sup> 따라서 「경범죄처벌법」이 18세 미만의 소년에 대하여 범칙금에 의한 제재를 금지하고 있는 취지를 감안하면 즉심절차에 의하여 범칙금보다 더 중한 제재인 형벌의 부과는 당연히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sup>212)</sup>

만일 18세 미만의 소년이 「경범죄처벌법」을 위반한 경우에 즉결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할 경우 즉심절차에서는 벌금형이나 구류형의 선고도 가능하므로 범칙금청구가 가능한 18세 소년의 경우에 비해 현저히 균형을 잃게 된다. 그러므로 18세 미만의 소년에 대하여는 「경범죄처벌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동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경찰이 즉심청구가 아니라 훈방조치하거나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하여 가정법원에 송치하도록 하는 것이 현행 법제에서는 「소년법」의 이념에 합치한다고 할 수 있다.<sup>213)</sup>

### 3. 범죄소년에 대한 즉결심판청구

19세 미만의 소년이 「경범죄처벌법」 이외에 일반 형벌법규에 위반한 경우에 경찰이 범죄소년으로 검사에게 송치하거나 촉법소년으로 소년법원에 송치하는 대신 직접 즉

209) 제70조(노역장유치)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210) 제62조(환형처분의 금지) 18세 미만인 소년에게는 형법 제70조에 따른 유치선고를 하지 못한다.

211) 박상기/이건호, 앞의 논문, 123면

212) 최병각, 앞의 논문, 111~112면

213) 도중진 외, 앞의 논문, 111면

결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 가. 소극설

소년에 대한 형사처분은 보충적으로 부과되어야 하며, 소년사범에 대한 즉결심판청구는 소년에 대해 보호처분을 우선으로 하는 「소년법」 제49조 제1항의 입법취지에 위반할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이나 즉심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의 「소년법」의 성질을 고려할 때 「소년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규정이 없는 한 범죄소년에 대해서는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sup>214)</sup> 즉, 벌금이나 과료와 같은 재산형은 18세 미만의 소년범에게는 환형처분이 금지되는 이상 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소년법이 소년범죄자에 대한 구금을 제한하고 보호처분을 대체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소년보호사건으로 취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를 살리려면 구류형을 의도한 즉심청구도 바람직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한다.<sup>215)</sup>

동 견해에서는 입법론적으로 보더라도 범죄소년에 대한 경찰의 즉심청구가 소년보호이념에 합치되는가에 대한 의문의 여지는 남는다고 한다. 즉, 「경범죄처벌법」 위반사건을 제외한 소년의 일반 형사사건에 대하여 경찰이 즉결심판을 청구하고 있는 실무의 태도는 형식적인 법해석에 근거하게 되면 현행법상 부당한 것은 아니지만, 즉결심판에 의해 범죄소년에게 부과되는 것이 대부분 벌금형임을 고려할 때 경제적 능력이 없는 소년에 대한 제재수단으로서 적합한지도 의문이며, 소년에 대한 제재로서의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한다. 따라서 이 견해에서는 검사에 의한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소년법 제49조의3)<sup>216)</sup>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한다.<sup>217)</sup>

214) 김용우/최재천, 앞의 책, 533면; 최병각, 앞의 논문, 114면. 소극설에서도 현행법상 범죄소년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하면서, 범죄소년에 대한 경찰의 즉결심판 청구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판사가 경찰서장의 청구를 기각하거나(즉심법 제5조)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는(소년법 제50조)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도중진 외, 앞의 논문, 111면 참조)

215) 이호중a, 앞의 논문, 35면

216) 검사의 조건부 기소유예란 검사가 소년사건에서 소년과 소년의 친권자·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선도나 소년의 선도·교육과 관련된 단

## 나. 적극설

즉심법에 범죄소년에 대한 배제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년법」이 특별법이라고 하는 사실만으로 범죄소년에 대한 경찰의 즉심청구를 부당하다고 하기는 어렵다는 주장이다.<sup>218)</sup> 또 현실적으로 소년의 입장에서는 즉심으로 처리되어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선고받는 것이 낙인효과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사회복귀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소년법원이나 검사에게 송치되는 것보다 유리하며, 즉결심판의 대상소년을 모두 소년법원에 송치할 경우에 소년법원으로서의 지나치게 업무부담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소년에 대한 즉결심판의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한다.<sup>219)</sup> 따라서 경찰이 범죄소년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현행법으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한다. 만일 소년법에 대하여 즉심청구가 인정되지 않고 모두 소년부에 송치되어 조사 및 심리를 거치게 한다면 이는 성인법에 비하여 오히려 소년법을 차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한다.<sup>220)</sup>

## 다. 소결

현행법에서도 소년법이 즉심대상이 되는 한 경찰훈방이나 검사에의 송치가 아닌 그

---

체·시설에서의 상담·교육·활동 등을 받게 하고, 피의사건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소년법 제49조의3) 이 제도는 범죄소년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면서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이하 범죄예방위원으로 약칭)의 선도보호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며, 범죄소년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범위를 확대하고, 소년범죄의 예방과 처우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법무부a, 범죄백서, 2011, 224면)

217) 도중진 외, 앞의 논문, 112면. 즉결심판에 의한 처벌은 형벌을 내용으로 하지만, 검사의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의 경우에는 사실상 처벌이 면제된다는 점에서 소년에게 더 유리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입법론적으로 「소년법」에 “소년사건에 관해서는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한다.

218) 도중진 외, 앞의 논문, 111면

219) 오영근/최병각, “소년사건처리절차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5, 72면; 이영돈, “즉결심판의 청구대상에 관한 연구”, 경찰학연구 제10권 제2호, 경찰대학, 2010, 33면; 점승현, “소년사법절차에 관한 연구 -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8, 87면. 즉심법에 소년이 심판대상자인 경우에는 「소년법」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다.

220) 이영돈, 앞의 논문, 33~34면

중간처분으로서 소년법에 대하여 즉결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다. 오늘날 소년법의 처우에 있어서는 '처벌'보다는 '보호'라는 차원에서 교육적 처우를 우선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전자는 과거의 범죄행위에 대한 것인 반면, 후자는 미래의 대상, 즉 독립적이고 동조적인 개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양자의 조화가 요구된다. 따라서 소년법에 대한 교육적 처우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소년범에게 장래에 범준수를 이끌어내기 위한 처벌과 통제의 유용성도 필요하다.<sup>221)</sup> 따라서 소년범에게도 스스로의 책임을 자각하도록 유지하면서 보호와 지원이 이루어지게 할 필요가 있다.<sup>222)</sup> 그렇다고 한다면 소년범에 대한 경찰의 즉심청구를 무조건 부당하다고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경찰이 소년범을 조사하여 즉심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검찰송치에 따른 사법처분의 위협성과 낙인효과의 지속성으로 인한 불이익으로부터 빨리 해방될 수 있기 때문에 소년범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기도 한다. 다른 한편에서는 즉심청구에 따라 최소한의 형사처벌이 부과된다는 점에서 소년범에 대한 경고의 의미도 있을 수 있으므로 소년범의 책임을 묻는데 유용한 처분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즉심대상이 되는 대부분의 범죄가 피해법익이 경미하고 피의자가 초범이며 피해의 원상회복이 있는 경우에는 통상 검찰실무상 기소유예처분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즉심청구로 인해 구류형을 받는다면 그 차이는 불공평한 신체자유침해로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sup>223)</sup> 그러나 소년범이 검사의 조건부 기소유예의 대상이 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경찰 단계에서도 사실상 훈방의 대상이 되는 정도에 그칠 것이므로 형사처벌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설령 이러한 사건이 경찰서장에 의해 즉심청구가 되더라도 구류형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다. 또 위의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이 검사의

221) 일본에서도 최근 소년의 범죄·촉법행위에 대해서도 법적 비난 의미의 '책임'이 문제되고 있고, '책임'에 따른 법적 '제재'로서 보호처분이 부과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유력하게 주장되고 있다.(葛野尋之, 少年司法における参加と修復, 日本評論社, 2009, 347면)

222) 장규원/윤현석, 앞의 논문, 21면 참조. 아동에 대한 규범학습의 3가지 기본요소로서 (i) 아이의 행동을 감독하고, (ii) 일탈행위가 발생하면 그것을 알아차려서 문제 삼고, (iii) 일탈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제재를 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다.(이진국, "소년의 책임과 회복적 사법", 소년보호연구 제9호, 한국소년정책학회, 2006.12, 6면)

223) 하태훈, "즉결심판과 피고인의 인권", 30면

기소유예처분의 대상이 된다는 것에 지나지 않고, 반드시 기소유예처분이 된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검찰송치가 즉심청구 보다 반드시 유리한 처분이라고 할 수도 없다. 나아가 이들 사건에 대하여 검사에 의해 기소유예처분이 행하여진다는 것을 전제로 하더라도 검찰송치를 통해 사법절차에 오랫동안 노출되게 함으로써 소년범이 겪게 되는 심리적·정신적 고통이나 그로 인한 낙인효과를 고려하면 즉결심판에 의한 처벌이 있더라도 과연 그것이 검사에 의한 조건부 기소유예 보다 사실상 중한 처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sup>224)</sup> 더구나 이러한 비판은 즉심청구제도를 후술하는 바와 같이 소년범에 대한 다이버전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도록 발전시킨다면 상당히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소년범에 대한 기존의 선도위주의 처분이 소년범에 대한 반성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고, 따라서 그 개선효과가 적으며, 성인범의 경우와 달리 <표 5-6>에서 보는 것처럼 오히려 재범율이 높아지고 있다<sup>225)</sup>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표 5-6> 경찰조사에 따른 소년범 재범율

(단위 : 명)

연도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1.6	2012.6
소년범	90,628	115,661	123,044	118,058	94,862	86,621	38,493	49,120
재범자	26,450	33,687	31,771	38,207	33,638	31,956	14,671	17,611
재범률(%)	29.2	29.1	25.8	32.4	35.5	36.9	38.1	35.9

\* 경찰청, 경찰백서, 2011, 127면 및 경찰청 자료 참조

그렇다고 한다면 즉심절차가 소년범의 낙인효과를 줄이면서 신속한 처벌을 통해 형벌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검증되지 않은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서두르기 보다는 소년범에 대한 즉심절차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소년범의 재범방지의 효과를 높

224) 동지, 이영돈, 앞의 논문 31면

225) 법무부의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율 현황(2007~2011년) 및 청소년 보호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율은 11.4%로 성인(4.1%)의 세 배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의 재범율이 2007년 4.6%에서 소폭 낮아진 것과 대조적이다.

(<http://blog.chosun.com/anga805/6308442>)

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비록 대부분의 소년범의 경우에는 경제적 능력이 없으므로 벌금형을 부과하더라도 결국, 부모 등 보호자의 책임으로 전가되는 부분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사실상 미성년자의 자녀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일체 부담하지 않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부모에 대한 간접적인 징계효과나 주의를 촉구하는 의미도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범죄억지측면에서 보면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이해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소년범에 대해서는 즉결심판을 단지 형사처벌을 위한 수단으로만 활용할 것이 아니라 경찰훈방과 연계하여 '소년보호'라고 하는 기존의 「소년법」의 취지를 살리면서, 한편에서는 피해자보호를 통한 회복적 사법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경찰다이버전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만일, 소년범에 대하여 즉심청구를 허용하게 되면 「소년법」상 보호처분이거나 검사의 조건부 기소유예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오히려 소년범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 면이 있음을 완전히 부인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러한 우려를 고려하여 즉심절차에서도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년범에 적합한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감한 사고의 전환을 통해 후술하는 바와 같이 현행 즉결심판에 관한 법과 제도를 대폭 수정·보완한다면 충분히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 제3절 소년범처리시 즉결심판 활용을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방안

#### 1. 관련법의 개정

##### 가. 즉결심판대상의 확대

즉심법의 규정을 그대로 유지한 채 소년범에 대한 경찰의 즉결심판을 청구를 허용할 경우에는 즉결심판에 의한 처벌이 형사처벌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찰로서는 부담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현행법 하에서는 소년범에 대한 즉심청구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므로, 장래적으로는 즉심법의 개정을

통해 즉결심판의 대상을 「경범죄처벌법」이나 「도로교통법」 위반을 포함하여 경미한 죄를 범한 모든 소년법에 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sup>226)</sup> 다만, 소년사범에 대한 즉결심판의 경우에는 소년의 특성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므로 「소년법」에도 그 법적 근거를 두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우선은 즉심법에서 그 대상을 명문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때에도 소년법의 보호를 위하여 즉심절차에서도 소년법의 신원비공개,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등, 현행 「소년법」상 각종 보호제도가 그대로 유지되도록 준용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또 즉심절차에서는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큰 만큼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헌법상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는 ‘변호인보조인제도’를 도입하여 소년법이 즉심절차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sup>227)</sup> 그리고 즉심법의 개정에 수반하여 경찰 소년규칙을 개정하여 소년법에 대한 즉결심판절차의 청구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 입법안으로는 즉심법 제2조를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면 될 것이다.

**제2조**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의 판사(이하 "판사"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수 있다.

1. 50만원 이하의 벌금<sup>228)</sup>,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사건
2. 단기 1년이하의 형<sup>229)</sup>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소년사건, 단 「경범죄처벌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은 제외한다.
3. 학교폭력사건

226) 동지, 손동권, “즉심사건처리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형사정책연구 제10권 제2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6, 124면

227) 현재 즉심사건의 공판절차에서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경우에는 거의 없지만, 이것은 피고인의 방어권보장의 관점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손동권, 앞의 논문, 113면; 하태훈, 앞의 논문, 36면) 따라서 전술한 바와 같이 촉법소년에 관련된 조사에 있어서 변호사인 부첨인(付添人)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일본 「소년법」(제6조의3)의 경우처럼 우리나라도 「소년법」 제17조의 국선보조인 제도를 확대하여 즉심사건을 포함하여 모든 소년법의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시행하면 될 것이다.

228) 현행과 같이 즉심대상이 ‘2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된 것은 1994년 7월 27일 개정된 「법원조직법」(법률 제4765호, 1995.3.1. 시행) 제34조 제1항에 따른 것이지만, 법개정 이후 이미 20년 가까이 지난 상황이므로 그 동안의 경제변화나 물가변동을 고려하면 적어도 그 대상을 ‘5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확대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제19조(형사소송법 및 소년법의 준용)** 즉결심판절차에 있어서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한 것은 「형사소송법」 및 「소년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판사가 즉심절차에 의하여 사건을 종결하는 경우에도 법원은 「소년법」 제32조 제1항의 보호처분만을 부과하거나 병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년법에 대한 즉심절차가 단지 형사처벌을 위한 절차가 아니라 소년보호처분을 위한 절차로서 기능하게 함으로써 소년법의 개선·교화에 이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sup>230)</sup> 이를 위해서는 즉심법에 판사가 즉심절차에서 소년법에 대하여 보호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할 것이 요구된다.<sup>231)</sup> 이렇게 되면 「경범죄처벌법」을 위반한 18세 미만의 자에 대해서 즉심청구를 허용하더라도 형벌 외에 보호처분을 명할 수 있게 될 것이므로 전술한 것처럼 현행법상 문제되는 18세 소년과의 처벌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소년법」상 18세 미만의 소년에 대하여 벌금형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환형처분이 금지되어 있지만, 이 경우 즉심절차에서 벌금형 대신에 보호처분을 명하거나 또는 벌금형의 미납에 대응하여 환형처분으로서 구금형 대신에 보호처분을 부과하도록 하는 방법을 도입함으로써 효과적인 제재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sup>232)</sup> 그 입법안으로는 즉심법 제11조의2를 신설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면 될 것이다.

229) 2004년 3월 개정된 일 형소법(2004.5.28. 공포)에 따라 200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일본 즉결재판절차에서는 검찰관이 '사형·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을 제외하고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동의를 얻어서 공소제기와 동시에 즉결재판절차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일 형소법 제350조의2 참조)

230) 손동권, 앞의 논문, 124면에서도 즉결심판에 의한 제재로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사회내 처우가 도입된다면 그 이용의 필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하고 있다.

231) 이영돈, 앞의 논문, 34면에서는 보호처분이 필요한 소년법을 즉심청구를 통하여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고, 선도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소년에 대한 수강명령 내지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32) 전술한 것처럼 일본에서는 소년교통사범이 반칙금을 미납한 경우에 가정재판소에 송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입법론적으로는 이러한 법제의 도입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제11조2** ① 판사가 소년에 대하여 즉결심판에 의하여 유죄를 선고할 경우에는 형의 선고 외에 「소년법」 제32조제1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병과하거나 형의 선고 없이 보호처분만을 선고할 수 있다.

② 판사가 제1항에 의하여 소년에 대하여 보호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소년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판사가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예의 유치 또는 「소년법」 제32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명할 수 있다. 이때 유치기간 또는 보호처분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④ 판사가 제1항에 의하여 소년에 대하여 형의 선고 또는 보호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경찰서장이 제출한 당해소년에 대한 조사자료 및 의견서를 참작하여야 한다.

그러나 즉결심판의 경우에는 일반 형사법원에서 심판이 행하여지는 반면,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의 경우에는 ‘소년부 판사’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처분의 전문성이나 재판절차의 통일성 등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즉결심판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주된 처벌이고, 보호처분은 부수적 처분이다. 따라서 현행법상 형사법원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에 형벌 이외에 수감명령이나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형법 제62조의2<sup>233)</sup>) 즉결심판의 경우에 소년법에 대하여 형사법원에서 소정의 보호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더라도 소년에게 불이익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sup>234)</sup>

또 즉심절차는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판사가 소년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보다는 범죄사실관계를 중심으로 한 법리적 판단에 치우쳐 소년법에게 적절한 형의 선고나 소년의 개선에 적합한 보호처분을 부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경찰서장 등이 소년에 대한 즉결심판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소년에 대한 사전조사자료와 그 처분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판사의 심판에 이용하도록 제도화하여 합리

233) 제62조의2(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감명령) ①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감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집행을 유예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원은 유예기간의 범위내에서 보호관찰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감명령은 집행유예기간내에 이를 집행한다.

234) 따라서 구류형을 선고할 경우에도 보호관찰이나 수감명령·사회봉사명령 등, 사회내 처우로 대체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손동권, 앞의 논문, 120면; 송광섭, “경미사건의 효율적 처리방안”, 형사법연구 제19호, 한국형사법학회, 2003, 67면; 최응렬, 앞의 논문, 250면 등)

적인 처분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 내용은 즉심법 제11조의2(안) 제4항 외에 제3조에서 이에 관한 추가조항을 신설하면 될 것이다. 그 입법안은 다음과 같다.

**제3조** ① <현행대로 유지>  
 ② <현행대로 유지>  
 ③ 경찰서장은 소년에 대하여 즉결심판을 청구함에는 범죄사실 외에 당해 소년에 대한 조사자료 및 그 처분에 대한 의견서를 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현행 제3항 옮김>

### 나. 소년범처리시 즉결심판청구를 위한 가이드 라인

소년법에 대한 즉결심판을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경찰다이버전으로 활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소년법의 경우에 그 청구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렇게 청구대상을 확대하고자 할 경우에는 경찰서장이 그 권한을 남용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즉심대상을 확대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사전에 명문규정을 통해 확립해 둘 필요가 있다.<sup>235)</sup>

#### 1) 청구대상

소년규칙에서는 경찰서장 등이 즉심청구권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대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이 요구된다. 그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전술한 훈방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찰업무편람’이 참고로 될 수 있을 것이다.<sup>236)</sup> 그 입법안은 다음과 같다.

235) 현행법하에서도 다수설이 즉결심판의 대상을 선고형을 기준으로 함에 따라 즉결심판의 대상이 무한정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36) 경찰청, “즉결심판의 활성화방안”(2012)에서는 즉결심판의 활성화를 위하여 즉심법 제2조를 선고형으로 해석할 경우 지나치게 범위가 확대된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특히, 형법범죄 중 즉결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는 범죄의 종류와 피해의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제 조(청구대상)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2조제2호의 대상이 되는 소년사건은 소년이 단기 1년 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로서 범행을 자백한 경우에 한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초범인 자(전과나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자)
2. 과실범인 자
3. 상습범이 아닌 자로서 개전의 정이 있는 경우
4. 기타 경찰서장이 즉심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 2) 청구기준

범죄소년에 대하여 경찰서장의 즉심청구를 통해 신속하게 종결하고자 하는 것은 형사사법절차에서 하루속히 배제함으로써 소년법의 개선·교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전제로서 소년법의 반성과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피해배상이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소년법에 대한 즉심청구를 위해서는 일정한 전제조건이 갖추어질 것이 요구된다. 즉, 즉심청구대상자는 후술하는 (가칭) ‘즉결심판사건심의위원회’의 조사결과 소년법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자로서 즉심회부에 대한 피해자 또는 그 보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하여 피해배상<sup>237)</sup>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로 제한하여야 한다.<sup>238)</sup> 다만, 소년법이 현실적으로 피해배상 등을 할 만한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비행 후 경찰이나 청소년상담소 등, 청소년 상담복지인프라가 구축된 기관들의 소정의 교육이나 선도프로그램의 이수 또는 사회봉사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따라 즉심청구를 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경찰로 하여금 위와 같이 일정한 교육 또는 상담프로그램의 이수나 일정한 시간의 사회봉사활동을 하면 일반 형사재판에 의한 형사처벌이 아닌 즉심청구를 통해 경미한 처벌로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소년피의자와 그 보호자에게 사전

237) 소년법처리에 있어서 회복적 사법의 요청을 반영하여 전술한 뉴질랜드의 가족회합제도와 같은 경찰에 의한 합의조정절차를 범제화함으로써 소년법의 경우에는 주도적으로 경찰이 사건의 조기 해결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238) 경찰청,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운영 계획”(2012) 참조

통고해 주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또 경찰의 통고에 대하여 소년법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즉시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소정의 교육 등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고, 그 교육 등의 기간 동안 사건처리를 유보할 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년법에 대한 즉결심판청구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러한 교육 등의 이수나 사회봉사활동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질 때 효과가 있을 것이므로 강제적으로 강요하는 것이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 입법안은 다음과 같다.

**제 조(청구기준)** ①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사건심의위원회의 조사결과 제00조에 의하여 즉결심판대상이 되는 소년법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피해자에 대하여 사과하고, 그 피해를 배상한 경우
2. 친권자 등, 보호자가 있는 경우
3. 주거나 신원이 확실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찰서장은 소년법이 범죄 후 소정의 선도프로그램을 이수하거나 사회봉사활동을 한 경우에는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청구를 조건으로 하여 당해 소년에게 소정의 선도프로그램을 이수하거나 일정한 시간의 사회봉사활동을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요구는 강제적이어서는 안되며,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이를 마칠 때까지 경찰서장은 당해 사건의 처리를 유보하여야 한다.

나아가 즉심청구기준을 구체화한 경찰내부지침을 마련하고, 즉심청구의 사례를 유형별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전국 경찰서가 공유함으로써 즉심청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sup>239)</sup>

### 3) 부가절차

경찰서장이 소년사범에 대하여 즉결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장래 재범시에는 검사에의 송치를 통해 형사처벌이 될 수 있음을 소년법과 보호자에게 명확하게 고지하게 함으로써 소년법에 대한 즉심청구가 재범방지를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 입법안은 다음과 같다.

**제 조(경고)** 경찰서장은 소년법에 대하여 즉결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년과 그 보호자에게 재범할 때에는 검찰송치를 통해 형사소추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려 주어야 한다.

239) 이영돈, 앞의 논문, 37면; 하태훈, 앞의 논문, 33면

## 2. 즉결심판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구축

### 가. 즉결심판사건 처리를 위한 전담부서의 설치

즉심청구대상을 확대하게 되면 즉심업무가 대폭 늘어나게 되며, 더구나 경찰다이버전을 위한 사전조사 등, 업무범위가 매우 넓어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즉심업무처리를 위하여 경찰서 내에 독립한 부서로서 (가칭) ‘즉결심판계(또는 즉결심판과)’를 신설하여, 후술하는 (가칭) ‘즉결심판사건심의위원회’의 운영과 더불어 즉심사무만을 담당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sup>240)</sup> 아울러 지구대 및 형사과 소속 경찰관을 대상으로 하여 소년범처리시에 적극적으로 즉심절차를 활용하도록 유도함과 동시에 즉심청구서 등 작성요령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일선에서 즉심청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즉심청구를 경찰훈방권과 연계하여 소년범의 특성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신설되는 즉결심판계에서는 경찰훈방에 관한 업무처리도 병행하게 하고, 이를 즉심절차 시스템에서 통합하여 관리한다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sup>241)</sup> 이 경우에 전술한 것처럼 현재 경찰의 기구개편에 소년업무는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서 담당하게 될 것이므로 소년사건의 경우에는 여성청소년과와 즉결심판계(과)의 협력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소년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합리성과 전문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 나. 사전조사제도의 도입 및 교육프로그램제도의 확립

소년사범에 대한 처리를 결정하기 전에 경찰단계에서 소년범전문가의 참여에 의한

240) 경찰청에서는 생활안전과장이 형법범을 즉심으로 전환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형법범 처리의 주무인 형사·수사과장으로 하여금 당직사건 등이 범증이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하여 즉결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필요적으로 판단하도록 제도화하고, 즉결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생활안전과장에게 즉결심판청구의뢰하고 입건된 경우라도 사건은 즉심종결로 처리(KICS상 처리코드 존재)하도록 하며, 경찰서장이 업무보고시 위와 같은 조치사항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함과 동시에 형사활동평가에서 평가되도록 지표화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경찰청, “즉결심판제도의 활성화방안”(2012) 참조)

241) 경찰청, “즉결심판제도의 활성화방안”(2012) 참조

전문적인 사전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것은 현재 경찰에서 임의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소년범조사를 입법에 의해 의무화하고, 이러한 조사에 있어서 반드시 전문가의 참여를 강제하는 절차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전문가참여제를 운영하는 경찰서에서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사시에는 반드시 전문가 참여하에 면밀한 심리분석 및 高·底 위험군 분류를 통해 재범방지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다.<sup>242)</sup> 다만, 지방의 경우에는 소년전문가의 확보가 쉽지 않은 곳도 있지만 각 지역사정에 따라 사랑의 교실, 지역 청소년상담센터, Wee센터 등을 활용하고, 필요한 경우에 각급 학교의 상담교사를 활용하면 큰 비용 없이도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이때 소년범에 대한 사전조사가 범행의 원인을 밝히고 소년범에 대한 유효한 처분의 결정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소년범에게 이에 응할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

또 소년조사단계에서 필요한 경우에 교육이나 상담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도록 사랑의 교실 등, 관련기관을 지정하여 소년범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들 프로그램은 소년범의 개선·교화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즉결심판과 경찰다이버전의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열쇠가 될 것이므로 전문가의 참여와 검증은 거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것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아울러 소년범의 특성에 맞는 사회봉사기관도 미리 정해 둘 필요가 있다. 다만, 소년범의 사전조사의 경우와 달리 교육이나 상담프로그램의 이수 또는 사회봉사활동에의 참여는 그것이 소년범에 대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고, 교육효과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본인의 동의를 전제로 할 것이 요구된다.

242) 경찰청, “학교폭력 사건처리 매뉴얼”(2012) 참조. 이때에는 본인 및 보호자의 동의(별지서식 제2호 참조) 하에 전문가(범죄심리사)가 학교폭력 가해자 조사 초기에 참여하여 면담 및 성격검사를 통해 비행성예측자료표 작성하도록 하고, 검찰·법원 송치시 범죄심리사의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가해학생 처분결정의 기초자료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 다. 수사방법의 개선

소년범의 경우에는 경찰의 조사결과 훈방이나 입건 후 즉결심판을 청구하거나 검찰 또는 소년부 송치 등의 다양한 처분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경찰조사단계에서 소년범이 훈방이나 즉결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입건하거나 입건을 전제로 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기 전에 사전조사절차로서 내사절차에 준하여 입건 전에 소년조사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년범에 대한 경찰처분의 종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sup>243)</sup>

입법론적으로는 2012년 형소법의 개정으로 경찰에게 수사개시권이 인정되었으므로 (제196조 제2항) 경찰 내부적으로 수사개시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를 독자적인 훈령을 통해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수사지휘 및 준칙규정의 내사관련 규정을 준용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 라. 즉심제도의 도입과 다이버전의 연계

경찰에서 경미한 소년범에 대하여는 개선의 정이 뚜렷하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전보함과 동시에 범행 후 소정의 선도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위한 검사에의 송치가 아니라 훈방 또는 즉결심판청구에 의해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에 경찰다이버전과 연계하여 소년범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 재범이 되지 않고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경찰 훈방이나 즉심청구가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입법례에서 본 것처럼 가족회합제도나 가해자-피해자조정제도 등, 다양한 경찰다이버전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sup>244)</sup>

243) 경찰청, “즉결심판의 활성화방안”(2012)에서는 즉결심판의 활성화방안의 하나로 현재 생활안전과장이 이미 즉결심판청구서가 작성된 사건에 대한 예심을 하므로 형법범을 즉심으로 전환하는 것에 한계가 있는 것을 고려하여, 그 현실적·효과적인 대안으로써 형법범 처리의 주무인 형사·수사과장이 당직사건 등이 범증이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하여 즉결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필요적으로 판단하도록 제도화하고, 즉결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생활안전과장에게 즉결심판청구의뢰하고 입건된 경우라도 사건은 즉심종결로 처리(KICS상 처리코드 존재)할 수 있도록 하며, 서장이 업무보고시 위와 같은 조치사항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는 것 외에 형사활동평가에서 평가되도록 지표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 즉심청구의 경우(또는 훈방을 하는 경우)에도 소년법에 대한 사전조사를 기초로 하여 적합한 선도프로그램의 이수요청을 부가적인 의견으로 첨부하여 법원에 송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원이 즉결심판을 함에 있어서 이를 참고하여 소년법에 대한 보호처분의 결정이나 그 유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즉결심판의 경우에는 일반 형사절차와 달리 증거조사절차가 간략화되어 있고, 신속한 처리가 이루어지므로 관할법원이 사실상 소년법의 개선에 적합한 선도프로그램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 마. 경미사건처리를 위한 전담법원의 설치

소년사건에 대한 즉심청구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경미사건 전담법원의 설치가 요망된다. 일반 형사사건은 검사의 기소에 의하여 일반법원에서 정식공판절차에서 진행하고, 즉심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서장의 기소에 의하여 경미사건 전담법원에서 간이공판절차를 통해 진행하도록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현재 즉결심판이 서면절차로 변질되고, 약식절차가 정식재판사건으로 이행해 가는 상황에서 즉결심판절차와 약식절차가 가지고 있던 유입량 조절기능은 급격히 쇠퇴해 가고 있으며, 정규의 공판절차도 업무량의 과다를 이유로 간이절차화한 지 오래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일반사건과 경미사건을 분리하여 경미사건처리절차를 따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sup>245)</sup> 그 대표적인 예로 전술한 일본의 '미죄처분제도'를 참고로 할 수 있을 것이다.<sup>246)</sup> 다만, 경미사건처리를 위해 독립한 경미전담법원을 설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당장 실현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현재의 시·군법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 더 합

244) 회복적 사법의 이념은 원칙적으로 사건의 조기해결을 요구하므로 회복적 사법프로그램은 경찰단계의 다이버전으로서 도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김태명, “다이버전의 발상전개와 경찰다이버전 도입”, 경찰학연구 제11권 제2호, 경찰대학, 2011, 93면)

245) 신동운b, 앞의 논문, 34면

246) 이동희, “경미범죄의 효율적 처리방안”, 형사정책 제15권 제2호, 2003, 378~379면. 다만, 당해 범죄의 피해자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경찰의 미죄처분이 피해자에게 절차적으로 통고되고, 피해자가 경찰의 미죄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 자동적으로 검찰에 송치되는 이의제도를 아울러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다.(손동권, 앞의 논문, 125면)

리적일 수 있다.

1994년도에 경미사건처리절차의 신속화와 간이화를 위해 도입된 시·군법원에서는 현재 주로 소액사건을 포함한 민사사건만을 담당하고,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즉결심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미한 사건조차도 처리권한을 주지 않고 있다.<sup>247)</sup> 그 이유가 현재의 검찰업무량을 고려할 때 시·군법원의 형사사건에 대해서까지 검사를 배치하는 것이 어렵다는 사정에 근거한 것이라고 한다.<sup>248)</sup> 그렇다고 한다면 즉결심판의 대상을 포함하여 일부 경미한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사건이 복잡한 경우도 많지 않으므로 검찰에의 송치라고 하는 절차를 생략하여 경찰서장에게 기소권을 부여하고, 소송절차를 수행하게 하더라도 사실관계 인정이나 법률적용이 불합리하게 되는 경우도 거의 없을 것이다. 또 이렇게 경미사건에 한하여 기소권을 분리할 경우에 사건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피의자에 대한 인권보호에도 유리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경미사건의 경우에는 자유형 등의 구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보다는 벌금형이나 보호처분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어서 현행법상 형벌권의 신중한 행사를 위해 검사에게 부여한 기소권에 대한 침해도 최소한에 그친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sup>249)</sup>

### 3. 즉결심판청구권의 남용방지를 위한 방안

경찰서장에 의한 즉심청구의 오·남용에 대해서는 법원의 기각이 인정되고, 법원의 심판에 의해서 시정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피의자·피고인의 입장에서조차 정식재판의

247) 「법원조직법」 제34조 제1항에 따르면 시·군법원은 (i)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민사사건, (ii) 화해·독촉 및 조정에 관한 사건, (iii) 2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나 과료에 처할 범죄사건, (iv)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에 의한 협의상 이혼의 확인 등에 관한 사건을 관할한다.

248) 신동운b, 앞의 논문, 37면. 신동운교수는 일부 검사를 순회시켜서 시·군법원의 형사사건에 공판관여를 하도록 하면 된다고 제안한다.

249) 기존의 경미사건처리를 위한 법원의 설치를 주장하는 견해들은 검사의 기소를 전제로 한 것(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사법선진화를 위한 개혁 백서(하), 2006, 224면 이하; 신동운b, 앞의 논문, 39면)이라는 점에서 본고의 주장과 차이가 있다.

청구를 통해 법원의 결정을 무효화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경찰서장의 즉심청구에 대하여 법원에 의한 기각이나 무죄선고 비율이 1%도 미치지 못하고, 사실상 즉심대상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도 거의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즉결심판에 대한 사후구제책은 경찰서장의 즉심청구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장치로서 거의 기능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sup>250)</sup> 따라서 경찰서장의 합리적 즉심청구권의 행사를 도모하기 위한 사전적 방지책을 강구하고, 나아가 신중한 즉심청구권의 행사를 담보하기 위한 제도의 도입이 요구된다.

### 가. (가칭) ‘즉결심판사건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시민참여의 확보

소년사범을 포함하여 즉결심판청구에 있어서는 경찰서장의 재량에 전적으로 맡겨져 있는 상태이므로 즉결심판청구의 정당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즉결심판청구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전심의기구로서 (가칭) ‘즉결심판사건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 위원회는 경찰서장으로부터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원의 적어도 1/3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때 민간위원은 일반시민의 참여도 중요하지만 위원회의 판단내용이 주로 법적 해석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형사법교수나 변호사 등의 법률전문가의 참여가 최소한의 범위에서 확보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오늘날 요청되고 있는 사법절차의 투명성 제고와 사법의 민주화의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sup>251)</sup>

이와 관련하여서는 동두천 경찰서의 ‘즉결심판예심위원회’가 참고로 될 수 있을 것이다. 동두천경찰서에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즉결심판예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위원장은 경찰서장으로 하고, 위원은 생활안전과장, 수사과장, 청문감사관, 민간위원 2

250) 하태훈, 앞의 논문, 33면

251) 경찰청에서는 2012년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서 「자진·피해신고 기간」(2012. 3. 19 ~ 4. 30 (6주간))을 운영하면서 초·중·고교에 재학 중이거나, 만 18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범죄가 경미한 경우에 ‘선도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훈방이나 즉심여부를 경찰서장이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이 경우 필요시에는 변호사·교사등 민간위원을 참여시키고, 대상학생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하였다.(경찰청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운영 계획”(2012))

명, 생활질서계장(간사)으로 구성하였다. 다만, 민간인은 제13차 예심위부터 참여 희망자를 예심위원으로 위촉하되, 범죄유형별로 참석자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였다.<sup>252)</sup> 회의는 매주 1회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수시로 개최하였으며, 즉심을 청구한 파출소 팀장 또는 형사팀장이 사건개요 설명 후 위원장 및 위원이 각 의견제시, 토의 후 즉심 청구 또는 훈방 사건 의결하는 절차로 진행하였다. 다만, 형사입건 대상이더라도, 경미사안시 즉심청구 활성화를 위해 그 심의대상으로 하였다고 한다. 2011년 1년간의 운영 성과는 <표 5-7>와 같다.

<표 5-7> 동두천 즉결심판예심위원회 운영현황

(단위 : 건)

계	훈 방	즉결심판	형사입건	즉심회부 부서	
				파출소	수사과
214	37(17%)	148(69%)	29(14%)	189(88%)	25(12%)

계	무전취식	음주소란	업무방해	폭행	불안감 조성	손괴	도박	허위신고	절도	기타
214	44	5	14	38	10	6	51	1	4	15

\* 경찰내부자료 참조

즉결심판사건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법에 근거하지 않은 제도이므로 경찰재량권의 확대에 따른 일부 반대의견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즉심관련 경찰규칙을 만들어 법적 근거를 명백히 함과 동시에, 그 세부운영에 있어서도 경찰서장이 직접 예심을 개최하여 즉심청구를 심사하고, 그 심의결과에 따라 경찰의 사건처리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수사의 공정성 및 경찰수사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전술한 것처럼 즉심제도가 사건의 신속한 처리로 피의자보호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검찰과 법원의 형사사건업무의 경감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되므로 민간위원의 확대를 전제로 하여 전국경찰서로 확대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sup>253)</sup>

252) 민간위원의 경우 협력단체회원 등의 자발적 참여로 여비는 지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 나. 즉결결과에 대한 보고 및 시정절차의 마련

즉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그 남용과 오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선 경찰서에서 소년사범에 대하여 즉심절차에 회부한 경우에는 매월 1회 그 결과보고서와 함께 사건의 목록과 내용을 경찰청장에 보고함과 동시에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한편에서는 경찰서장 등의 즉결심판의 청구권에 대한 부당한 제약으로 될 수도 있지만 즉심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더불어 그 폐지에 대한 주장도 없지 않은 만큼 경찰서장의 즉심청구권의 유지를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행 경찰내사와 관련된 검사에의 보고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수사지휘 및 준칙규정 제18조<sup>254)</sup>를 참고하여 규정을 마련하면 될 것이다.<sup>255)</sup>

아울러 이러한 보고에 대하여 문제점을 발견하거나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대

253) 전술한 것처럼 경찰에서 소년사건에 대하여 현재의 '선도심의위원회'를 운영하거나 (가칭) '소년사건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게 된다면 이 위원회에서 소년범에 대한 훈방 또는 즉결심판청구를 결정하여 (가칭) '즉결심판사건심의위원회'에 회부하게 하고, 사건을 받은 동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추인하는 형태로 운영한다면 큰 문제점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할 경우 소년사건의 경우에는 성인사건의 경우와 달리 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2개의 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한다는 점에서 중복절차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선도심의위원회'나 (가칭) '소년사건심의위원회'는 소년범의 보호를 위한 장치로서 소년범에 대한 적절한 조사·심의를 위한 것이므로 반드시 소년범에게 불이익하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소년사건을 포함한 전체 사건에 대한 즉심사건업무의 통일성을 기하고 즉심청구에 대한 실태 파악에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부득이한 조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중복절차라는 비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양 위원회의 위원장을 경찰서장이 아닌 담당과장으로 하고, 이들 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경찰서장의 확인절차를 거쳐 그 결정내용을 집행하게 하는 제도로 전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54) 제8조(수사지휘에 대한 재지휘 건의) ① 사법경찰관은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검사의 수사지휘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이견이 있거나 지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이행하기 어려울 때에는 해당 검사에게 의견을 밝히고 재지휘를 건의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라 재지휘 건의를 받은 때에는 재지휘 여부를 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관서의 장은 제2항의 조치에 의견이 있으면 해당 검사가 소속된 관서의 장에게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255) 현행 수사지휘 및 준칙규정에 의하더라도 KICS에 접수된 사건은 제18조(사건기록의 관리)의 대상이 되며, 경미사안으로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진행된 사건의 경우에도 매 분기별로 해당사건의 목록과 요지를 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비하여 관할 검찰청의 장(또는 검사)의 시정명령 또는 설명요구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검사의 수사지휘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사지휘 및 준칙규정 제8조<sup>256)</sup>를 참고하여 즉심청구와 관련된 검사의 수사지휘에 대하여 경찰의 이의제기권을 인정하되, 원칙적으로 검사의 지휘에 협조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잘못된 즉심청구의 시정과 더불어 시민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 다. 즉심결과의 공개제도 확립

즉심법에서는 즉결심판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즉결심판서 및 관계서류와 증거는 관할경찰서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가 이를 보존하도록 하고 있으나(제13조), 그 처분 결과에 대한 통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sup>257)</sup> 따라서 동법 제19조에 의하여 즉심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형소법이 준용되므로 형소법 제258조<sup>258)</sup>와 제259조<sup>259)</sup> 및 제259조의2<sup>260)</sup>를 준용하여 경찰서장이 즉결

256) 제8조(수사지휘에 대한 재지휘 건의) ① 사법경찰관은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검사의 수사지휘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이견이 있거나 지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이행하기 어려울 때에는 해당 검사에게 의견을 밝히고 재지휘를 건의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라 재지휘 건의를 받은 때에는 재지휘 여부를 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관서의 장은 제2항의 조치에 의견이 있으면 해당 검사가 소속된 관서의 장에게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257) 즉심법 제3조 제3항에서는 “즉결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사전에 피고인에게 즉결심판의 절차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서면 또는 구두로 알려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것은 단지 즉결심판절차에 대한 안내에 불과한 것이므로 범죄사실관계에 대한 경찰의 결정 및 처분결과에 대한 통보와는 다른 문제이다.

258) 제258조(고소인등에의 처분고지) ①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 공소의 취소 또는 제256조의 송치를 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불기소 또는 제256조의 처분을 한 때에는 피의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259) 제259조(고소인등에의 공소불제기이유고지)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260) 제259조의2(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 검사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

심판청구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경찰서장 등은 피의자뿐만 아니라 피해자 또는 고소·고발인에게 그 처분결과를 통지하도록 하고, 당사자들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유 등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

또 즉결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형소법 제35조<sup>261)</sup>가 준용될 것이므로 즉심사건관련 자료, 즉 즉심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회의결과 및 즉심사건처리결과보고서를 포함한 소송서류 일체에 대하여 즉심대상자와 그 변호인 등에게 열람·등사권을 인정함으로써 즉심대상자의 방어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즉결심판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얻도록 할 필요가 있다.

---

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여부,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결과, 피의자·피고인의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을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261) 제35조(서류·증거물의 열람·등사) ① 피고인과 변호인은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②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제28조에 따른 특별대리인, 제29조에 따른 보조인 또는 피고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로서 피고인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자도 제1항과 같다.

## 제6장 결 어

즉심절차는 경미사건에 한하여 형사절차를 간략화하고, 신속하게 하기 위함과 동시에 피고인을 형사절차에서 조기 해방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임은 전술한 바와 같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사법기관으로 하여금 사법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그 업무량을 줄임으로써 효과적인 업무처리라고 하는 사법행정상의 목적에 중점이 두어져 있으며, 피고인의 보호라고 하는 것은 부차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있는 것이 현행 즉결심판의 모습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학계에서도 즉심절차에 대해서는 검사의 기소 독점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소법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경찰서장에게 기소권을 부여하는 절차로서 이해하고 있는데 그치고 있다. 이로 인하여 경미절차의 합리화를 도모하여 간이공판절차, 약식절차, 즉심절차를 통합하여 경미사건처리절차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주장하는 견해에서도 기소권의 통일화를 위하여 검사에게 기소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이것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경찰과 검찰에 각각 독립적으로 부여되어 있는 대부분 외국의 입법례에서 채택하고 있는 사법체제를 근거로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권이 인정되지 않고, 외국의 경우와 달리 사실상 검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사법체제를 취하고 있으므로 외국의 입법례를 전제로 한 해석이 반드시 합리적이라고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각국의 법제도는 하나로 통일되는 것이 아니라 각 나라의 정치적·사회적 특성에 따라 각각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사법의 민주화 요청’에 따른 수사권과 기소권의 합리적인 분배와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서 어떠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한다면 경찰서장의 즉심청구권에 관해서도 형사사건에 대한 기소권에 대한 적절한 분배의 문제로 접근하는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 즉, 즉심절차에서의 경찰서장의 기소권의 본질을 이해함에 있어서도 단지 형

사사건에 대한 검사의 기소권에 대한 예외로서만 볼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각에서 형사사건을 사건이나 형의 경중에 따라 경미사건과 그 외의 사건으로 분류하고, 국가사법권을 제도적으로 나누어 후자에 대하여는 검사에게 기소권을 인정하고, 전자에 대하여는 경찰서장에게 기소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sup>262)</sup> 나아가 즉결심판에 대하여도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인정되고, 전술한 바와 같이 정식재판의 청구율도 매우 낮은 사정을 고려할 때 즉결심판의 성격도 공판절차를 위한 예비절차로서 '공판전 절차'가 아닌 그 자체가 독립한 '공판절차'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이에 따른 적용과 해석이 이루어져야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오늘날 전문성이 강화된 경찰의 지위와 역할을 인정하는 것이며, 사회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독점적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 현대 민주사회의 요청에도 합치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른 나라에서도 일반적으로 경찰에게 광범위한 수사권을 부여하는 반면, 이에 대한 통제수단으로서 기소권은 검사에게 부여하면서도, 私訴를 인정하거나 경미범죄에 대하여 경찰에 대한 기소권을 인정하는 등의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경찰서장의 즉심청구권을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경찰 스스로 자신에게 부여된 독립한 권한인 즉심청구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적극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경미사건처리절차로서의 즉심절차의 활용성이 매우 높아지게 될 것이고, 따라서 즉심제도의 도입취지인 일반 공판절차에서의 형사사건업무의 경감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sup>263)</sup> 아울러 경찰서장이 즉결심판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도 그 책임을 인식하여 사법권행사에 있어서 객관성과 공정성이 유지되도록 신중을 기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사정은 소년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더욱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그동안 형사사법에 있어서 소년범에 대하여는 '소년보호'에 지나치게 치중한 나머지 제재로서의 기능이 상실됨에 따라 소년범의 개선·교화에 그다지 효과가 없는

262) 전술한 일본의 경미사건에 대한 '미죄처분제도'와 같은 취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63) 경찰에서는 즉심청구를 단순히 피의자에게 선처한다는 측면에서 청구하는 관행을 탈피하여 형사입건과 즉심청구 중 어느 것이 적절한지를 신중하게 고려하여 청구하는 분위기가 정착되도록 하고, 일선경찰관에 대한 즉심대상 및 절차의 교육을 통하여 국민의 권익과 소송경제를 실현하는 즉결심판제도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영돈, 앞의 논문, 38면)은 매우 적절하다.

것으로 판명되고 있다. 이에 오늘날 소년사범에 ‘균형사범의 원칙’이 강조되고, 따라서 ‘소년보호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소년범에게 일정한 책임을 부여할 것이 요청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보면 최소한의 형사처벌을 내용으로 하는 즉심절차에서 소년범의 경우만이라도 그 적용대상을 확대한다면 형사절차에서의 조기해방을 통해 소년범의 낙인효과를 줄임과 동시에 일정한 형사처벌을 통해 책임의식을 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현행 즉심절차는 ‘형사처벌’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이대로 시행된다면 소년범의 ‘보호’원칙을 유지하기 어렵고, 소년범의 ‘처벌’만을 강화시키는 것에 지나지 않게 될 것이다. 따라서 경찰실무에서 행하고 있는 경찰훈방과 결합하여 경미한 소년범에 대한 경찰단계에서의 종결절차로서 경찰서장이 선택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고, 나아가 오늘날 다양하게 주장되고 있는 경찰다이버전과 연계하는 절차가 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변경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경찰 스스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소년범에 대한 경찰다이버전 정책을 강화함과 동시에 전술한 외국의 입법례나 사례를 참고하여 소년범의 개선·교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다이버전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경찰의 업무상 소년범에 대한 지원이나 선도프로그램의 개발·운영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청소년관련 기관이나 협회 등 다른 청소년관련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구와의 적극적인 연계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사법절차에서 해방된 소년범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 • 참 고 문 헌

- 강동욱/문영희, 아동학대 - 법과 제도-, 청목출판사, 2011.
- 경찰청, 경범죄처벌법 등 해설집, 1992.
- \_\_\_\_\_, 경찰백서, 2009, 2011, 2012.
- 김용우/최재천, 형사정책, 박영사, 1998.
- 노명선/이완규, 형사소송법, SKKUP, 2009.
- 박상기, 손동권, 이순래, 형사정책(제5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1.
- 배중대, 형사정책, 홍문사, 2011.
- 배중대 외, 형사소송법(제3판), 홍문사, 2012.
- 법무부, 영국의 소년보호제도, 2011.
- 법무부a, 범죄백서, 2011.
- 법무부b, 프랑스 형사소송법, 2011.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사법선진화를 위한 개혁 백서(하), 2006.
- 소년법학회 편, 소년법, 세창출판사, 2006.
- 신동운, 신형사소송법(제3판), 법문사, 2011.
- 이은모, 형사소송법(제3판), 박영사, 2012.
- 이재상, 형사소송법(제9판), 박영사, 2012.
- 정태균, 소년범재범방지에 관한 연구, 법조문화사, 1981.
- 차용석/최용성, 형사소송법(제4판), 21세기사, 2012.
- 최영승, 형사소송법, 도서출판 대명, 2012.
- 강동욱, “소년사범에 대한 수사기관의 처분에 관한 고찰”, 한양법학 제19집, 한양법학회, 2006. 8.
- 강동욱a, “소년사범과 소년범 처리실태에 관한 연구”, 비교법연구 제12권 제2호,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2012.10
- 강동욱b, “소년사건 처리절차에 관한 고찰” 한양법학 제23권 제4집, 한양법학회, 2012.11.
- 강영철, “소년사건처리절차의 현황과 개선방안”, 소년보호연구 제1호, 한국소년보호협회, 1999.
- 권봉관, “경찰단계 회복적 소년사범정책의 도입방안 연구”, 창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 김기완, “즉결심판(상)”, 수사연구 제162호, 수사연구사, 1997. 4.
- 김봉수/강동욱, “소년사범에 대한 지역사회교정의 현황과 개선방안”, 법과 정책연구 제12집 제

- 2호, 한국법정책학회, 2012. 6.
- 김성돈, “우리나라 소년사법에 있어서 가족집단협의 제도의 도입방안”, 피해자학연구 제13권 제2호, 한국피해자학회, 2005. 10.
- 김용세, “한국의 형사사법체제와 회복적 사법”, 형사법연구 제20호, 한국형사법학회, 2003.
- 김용우, “소년사건처리절차의 문제점”, 국회도서관 입법조사분석실, 1998.
- 김은경, “회복적 사법 실천모델의 효과성 연구”, 형사정책연구 제20권 제3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9.
- 김은경 외, “21세기 소년사법 개혁의 방향과 과제 (I) - 제I부 청소년비행 및 소년사법정책 현황분석”,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7.
- \_\_\_\_\_, “21세기 소년사법 개혁의 방향과 과제 (I) - 제II부 새로운 대응방안으로서 회복적 사법의 실제와 전망”,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7.
- \_\_\_\_\_, “21세기 소년사법 개혁의 방향과 과제 (I) - 제III부 대안의 모색”,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7.12.
- 김재민, “경찰의 소년법 다이버전 정책에 관한 고찰”, 소년보호연구 제15호, 2010.
- 김태명, “다이버전의 발상전개와 경찰다이버전 도입”, 경찰학연구 제11권 제2호, 경찰대학, 2011.
- 김혁, “경찰의 촉법소년 조사에 관한 연구”, 경찰학연구 제10권 제2호, 경찰대학, 2010.
- 김혁a, “회복적 사법의 이념구현을 위한 경찰의 경미소년사건처리”, 경찰학연구 제11권 제1호, 경찰대학, 2011.
- 김형훈, “즉결심판제도의 바람직한 운용방안”, 치안정책연구 제15호, 치안연구소, 2001.11.
- 김형훈a, “경미범죄와 즉결심판을 받을 권리”, 경찰학연구 제6권 제1호, 경찰대학, 2006.4.
- 김희옥, “즉결심판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2.
- 남미애, “사법처리과정 청소년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사회복지학 제58권 제1호, 한국사회복지학회, 2006. 2.
- 도중진 외, “소년사법의 적절한 처리절차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5.
- 박상기/이건호, “경범죄처벌법에 관한 연구- 행위유형과 제재수단을 중심으로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
- 박상진, “즉결심판제도의 문제점과 입법론적 고찰”, 중앙법학 제4권 제1호, 중앙법학회, 2002. 3.
- 박상열, “뉴질랜드의 소년사법제도”, 소년보호연구 제18호, 한국소년정책학회, 2012.

- 박영규, “신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년보호연구 제16호, 한국소년정책학회, 2011.
- 박찬걸, “개정 경범죄처벌법의 내용에 대한 평가 및 향후 과제”, 경찰학논총 제7권 제1호, 경찰학연구소, 2012.
- 오영근, “개정소년법의 과제와 전망”, 형사정책연구 제19권 제2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8.
- 오영근/최병각, “소년사건처리절차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5.
- 성윤환, “현행 즉결심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토를 중심으로”, 중앙법학 제8집 제3호, 중앙법학회 2006.10.
- 소순무, “각국의 소년법제와 우리 제도의 개선방안”, 가정법원사건의 제문제, 재판자료 제18집, 법원행정처, 1983.
- 손동권, “즉심사건처리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형사정책연구 제10권 제2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6.
- 송광섭, “경미사건의 효율적 처리방안”, 형사법연구 제19호, 한국형사법학회, 2003.
- 신동운, “서독의 소년사법제도”, 법무부, 각국의 소년사법제도, 법무자료 제113집, 1989.
- 신동운a, “수사지휘권의 귀속에 관한 연혁적 고찰”, 서울대 법학 제42권 제1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1. 5.
- 신동운b, “경미범죄의 효율적 처리방안”, 형사정책 제15권 제2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3. 6.
- 오윤성, “군즉결심판제도에 대한 고찰”,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9호, 한국공안행정학회, 2000.
- 원혜욱, “소년사건처리절차의 보장”, 형사정책 제11호, 한국형사정책학회, 1999. 10.
- 이금형, “비행소년에 대한 경찰의 다이버전 정책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 이동희, “경미범죄의 효율적 처리방안”, 형사정책 제15권 제2호, 2003.
- 이순래, “소년사법의 현황과 소년범죄에 대한 대응전략”, 형사정책연구 제18권 제3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7. 9.
- 이승현, “소년 다이버전 개념과 재정립”, 소년보호연구 제16호, 한국소년정책학회, 2011.6.
- 이승현a, “영국 소년사법제도의 최근경향”, 소년보호연구 제18호, 한국소년정책학회, 2012.
- 이영돈, “즉결심판의 청구대상에 관한 연구”, 경찰학연구 제10권 제2호, 경찰대학, 2010.
- 이영란, “소년사법절차에 관한 연구”, 소년보호연구 제15호, 한국소년정책학회, 2010. 12.
- 이진국, “소년의 책임과 회복적 사법”, 소년보호연구 제9호, 한국소년정책학회, 2006. 12.
- 이춘화, “소년법상의 검사 결정전 조사제도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제20권 제2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6.

- 이호중, “소년범죄자에 대한 경찰단계의 비범죄화 정책제안”, 형사정책연구 제15권 제3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4.
- 이호중a, “한국의 형사사법과 회복적 사법 - 과거, 현재, 미래”, 형사법연구 제19권 제3호(상), 한국형사법학회, 2007.
- 장규원/윤현석, “회복적 사법과 소년보호관찰”, 소년보호연구 제17호, 한국소년정책학회, 2011. 12.
- 장중식, “소년범죄 처리와 소년법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교정연구 제41호, 한국교정학회, 2008.12
- 전영실, 기광도, “저연령 소년의 비행실태 및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 점승헌, “소년사법절차에 관한 연구 -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8.
- 정해룡, “소년보호정책의 현안과제 및 발전방향”, 형사정책연구 제44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12.
- 정희철, “비례성원칙과 보호처분: 해석론과 적용가능성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제18권 제4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7.
- 정희철a, “개정 소년법과 소년사법의 효율성”, 고려법학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08.
- 조국, “경찰 ‘훈방권’의 법적 근거와 한계”, 한국경찰법연구 창간호, 한국경찰법학회, 2003.
- 조운오, 이미정, “경찰다이버전 단계에서의 소년비행과 자존감과의 관계”,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43호, 한국공안행정학회, 2011.
- 조종태, “프랑스의 소년사법제도 연구”, 해외연수검사연구논문집 제19집 1-2, 법무연수원, 2003.
- 최병각, “소년보호사건의 범위와 처리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8.
- 최병각a, “아동권리협약과 소년사법”, 국가인권위원회, 2007.
- 최응렬, “즉결심판제도에 관한 고찰”,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9호, 한국공안행정학회, 2000.
- \_\_\_\_\_, 정우일, 차훈진, “회복적 사법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제17권 제1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6. 3.
- 최종식, “소년비행의 대책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 제19권 제2호, 2007.
- 최호진, “개정 소년법에 대한 주요내용과 비판적 검토”, 법학논총 제31권 제2호,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2.
- 황정의,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의 실증적 고찰”, 현대형사법론 : 죽헌 박양빈교수 화갑기념 논문집, 죽헌 박양빈 교수 화갑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1996.
- 황태정, “즉결심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3.
- 葛野尋之 編, 少年司法改革の檢證と展望, 日本評論社, 2006.

- 菊田幸一, 少年法, 北樹出版, 2002.
- \_\_\_\_\_, 西村春夫, 宮澤節生, 社會のなかの刑事司法と犯罪者, 日本評論社, 2007.
- 徳岡秀雄, 少年法の社會史, 福村出版株式會社, 2009.
- 細井洋子, 西村春夫, 煙村志郎, 辰野文理 編著, 修復的司法の統合的研究, 風間書房, 2005.
- 松本時夫, 土本武司, 條解 刑事訴訟法(第3版 増補版), 弘文堂, 2008.
- 裁判所書記官研修所 編, 少年法實務講義案, 法曹會, 1991.
- 鮎川潤, 少年犯罪, 平凡社新書, 2001.
- 澤登俊雄, 犯罪者處遇制度論(上), 大成出版社, 1985.
- \_\_\_\_\_, 高内壽夫 編著, 少年法の理念, 現代人文社, 2010.
- 河村 博 編著, 少年法 - その動向と實務, 東京法令出版, 2009.
- 服部朗, “「輕微な」非行の取扱い簡易送致の運用をめぐる”, 法律時報 第63권 제12호, 1991.12,  
法律時報社
- 佐々木光明, 강경래(역), “소년처우론의 현상과 과제 -문제를 안고 있는 아동과의 관계의 구축-”,  
소년보호연구 제15호, 한국소년정책학회, 2010.12.
- 只木 誠, “即決審判と量刑の適正確保”, 日本刑法雜誌 第48권 제1호, 일본형사법학회, 2008.8.
- George Mousourakis(김희균 역), “소년범죄에 대한 뉴질랜드의 가족단위협의회 : 정책과 현행  
실무의 개관”, 피해자학연구 제14권 제2호, 한국피해자학회, 2006.10.

## 자 료

- 경찰청, “경찰업무편람”(2012)
- \_\_\_\_\_, “『소년범 선도』 시스템운영”(2012)
- \_\_\_\_\_, “소년범 수사 관련”(2012)
- \_\_\_\_\_, “즉결심판제도의 활성화방안”(2012)
- \_\_\_\_\_, “청소년범죄 다이버전”(2012)
- \_\_\_\_\_,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중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 처리지침’”(2010)
-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 “경찰 훈방권 검토 및 활용방안”(2012)
-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제261호),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2012. 1. 25.)
-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제399호), “학교폭력 사건처리 매뉴얼”(2012. 2. 8.)
-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제931호),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운영 계획”(2012. 3. 17.)
-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제1080호), “학교폭력 처리시 훈방 관련 FAQ”(2012. 3. 29.)



# 治安論叢 (제29집)

---

---

2013년 9월 발행

2013년 9월 인쇄

발행인 : 최 경 식

발행처 :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언남로 74

인쇄처 : JK Co.(제이케이컴퍼니)

---

---

이 책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자에 게재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 의견이며  
치안정책연구소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제 29집 치안논총  
2013 Police Science Journal

발간등록번호

11-1332522-000003-10

第 29 輯

ISSN 1738-2971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연남로 74 T 031-285-0183 F 031-620-2989

이 책에 게재된내용은연구자 개인 의견이며 치안정책연구소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